

2023

정기 재산변동신고 안내서

2023. 1.



인사혁신처

문 의 처

- 공직윤리(PETI)시스템 접속 및 시스템 종합 문의 : 서비스데스크(1522-4273)
- 재산등록·공개 문의 : 소속 기관 감사부서 또는 인사혁신처(재산심사기획과)
- 재산심사 문의 : 소속 기관 감사부서 또는 인사혁신처(재산심사기획과)
- 주식백지신탁 문의 : 인사혁신처(윤리정책과)
- 행정전자서명인증서 발급 관련 문의 : 소속 기관 정보화담당부서
- 기타 사용문의 및 질의 : 재산신고 챗봇(카카오톡 및 공직윤리시스템),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 게시판

차례

I . 정기 재산변동신고 개요	1
------------------------	---

II . 정기 재산변동신고 방법	11
-------------------------	----

1. 본인정보 입력	15
2. 친족정보 입력	15
3. 총괄표 작성	19
1. 부동산(토지, 건물)	19
2.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28
3. 현금(수표 포함)	29
4. 예금(보험, 수익증권, 개인연금 등 포함)	30
5.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31
6. 증권(주식·국공채·회사채·백지신탁 등)	31
7. 채권(사인간 채권)	37
8. 채무(건물임대채무, 금융채무, 사인간 채무)	37
9.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 포함)	43
10.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43
11. 회원권	43
12. 지식재산권	44
13.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44
14.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45

차례

4. 변동요약서 작성	46
5. 공개목록 작성(재산공개대상자에 한함)	47
6. 신고서 제출	48
 Ⅲ. 공직윤리시스템(PETI) 이용 재산신고 방법	 53



정기 재산변동신고 개요

Ministry of Personnel Management

I 2023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개요

정기 재산변동신고

재산등록의무자는 매년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함(공직자윤리법 제6조)

○ 신고기준일 : '22.12.31.

- 모든 재산항목은 '22.12.31. 현재 시점으로 작성해야 함
- ※ 신고서 작성 또는 제출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

○ 등록대상 친족 및 재산

본인, 배우자(사실혼 포함), 본인의 직계존·비속(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등)의 재산

※ 등록대상이 아닌 자 : 혼인(법률혼)한 딸, 외조부모, 외손자녀, 계부모, 계자녀, 양부모, 양자녀, 며느리, 형제자매 등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및 지상권·전세권
- 자동차·선박,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등
-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현금, 예금(보험 포함), 주식·국채·공채·회사채 등 증권, 채권(사인간 채권), 채무(금융채무, 건물임대채무, 사인간 채무)
- 그 밖에 금·백금, 보석류, 골동품·예술품, 회원권, 지식재산권 등

○ 신고 기간 : '23.1.1.(일) ~ 2.28.(화) 24:00

※ 정보제공동의자의 경우 부동산정보는 '23.1.16.부터, 금융정보는 '23.1.25.(회신정보 열람·검증 1.16.~20.)부터 제공

○ 재산신고 방법 : 공직윤리(PETI)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

- <https://www.peti.go.kr>, 행정전자서명용 인증서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필요
※ 휴대폰과 주민번호가 등록된 경우 SMS인증(주민번호 발급일자 포함)을 통한 로그인 가능

○ 재산심사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 사항을 심사하여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잘못 신고한 경우 등에는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함

○ 유의사항

- (신고기준일) 반드시 '22.12.31. 현재의 재산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서 작성일 ('23.1월~2월) 당시의 재산을 신고하지 않도록 유의
- (신고대상 재산) 실제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소유 재산이 아니더라도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명의로 된 재산 또는 사실상 소유 재산 모두 신고
 - 예금, 증권 및 채무는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모두 신고
 - 재건축 분양권, 가족사이의 사인간 채권·채무 등도 모두 신고
 - 해외에 있는 재산(예금, 부동산 등)도 빠짐없이 모두 신고
 - 공개대상자는 특정재산항목*에 대하여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 기재
- * ① 부동산 ② 비상장주식 ③ 사인간 채권·채무 ④ 합명·합자 및 유한회사의 출자지분 ⑤ 주식매수선택권
- 부동산 업무 관련 등록의무자의 경우 비공개 대상자도 부동산 재산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
- (정보제공 및 활용) 등록의무자 편의를 위해 등록대상 친족의 서명을 받아 '22.11.30. 까지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부동산정보 및 금융정보 제공
- 제공된 부동산·금융정보는 등록의무자의 편의를 위한 참고자료이므로 본인 및 친족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히 신고해야 하며, 최종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제출된 동의서는 철회 전까지 계속해서 유효함
- (신고유의사항 확인) 전년도 재산심사 결과에 따라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신고유의사항 팝업내용을 반드시 반영하여 신고

○ 기타 관련제도

- (고지거부) 직계존비속 중 독립생계·타인부양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허가를 받아 해당 재산을 고지거부 할 수 있음

구분	신규허가 신청	재심사 신청
신청 대상	• 최초로 친족에 대한 고지거부를 신청하는 대상자 • 기존 고지거부 신청이 불허가 됐거나 허가기간이 만료된 대상자	• 2020년 정기재산변동신고('19.12.31. 기준일) 당시 재심사 허가 받은 대상자 • 2020년 연중에 최초등록(재등록)의무자가 되어 고지거부 신규 허가 받은 대상자 • 2021년 정기재산변동신고('20.12.31.기준일) 당시 고지거부 신규 허가 받은 대상자
신청 기간	• '23.1.1. ~ 1.31.	• '23.1.1. ~ 2.28.

※ '22년 고지거부 재심사 결과 불허가자는 신규 신청 가능(신청 기한 1.31.까지)

- (주식백지신탁) 공개대상자등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해야 함
 ※ 단,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청구하여 '관련없음' 결정받은 경우는 보유 가능

참고 1 고지거부 심사기준

○ 고지거부 심사기준

대 상	심 사 기 준	
직 계 존 속	독립생계	•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허가
	타인부양	• (타인과 주소지가 같은 경우)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타인의 소득이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허가 • (타인과 주소지가 다른 경우) 직계존속이 타인으로부터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금액을 이전 받으면 허가
직 계 비 속	독립생계	• 신고기준일 이전 1년 이상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허가
	타인부양	• (이혼한 경우) 이혼한 배우자가 양육하는 미성년 자녀는 이혼한 배우자나 양부모 등 자녀를 부양하는 타인이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허가 가능

○ 독립생계 월 소득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도시지역	2022년	1,166	1,956	2,516	3,073	3,614	4,144
	2023년	1,246	2,074	2,660	3,240	3,798	4,336
농촌지역	2022년	816	1,369	1,761	2,151	2,530	2,901
	2023년	872	1,452	1,862	2,268	2,659	3,035

※ 8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528천원('22년은 524천원), 농촌지역 370천원('22년은 367천원)씩 증가(예 : 도시지역 8인 가구 : 5,392천원('22년 5,192천원)

※ 고지거부 신규 신청자는 2022년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재심사 신청자는 2023년 소득기준을 적용

* 주소지가 '읍, 면'이면 농촌, 그 외 도시지역 기준 적용

• 농지규모별 농업소득

(단위 : 천원)

경지규모	0.5ha 미만	0.5~1.0ha 미만	1.0~1.5ha 미만	1.5~2.0ha 미만	2.0~3.0ha 미만	3.0~5.0ha 미만	5.0~7.0ha 미만	7.0~10.0ha 미만	10.0ha 이상
단위환산 (ha→㎡)	5천㎡ 미만	5천~1만㎡ 미만	1만~1만5천㎡ 미만	1만5천~2만㎡ 미만	2만~3만㎡ 미만	3만~5만㎡ 미만	5만~7만㎡ 미만	7만~10만㎡ 미만	10만㎡ 이상
월	2022년	178	560	999	1,435	1,726	2,446	3,142	3,223
소득	2023년	325	675	1,427	1,292	1,906	2,535	3,044	3,810

○ 소득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예시)

일반소득	※ 신고기준일 이전 1년 이상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농·축산업소득이 있는 경우〉 - 농지자경증명(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또는 농지대장, 출하증명(공제내역 기재) 등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소득금액 증빙서류 ▶ 소득금액 증빙서류: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등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재직증명서 및 소득금액 증빙서류 ▶ 소득금액 증빙서류: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기관) 또는 소득확인서(재직기관) 등 ▶ 재직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연금소득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 - 연금수급증명서(수령기간, 월 수령 금액 기재) 등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 통장사본(정기적 이자소득이 드러나야 함) - 기타 금융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소득금액증명(국세청), 통장사본(이체내역) 등
재산소득	※ 직계존속만 해당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기준일 현재 부동산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기준일 현재 금융자산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잔액증명서, 유가증권잔고증명, 통장사본 등
기타	관련 정황을 상세히 기재하여, 연락두절·행방불명, 이(재)혼 등 등록의무자가 부양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허가 신청 - 본인사유서, 형제·친척의 진술(인우증명), 사실관계 증빙자료 ▶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 법원판결문 등

※ 민원서류(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농지대장 등) 발급 : 정부24(www.gov.kr)

※ 부동산 공시가격 확인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 국세청 기준시가 확인 :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 CD금리(CD수익률) 확인 :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포탈(freesis.kofia.or.kr)

○ 고지거부 신청 유의사항 및 자주하는 질문

구분	유의사항 및 질문	답 변
유의 사항	① 고지거부 신청기간 준수	• 고지거부 허가 신청은 1.1.~1.31., 재심사 신청은 1.1.~2.28.기간 중 가능하며 이후 신청은 불가능함
	② 고지거부 신청서 및 증빙서류 누락	• 고지거부 신청시에는 고지거부 신청서와 독립생계 관련 증빙서류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기간내 미제출시 반려처리되거나 소득기준 불충족으로 불허될 수 있음
	③ 고지거부 신청서 서명 누락	• 고지거부 신청서에는 등록의무자와 고지거부 대상자의 서명(날인)이 포함되어야 하며, 누락되거나 등록의무자가 본인의 것으로 대신하여 잘못 서명하는 경우 반려처리될 수 있음
	④ 정보제공동의서 제출 여부	• 고지거부를 신청한 후 고지거부가 허가될 것으로 보고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고지거부 신청이 불허되거나 반려될 경우 정보제공 없이 재산등록을 해야 할 수도 있으니 주의 필요
자주하는 질문	⑤ 부가가치세과세증명서, 카드매출내역 등을 소득금액 증빙서류로 제출 가능한지 여부	• 부가가치세과세증명서, 카드사를 통한 수입증명 등은 소득증빙자료가 아니므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 등의 증빙자료 제출 필요
	⑥ 소득기간/자녀 독립세대 구성 기간	• 고지거부 신청시에는 소득(재직)기간 및 자녀의 경우 별도세대 구성기간이 신고기준일 이전 1년 이상이어야 하며, 1년 미만인 경우 불허될 수 있음
	⑦ 임대중이거나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의 재산환산소득 산정 가능 여부	• 직계존속의 부동산 재산의 소득환산시 동일건물에 대한 재산소득과 임대소득은 중복하여 합산이 불가하며, 고지거부 대상자가 거주하는 건물의 경우에는 재산소득으로 불인정함
	⑧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종합과세 구분별) 소득금액 확인 방법	• 사업소득은 수입금액(매출액)이 아닌 소득금액을 소득액으로 인정하여 산정함 (단, 연말정산한 사업자의 경우 지급받은 총액을 인정) • 근로소득, 연금소득은 수입금액을 소득액으로 인정하여 산정함

참고 2 주식백지신탁 제도

○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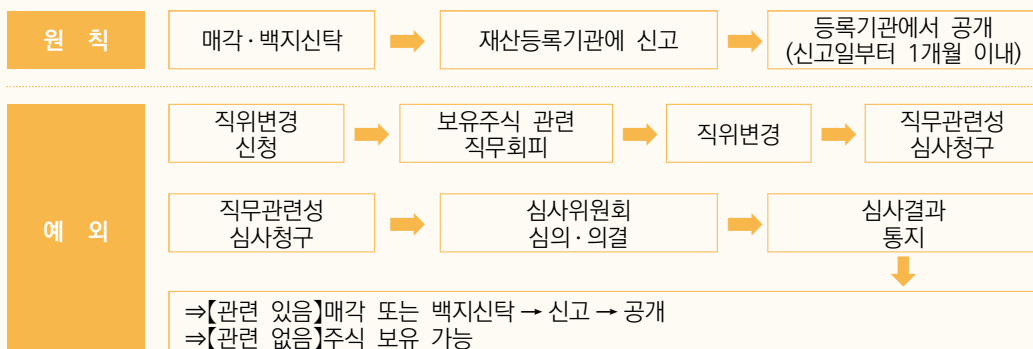
- **(제도개요)** 고위공직자가 직무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적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그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 하게 함
- **(대상자)** 재산공개대상자, 기획재정부 금융관련 국 소속 4급(상당) 이상 공무원, 금융위원회 4급(상당) 이상 공무원
- **(대상주식)** 본인 및 이해관계자(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주식
 ※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직무관련성 없는 주식으로 고시'한 주식(펀드, 해외주식 등)은 가액에 상관없이 보유 가능하므로 3천만원 초과 여부 산정시 제외

- **(신고기준일)** 아래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매각·백지신탁 또는 직무 관련성 심사청구 조치

- ◆ 공개대상자 등이 된 날
- ◆ 변동사항 신고 유예사유(법 제6의3조 제1항 및 제2항)가 소멸된 날
- ◆ 공개대상자 등의 직위가 변경된 날(예: 행안위 소속의원이 국토교통위로 배정)
- ◆ 기존 주식의 주가가 상승하여 3천만 원을 초과한 날 등

- **(의무위반시 제재)** 위반 정도에 따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경고,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요구 등의 조치

○ 운영절차







정기 재산변동신고 방법

Ministry of Personnel Management

II

정기 재산변동신고 방법

작성 순서	신고 항목	주요 신고 내용
1 본인정보 입력	- 소속, 직급, 직위, 주소, 연락처 등	• 신고기준일('22.12.31.) 현재 상태로 수정
2 친족정보 입력	- 친족의 신상정보, 고지거부, 등록대상, 직업, 거주형태 등	• 신고기준일 현재 친족정보 작성 ※ 혼인(신고)한 딸, 사망한 직계존비속, 이혼한 배우자의 경우 등록제외
3 총괄표 작성	- 부동산(토지·건물)	• (신규취득) 실거래가격(취득가격, 보상액)으로 신고 하되, 증여·상속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평가액으로 신고 • (계속보유) ① 종전신고 시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경우 실거래가격과 공시가액 중 높은 금액 신고, ② 종전신고 시 공시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공시가액의 변동을 확인하여 신고 • 타인건물에 대한 임차권(전세권)은 건물항목에 신고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참고, 임차보증금 기입
	-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등	• 자동차는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으로 등록
	- 광업권·어업권 등	• 평가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 등록, 둘 중 하나만 확인 가능한 경우 해당 금액
	- 현금	•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
	- 예금(보험 포함)·유가증권·사인간 채권·채무 등	• 소유자별 합계액이 각각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 • 마이너스통장의 경우 신고기준일 현재 예금 잔액이 '+'이면 '예금' 항목에, '-'이면 '채무' 항목에 신고 • 투자신탁수익증권(펀드, ETF 등)은 예금항목에 신고 • 본인 소유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받은 보증금은 채무항목에 건물임대채무로 신고 • 가족 간의 채권·채무(대여)도 빠짐없이 신고

작성 순서	신고 항목	주요 신고 내용
	-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 정치자금용 예금계좌의 예금은 정치자금용 예금 계좌에 신고 ※ 위 '예금' 항목에 중복신고하지 않도록 유의
	- 금·백금	소유자별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
	- 보석·골동품 및 예술품	품목당 500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
	- 회원권	- 골프, 헬스, 콘도미니엄 등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은 모두 신고 ※ 골프회원권은 평가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 등록, 둘 중 하나만 확인 가능한 경우 해당 금액 등록 - 콘도미니엄은 부동산 소유권으로 등기되어 있어도 회원권으로 신고하고 '비고'란에 면적 기재
	- 지식재산권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 등 신고
	-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출자가액, 출자지분, 연간 매출액 등 기재
	- 비영리법인 출연재산	출연금액, 법인의 내역(명칭, 소재지 등) 등 기재
4 변동 요약서 작성	- 재산변동사유, 총소득	- 재산항목별 증감사유 기재 - 본인 소득과 본인 외 소득자 수 및 (세전)소득금액 기재
5 공개목록 작성	- 재산공개자만 작성	- 개인정보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작성에 주의 - 토지인 경우 지목(임야, 답 등)과 지번을 기재 - 건물인 경우 종류 및 용도(주택, 아파트, 상가 등)만 기재하고 지번과 동·호수 기재 생략
6 신고서 제출	- 재산신고 항목 최종 확인	재산변동신고서 등을 출력하여 최종 확인 후 제출

1 본인정보 입력

등록의무자의 소속, 직위, 직급, 주소, 연락처 등을 **신고기준일('22.12.31.) 현재**의 상태로 수정

- (소속) 전입·전출 등으로 소속기관이 변경된 경우 소속기관 윤리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소속을 변경
- (주소) 자택 및 직장 주소는 **도로명 주소**로 신고
- (주소지에 대한 거주형태) 자가, 전세, 기숙사, 친척집 등을 선택

2 친족정보 입력

친족(등록의무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주소, 직업, 연락처 등을 **신고기준일('22.12.31.) 현재**의 상태로 입력

- (주소 및 직업) 친족의 주소 및 직업은 재산의 증감액과 함께 재산흐름을 파악하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상세하게 입력하여 향후 불필요한 소명 방지
- (주소지에 대한 거주형태) 자가, 전세, 기숙사, 친척집 등을 선택
 - 특히, 해외 거주 친족의 자가, 기숙사, 렌탈 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거주지 정보를 수정하고 부동산 등록 시에도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 (친족의 범위) 배우자와 등록의무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 친족은 혈족개념이 적용되며, 배우자(고지거부 불가능)의 재산은 이혼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반드시 등록
 - 결혼식을 한 사실혼 배우자 등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신고 대상임
 - 자녀(장녀, 장남 등)와 손자녀(손자, 손녀)는 출생순으로 등록·신고
 - 조부모가 있는 경우 등록 제외되지 않도록 하되, 혼인(법률혼)한 딸은 자녀 순서는 유지하되 등록에서는 제외
 - 장녀(차녀)·장남(차남)의 용어는 성별을 구분하여 각각 순서를 정하여 신고

※ 자녀 신고방법(예시)

- ① '92년생 딸(장녀), '94년생 아들(장남), '97년생 딸(차녀), '98년생 딸(삼녀)이 있는 경우 ⇒ 장녀 - 장남 - 차녀 - 삼녀 순으로 신고
- ② '92년생 딸(장녀, 혼인), '94년생 아들(장남), '97년생 딸(차녀)이 있는 경우 ⇒ 장남 - 차녀 순으로 신고(혼인한 장녀는 등록에서 제외)
- ③ '05년생 아들(장남), '08년생 아들(차남), '09년생 딸(장녀)이 있는 경우 ⇒ 장남 - 차남 - 장녀 순으로 신고

- **(등록제외)** 친족 중 사망한 사람, 혼인(법률혼)한 딸, 이혼한 배우자는 등록에서 제외
 - 사망한 친족의 재산은 신고기준일까지 상속(등기이전 등)이 안 된 경우에도 법정 상속지분만큼 신고
 - 혼인(법률혼)한 딸이 이혼하게 되면 친족으로 다시 등록(외손자녀는 등록하지 않음)
 - 기존 시(조)부모를 등록하였던 경우, 친(조)부모를 등록하여야 하며 기존 등록하였던 시(조)부모는 등록제외
- **(고지거부 확인)** 친족의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상태, 고지거부 상태(허가기간, 허가여부)를 서로 비교·확인하여, 고지거부 허가를 받지 않은 친족의 재산은 반드시 신고
 - 기존에 고지거부허가를 받은 친족은 등록상태에 이미 '고지거부자'로 체크되어 있으며, 신규로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친족만 등록상태를 '고지거부자'로 선택 가능

주요 실수 사례

□ 친족재산 누락

① 배우자 재산 누락

- 배우자와 관계가 좋지 않아 재산 상태를 정확하게 신고하지 못함

☞ 이 경우에도 정보제공 동의 혹은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재산을 정확히 신고해야 함

② 직계존비속 재산 누락

- 이전에 받은 부모의 고지거부 허가가 유효한 것으로 알고 부모의 재산을 신고하지 않음(유효기간이 만료된 사실을 몰랐음)

☞ 친족정보 입력 시 부모의 고지거부 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고지거부 허가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재산을 신고해야 함

③ 문중재산, 동창회비 등 누락

- 형제 등 공동명의로 '문중재산', 본인 명의의 '친목(동창)회비' 등 예금계좌를 실제 본인 소유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신고 누락함

☞ 실제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본인 명의의 모든 재산은 신고해야 하며, 회비, 문중재산 등은 변동사유란에 해당 내용을 기재해야 함

□ 친족(자녀 등) 등록 오류

① 혼인(법률혼)한 딸 등록

- 기존 등록대상자였던 딸이 혼인하였으나 친족 변동없이 그대로 신고함

☞ 혼인한 딸은 재산등록대상자가 아니므로 등록제외해야 함

② 이혼한 딸 미등록

- 장녀가 '15년도 결혼, '20년 이혼하였지만 자녀의 정보를 변경없이 그대로 신고함 (장녀를 등록제외)

☞ 혼인(법률혼)한 딸은 등록제외 대상이지만 이혼한 딸은 등록대상에 해당함

③ 자녀 등록 오류

- 자녀가 2남 1녀('95년생 아들, '00년생 딸, '02년생 아들)인 경우 출생순으로 장남, 차녀, 삼남으로 신고함

☞ 자녀의 경우, 성별을 구분하여 각각 순서를 정하여 신고해야 하므로 장남, 장녀, 차남으로 신고해야 함

- 1남 2녀('90년생 딸, '92년생 딸, '98년생 아들) 중 장녀가 혼인하여 등록제외하고 자녀를 장녀, 장남으로 신고함

☞ 혼인(법률혼)한 딸(장녀)은 등록제외하는 것이 맞으나 자녀 순서에는 변경이 없으므로 차녀, 장남으로 신고해야 함

④ 조부모 미등록

- 조부모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부양하지 않고 상호 왕래가 거의 없어 신고하지 않음

☞ 실질적인 부양여부 등에 관계없이 직계 존속은 등록대상이므로 신고해야 함

본인 및 친족정보 관련 Q&A

질 문	답 변
① 재산의 신고기준일 및 신고기한은?	• 모든 재산은 '22.12.31. 기준으로 '23.2.28. 까지 신고해야 함 • 신고서 작성일의 재산으로 잘못 신고하지 않도록 유의
② 재산을 등록해야하는 대상의 범위는?	• 등록의무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해야함 • 혼인(법률혼)한 딸, 외조부모, 외손자녀, 며느리, 형제자매, 계부모(새아버지, 새어머니), 계자녀 등은 등록대상 아님
③ 부부가 모두 재산등록의무자인 경우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한쪽에만 신고해도 되는지?	• 부부가 모두 재산등록의무자인 경우에도, 각각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신고해야 함
④ 본인의 친자녀를 이혼한 배우자가 양육하고 있을 경우 친자녀의 재산을 등록해야하는지?	• 자녀의 양육 주체에 관계없이 친자녀는 직계비속이므로 재산을 등록해야함
⑤ 어린 손자녀의 경우, 재산이 없어도 등록을 해야 하는지?	• 재산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직계 비속은 모두 등록대상 이므로 손자녀에 대해 별도 고지거부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출생부터 친족으로 추가하여 신고해야 함

3 총괄표 작성

유의사항

- 금융 및 부동산 정보는 등록의무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등록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제공하는 것으로 자동 입력되지 않으니 반드시 개별적으로 확인 후 신고 필요

제공되는 정보 (정보제공동의자에 한함)		제공되지 않는 정보	
토지	등기된 소유권	토지	지상권
건물	등기된 소유권	건물	전세(임차)권, 분양권
자동차	-	자동차	등록된 소유권
금융 자산	예금(보험, 수익증권, 개인연금 등), 증권(상장주식, 회사채, 금융채)	금융 자산	현금, 증권(비상장주식) 등
채무	금융채무	채무	건물임대채무, 사인간 채무
회원권	-	회원권	등기된 회원권

- 제공된 정보의 일괄입력(활용입력) 가능여부
 - 금융(보험, 수익증권 등) : 일괄입력 가능 * 비상장주식·회사채·금융채 등은 직접 입력 필요
 - 부동산(토지, 건물) : 일괄입력 불가능(해당 주소 클릭 후 개별 입력 필요)
- ☞ 제공된 정보를 열람만 하고 입력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각별히 유의

1. 부동산(토지, 건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임차)권의 권리자(관계), 권리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 명세와 가액을 신고

공개대상자 및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비공개자 포함)의 경우 부동산에 대한 재산형성과정(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을 반드시 기재

- (취득일자) 매입일, 상속일, 증여일 등
- (취득경위) 목적, 방법(매입·상속·증여 등 여부), 상대방(매입·상속·증여의 상대방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
- (소득원)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간 채무 등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자금 출처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1) 소유권

- **(소유권 판단)**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신고
 - **매입 부동산**: 중도금 지급 이후에는 등기가 이전되기 전이라도 소유권으로 등록하고, '변동사유'란에 해당 사실을 기재하고 자금출처 등 사실관계 기재
 - **매도 부동산**: 매수인으로 등기가 이전되기 전까지는 잔금을 받았더라도 본인의 소유권으로 등록하고 '변동사유'란에 해당 사실을 기재하고 수령금액 등 사실관계 기재
 - **등기 이전이 안 된 상속 받은 부동산**: '사실상 소유권'이 아닌 '소유권'으로 신고하고 사실관계 기재
 - **미등기 부동산**: '변동사유'란에 "등기 미완료"라고 기재
 - ※ 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자의 경우 제공되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과세자료'와 대법원 등기 자료를 정확히 확인하여 중복·누락 신고되지 않도록 유의
- **(면적신고 방법)**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건물항목에 토지와 건물을 같이 신고하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분리하여 신고(예: 대지 〇〇㎡, 건물 〇〇㎡)
 - **아파트**: 건물면적(전용면적)만 기재하고 대지면적은 기재할 필요가 없음
 - **상가, 빌딩, 오피스텔**: 국세청 기준시가가 있는 건물은 전체면적(전용+공용면적)을 기재
 - **공동소유 부동산**: 소유 지분만큼 신고(예: 〇〇㎡ 중 〇〇㎡)
 - ※ 토지정보는 국토교통부의 토지대장 자료와 대법원의 등기 자료가 제공되어 보여지므로 반드시 기준일자 of 보유정보를 직접 확인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확인 후 신고해야 함
- **(관리형태 기재)** 소유권으로 신고한 건물은 '변동사유'란에 반드시 관리형태를 기재
 - 예: 등록의무자의 주소지, 〇〇〇에게 임대, 공실(빈집)로 관리 등
 - **유상임대한 부동산**: 임대계약서 상의 임대보증금을 건물임대채무로 신고
 - ※ 임대보증금은 '채무' 항목에 재산의 종류를 '건물임대채무' 또는 '토지임대채무'로 신고
 - **미등기 부동산**: '변동사유'란에 "등기 미완료"라고 기재
- **(가액산정방법)** 신규 취득한 부동산과 종전에 신고한 부동산을 구분하여 신고
 - **신규 취득한 부동산**: 반드시 실거래가격*(**실제매입·매도한 금액**)으로 신고하되, 상속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22년도 공시지가, 공시가격 등 평가액으로 신고(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활용)하고 '변동사유'란에 해당내용 기재
 - * 각종 포털 및 시장에서 형성된 시세가 아닌, **실제로 취득한 가격** 또는 **보상액**을 의미

- **기존 신고한 부동산** : ① 종전신고 시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한 부동산은 실거래가격과 평가액(공시지가, 공시가격 등) 중 높은 금액으로 신고, ② 종전신고 시 평가액으로 신고한 부동산은 '22년도 평가액으로 신고
- **공동소유 부동산** : 소유 지분만큼만 신고

용어 정리

- **가 액** :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부동산의 가치로, 평가액 또는 실거래가격을 의미함(전체 재산 총계에 반영되는 금액)
- **평 가 액** :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상 공시지가·공시가격 및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
- **실거래가격** : 실제 거래(매도·매입) 금액
※KB시세 등 시장에서 형성된 시세가 아님

□ 부동산 평가액 산정방법

유형	평가액	확인방법
• 토지	개별공시지가	•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 단독주택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토지+건물 포함)	•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 다가구주택		
• 아파트	공동주택공시가격 (토지+건물 포함)	•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공시가격이 있는 일부 상가·빌딩· 오피스텔(수도권, 5대 광역시 및 세종시)	국세청 기준시가 (토지+건물 포함)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기준시가 조회] → [상업용 건물/오피스텔] → [주소 검색]

유형	평가액	확인방법
공시가격이 없는 건물 또는 건물만 보유한 경우	지방세 시가표준액 (건물 과세표준)	“이택스” 홈페이지 (서울 소재) : [ETAX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물시가표준액 조회] “위택스” 홈페이지 (서울 외 소재) : [전체메뉴]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 -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자체 세무과에 문의하여 확인
공시가격이 없는 건물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동일한 경우)	개별공시지가 + 지방세 시가표준액 (건물 과세표준)	〈 개별공시지가 〉 -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 지방세 시가표준액 〉 “이택스” 홈페이지 (서울 소재) : [ETAX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물시가표준액 조회] “위택스” 홈페이지 (서울 외 소재) : [전체메뉴]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 -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자체 세무과에 문의하여 확인

2) 전세(임차)권

- (신고대상) 본인 및 직계존비속이 거주 또는 사업을 목적으로 임차한 주택·아파트·상가·오피스텔·토지 등

※ 전세(임차)권은 부동산 정보제공 대상이 아니므로, 등록의무자가 본인 및 친족의 전세(임차)권을 정확히 파악하여 빠짐없이 신고 필요

- (가액산정 및 작성방법) 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을 전세(임차)권 항목으로 신고
 - 월세 부동산 : 보증금 없이 월세만 지급하는 경우 등록재산이 아님
 - 공무원·군인 임대아파트, 관사 등 :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거주하는 경우 해당 보증금을 전세(임차)권 항목으로 신고

3) 분양권(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

- (일반 분양아파트) 신고기준일까지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 등 총 납입금액을 분양권으로 신고하고 비고란에는 총 분양가액을 기재
 - 다만, 신고기준일까지 계약금만 납부한 경우 신고대상 아님
- (재건축 분양아파트) 동·호수 배정 이전까지는 기존 건물을 계속 신고하되, 동·호수를 배정받은 이후에는 기존 건물은 ‘소유권 상실’ 처리한 다음 권리가액(=보상가액)과 부담금 등의 총 납입금액을 ‘건물’항목에 분양권으로 신고하고, 이주비용이 있을 경우에는 ‘채무’항목에 신고
 - ※ 분양권을 매입(매도)한 경우에는 실제 매입(매도)가격으로 가액 신고
 - ※ 분양권은 부동산 정보제공 대상이 아니므로, 등록의무자가 본인 및 친족의 분양권을 정확히 파악하여 빠짐없이 신고

□ 재건축 분양권 관련 용어 (예시)

(단위: 천원)

권리가액	부담금	조합원 분양가	일반 분양가
340,000	40,000	380,000	480,000

- ① 권리가액 :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액 × 개발이익(비례율) (=보상가액, 지분금액, 자산가치)
- ② 부담금 : 착공 시 건설사에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 (= 조합원 분양가 - 권리가액)
- ③ 조합원 분양가 : 재건축 아파트 원소유자가 분양받을 경우 부담하는 금액
(권리가액 > 조합원 분양가 : 추가 보상금 발생, 권리가액 < 조합원 분양가 : 부담금 발생)
- ④ 이주비용 : 완공 때까지 조합원의 생활유지 등을 위해 빌려주는 자금

4) 기타

- (주택연금과 관련한 담보 주택) ‘부동산 소유권’으로 계속해서 신고하되, 신고기준일 시점까지 지급받은 연금액은 ‘채무’항목에 별도 신고
 - ※ 농지연금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신고
- (신축 중인 건물) ‘사실상 소유권’으로 신고하되, 가액은 신고기준일 시점까지 소요된 건축비로 신고(신축을 위해 토지를 매입한 경우 함께 신고 필요)

주요 실수 사례

□ 부동산(토지 및 건물) 누락

- ①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면 해당항목에 자동으로 입력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음
 - ☞ 부동산 및 금융정보는 등록의무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신청에 의해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자동으로 입력되지 않으며,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본인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직접 입력해야 함
- ② 건물은 소유권만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음(전세(임차)권, 건물임대채무, 분양권 누락)
 - ☞ 부동산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등록의무자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모두의 전세(임차)권, 건물임대채무, 분양권 등을 신고하여야 하며, 특히 소유권 외 건물임대채무, 전세(임차)권, 분양권 등은 부동산 및 금융정보가 조회되지 않으니 직접 확인 후 신고해야 함
- ③ 시골에 있는 부모님 소유 무허가건물을 등기가 없다는 이유로 신고 누락함
 - ☞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등록의무자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일 경우 모두 신고해야 함
 - ※ 정보제공동의자의 경우, 무허가 건물도 행안부 과세 자료로 확인 가능
- ④ 소유자가 동일한 건물과 토지를 토지와 건물에 분리하여 각각 신고하거나 건물은 누락하고 토지만 토지항목에만 신고함
 - ☞ 소유자가 동일하고 건물이 있는 토지는 건물항목에 토지면적, 건물면적을 각각 신고하고, 가액은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하여 신고해야 함
- ⑤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과 1·2차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분양권 가액을 계약금 금액으로 신고함
 - ☞ 아파트 분양권은 신고기준일까지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 등 총 납입한 금액을 분양권 가액으로 신고해야 함
- ⑥ 부모사망으로 형제 등과의 상속협정이 지연되고 있어 해당 재산을 누락함
 - ☞ 상속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상속지분을 신고해야 함

부동산(토지, 건물) 항목 신고 관련 Q&A

질 문	답 변
① 부동산 가액 신고방법은?	• (신규취득) 실거래가격(실제 취득한 가격, 보상액)으로 신고 하되, 증여·상속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평가액으로 신고 • (계속보유) ①종전신고 시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경우 실거래가격과 공시가액 중 높은 금액 신고, ②종전신고 시 공시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공시가액의 변동을 확인하여 신고
② 동일한 주소지 건물에 대해 부동산 정보가 2개 조회되는데 어떻게 등록(신고)해야 하는지?	• 정보제공 동의자의 경우, 부동산 정보는 해당 정보를 관리하는 기관(대법원, 행정안전부 등)별로 회신되므로 동일한 주소지 건물이 중복으로 조회될 수 있음 - 신고기준일(등록기준일) 현재 소유여부를 확인하시어 소유가 맞다면 정확하게 하나만 신고
③ 건물은 소유권만 등록(신고)하면 되나요?	• 부동산의 소유권 뿐만 아니라 등록의무자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모두의 전세권, 건물임대채무, 분양권 등을 신고하여야 함 - 또한 소유권 외 건물임대채무, 전세권, 분양권 등은 부동산 및 금융정보가 조회되지 않아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은 직접 확인 후 신고해야 함
④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매도계약을 체결해 계약금, 중도금을 받은 상태이며, 이사 갈 주택을 매수계약을 체결해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인데, 주고받은 금액이 동일하여 전체재산의 증감은 없는 상태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매도한 경우, 등기가 매수인에게 이전되기 전까지는 본인 소유권으로 신고하고 변동사유란에 현재 상황(계약관계, 금액 등)을 기재하면 됨 - 또한 신규 주택을 매수한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했다면 소유권으로 신고하고 변동사유란에 현재 상황(계약관계, 금액 등)을 기재하면 됨
⑤ 토지 위에 건물이 신축된 경우 재산신고 방법은?	•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는 토지 항목에 건물은 건물 항목에 별도로 신고함 •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 건물 항목에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함
⑥ 등기사항증명서상 부동산의 명의인이나 실제 타인 재산(예:문중재산)인 경우?	• 해당 부동산을 재산으로 신고하고 실제 사실관계를 '변동사유' 란에 기재함

질 문	답 변
⑦ 직계존속 사망 등으로 상속될 부동산이나 명의 이전이 안 된 경우 신고방법은?	상속의 경우 사망 시점에 소유권이 당연히 이전되므로, 상속받지 않을 예정이더라도 등기가 정리되기 전까지는 법정 상속지분 또는 협의된 지분을 소유권으로 신고하고 '변동사유'란에 해당상황 기재
⑧ 공동명의 부동산 신고방법은?	공동명의 소유 부동산인 경우 재산등록대상자가 각각 소유한 지분만큼 면적 및 가액 등을 신고해야 함 ※(예시) 본인 건물 100㎡ 중 50㎡, 배우자 건물 100㎡ 중 50㎡
⑨ 배우자와 공동명으로 아파트를 구매하였는데 동 아파트에 세입자가 있어 전세보증금을 끼고 구매한 경우, 재산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공동명의인 아파트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유지분별로 각각 신고하여야 함 - 해당 아파트를 타인에게 전세를 주고 있는 경우, 전세보증금을 본인과 배우자 각각 소유 지분만큼 채무항목에 '건물임대채무'로 각각 신고하여야 함 ※ 예) 전세보증금 8억원이 있는 아파트를 10억원에 매입한 경우: 아파트 소유권을 본인, 배우자명으로 지분만큼 각각 신고(각각 5억원)하고 전세보증금은 채무항목에 건물임대채무로 지분만큼 각각(각각 4억원) 신고
⑩ 등록의무자 본인이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은 어떻게 등록(신고)해야 하는지?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의 경우 소유지분만큼의 면적과 가액을 신고해야 함. 이때 공동 소유한 사람이 재산등록대상자인 경우(ex. 배우자) 에는 해당 소유자의 지분도 신고해야 하나, 재산등록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등록의무자인 본인의 보유지분만 신고해야 함
⑪ 건물 임대(빌려줌) 또는 임차(빌림) 시 재산신고 방법은?	(임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건물 항목에 입력, 임대 후 받은 보증금은 채무항목에 "건물임대채무"로 신고함 (임차) 건물에 대한 전세(임차)권을 건물 항목에 "전세(임차)권"으로 입력, 이때 지불한 임차 보증금을 재산 가액으로 신고함
⑫ 건물 임차 시 보증금 일부를 납부하고 월세를 매달 지급하는 이른바 '반전세'의 경우 재산 신고방법은?	- 건물 항목에 전세(임차)권으로 보증금만 별도로 신고함 ※ (예시) 보증금 1천만원, 월세 40만원 원룸 임차 ⇒ 보증금 1천만원만 전세(임차)권으로 신고, '변동사유'란에 월세금을 기재 - 보증금 없이 월세만 지급하는 경우 신고대상 아님

질 문	답 변
⑬ 신고기준일에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하고 신고기준일 이후 잔금을 지급한 경우 어떻게 등록(신고)하여야 하는지?	모든 신고재산은 신고기준일 현재의 재산을 신고하여야 함. 신고기준일까지 계약금만 지급한 경우에는 전세(임차)권을 신고하지 않음. 다만, 계약금 지불로 인해 예금이 감소한 경우 예금항목의 증감사유 부분에 해당내용을 기재 (계약금을 타인에게 차용한 경우라면 사인간채무 항목에 해당 금액을 신고하여야 함)
⑭ 기존 신고시 '건물 임차권'을 '토지 임차권'으로 잘못 신고하였는데 수정 방법은?	기존 신고시 재산항목을 잘못 신고한 경우, 토지항목에 있는 해당 건물 '소유권 상실' 처리한 후 건물항목에 다시 신고하고 '변동사유'란에 해당상황을 상세히 기재
⑮ 신고한 전세집 계약만기 전에 새로운 주택 임차계약을 위해 전세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은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 신고기준일 현재 기존 신고한 전세(임차)권의 보증금 중 일부를 돌려받은 경우, 기존 전세권 가액을 변경하고 변동사유란에 해당상황을 기재 ※ 예) 전세보증금 3억원중 1억원을 돌려받은 경우 : 전세권가액을 2억원으로 변경하고 변동사유에 해당상황 기재
⑯ 아파트 등 신규 분양 시 분양권의 신고방법은?	(계약금만 납부한 경우) 신고대상 아님 (중도금을 납부한 경우) 건물 항목(분양권)에 계약금과 중도금 납부분을 합산하여 가액으로 신고하고 총분양가액을 별도로 기재
⑰ 분양받은 아파트의 옵션비를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는지?	아파트 분양가 기재시 옵션금액이 있다면 포함하여 기재하고 '변동사유'란에 총 분양가액과 옵션가액을 상세히 기재
⑱ 재개발 분양권을 신규로 등록(신고)하려고 하는데 주소지가 검색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건설중인 아파트 등 주소지가 검색되지 않는 경우, 주소창 옆 '기타(국외 등)'를 선택하여 직접 해당 주소를 입력하고 이후 완공되면 정확한 주소로 변경('변동사유'란에 해당 상황 기재)
⑲ 기존 신고한 분양권을 잔금까지 완납하고 확정 지번을 받은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기존 신고한 분양권을 잔금까지 납부 완료한 경우에는 권리종류를 '분양권'에서 '소유권'으로 변경하여야 함 기존 분양권으로 신고한 항목의 좌측 하단에 '소유권 전환' 버튼을 클릭하여 소유권으로 변경할 수 있음
⑳ 프리미엄 5,000만원을 포함하여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한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한 경우, 실제 매입한 금액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해야 하므로 총 분양가액과 프리미엄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신고('변동사유'란에 해당 상황 기재)

2.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한 권리종류, 제작연도, 배기량, 등록번호 등 **권리 명세와 가액**을 신고

1)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등

- **(자동차 가액산정방법)** 신고기준일 현재의 **자동차보험 상 차량기준가액**, 지방세 시가표준액, 실거래가격 순으로 등록

※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한 경우 자동차 가액 신고 후 할부 잔액은 채무 항목에 신고

※ 배기량이 없는 자동차(전기차, 수소차 등)의 경우 배기량에 0cc 기재, 자동차 가액은 구입시 보조금을 포함한 실거래가로 신고하고 변동사유란에 사실관계 기재

□ 리스자동차 신고방법

- **운용리스** : 리스 계약 종료 후 법인 등에 반납 (≒렌터카)
 - 리스 보증금은 채권란에, 리스 잔여대금(월납부액×잔여기간)은 채무(금융채무)란에 신고
 - ※ 장기렌터카는 보증금을 채권란에 신고하되, 렌터비·선납금은 신고하지 않음
- **금융리스** : 리스 계약 종료 후 개인에게 소유권 이전 (≒할부구매)
 - 리스차량의 보험기준 가액은 채권란에, 리스 잔여대금(월납부액×잔여기간)은 채무(금융채무)란에 신고하되, 채권의 '변동사유'란에 리스 관련 사실관계 기재
 - ※ 잔여대금을 모두 납부한 후 소유권이 이전되면 자동차 항목으로 변경 신고

- **(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가액산정방법)** 평가액(지방세 시가표준액, 전문가 평가액 등)으로 등록하되, 평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실거래가격으로 등록

주요 실수 사례

□ 자동차 누락 및 과다 신고

- ① 배우자와 공동소유(본인99%,배우자1%)인 경우, 배우자의 지분은 신고하지 않고 의무자 본인 지분 100%로 신고함
 - ☞ 자동차 등록원부 상 공동소유일 경우, 대상자별 해당 지분만큼 각각 신고해야 함 (의무자 99%, 배우자 1%)
- ② 자동차 소유권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누락
 - ☞ 자동차 소유권 정보는 사전에 제공되지 않으니, 정보제공동의자의 경우에도 소유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여 신고해야 함

2)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 등

- (권리의 명세) 광물의 종류 또는 어업면허의 종류, 소재지, 존속기간 등
- (가액산정방법) 신규 취득한 경우와 종전에 신고한 경우를 구분하여 신고
 - 신규 취득 : 평가액(지방세 시가표준액, 전문가 평가액 등)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가액을 등록하되, 둘중 어느 하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가격으로 신고하고 '변동사유'란에 해당사항 기재
 - 종전 신고 : ① 종전 신고시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경우 실거래가격과 평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신고, ② 종전 신고시 평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최근 평가액으로 신고

3. 현금(수표 포함)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

- (신고기준) 보유하고 있는 지폐 및 자기앞수표의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당좌수표 등 일반 수표는 '채권', '채무' 항목에 신고)
 - ※ 보관방법(금고, 옷장 등), 보관사유, 용도, 자금출처 등 기재

주요 실수 사례

□ 현금 누락 및 과다 신고

- ① 보유하고 있던 현금을 사용하였으나 전년도와 변동없이 그대로 신고함
 - ☞ 신고기준일 현재, 보유 현금을 사용한 경우 사용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신고해야 함
- ② 보유하고 있던 현금을 전액 예금하였으나 전년도와 변동없이 그대로 신고함
 - ☞ 보유현금을 예금한 경우, 기존 신고가액을 변경하지 않으면 중복(과다)신고가 되므로 기존 현금항목은 삭제하고 은행에 예치한 금액만큼 예금항목을 증액신고해야 함
- ③ 보유하고 있지 않은 현금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함
 - ☞ 신고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만 신고해야 함

4. 예금(보험, 수익증권, 개인연금 등 포함)

※ 금융정보활용입력 기능활용

소유자별 예금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모든 예금의 종류, 계좌번호, 보유액 등을 신고

- (소유자 판단) 실제 본인 재산은 아니나 본인 명의의 동창회비(친목회비), 문중재산 등도 예금의 성격을 불문하고 예금주 기준으로 등록 후 '특기사항' 란에 사실관계 기재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는 별도 항목으로 신고하여야 하므로
‘예금’ 항목에 해당 예금계좌를 중복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

- (예금의 종류) 저축성이 가미된 보험(적립보험료가 0원인 보험 신고 제외), 수익증권(펀드, ETF 등), 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한 투자자예탁금(파생상품위탁증거금 포함)도 그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예금에 포함

※ 금융기관에서 회신되지 않은 해외계좌, 기타 금융권 계좌, 봉급에서 자동 이체되는 지방행정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등도 ‘예금’ 항목에 반드시 신고

※ 보험약관대출은 ‘채무’ 항목에 신고

- (보험) 100% 보장성 보험(적립보험료가 0원인 보험, 예 자동차 보험, 여행자 보험)을 제외한 모든 보험을 계약자 명의로 신고하고, 가액은 납입 보험료 총액으로 신고

※ 지급개시되어 연금을 수령하고 있더라도, 가액은 납입금액 총액으로 신고하고 ‘변동사유’란에 해당 상황을 기재하여야 함

(예시) 총 납입금액 3,000만원, 2022.1월부터 월50만원씩 수령 중

※ 예상 해지환급금, 만기환급금 등으로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

- (연금) 개인이 가입한 연금은 모두 등록대상이나,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은 등록대상 재산 아님

- (마이너스 통장) 신고기준일 잔액이 ㉠면 ‘예금’, ㉡면 ‘채무’ 항목에 신고

- (펀드 등 수익증권) 신고기준일 현재의 예금액이 아닌 평가액으로 신고

사모펀드의 경우 ‘예탁기관’란에 ‘자산운용사’, ‘예금종류’란에 ‘펀드명’, ‘특기사항’란에 ‘사모펀드유형’(예 : 전문투자형 또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을 기재

◆ 계좌번호가 없는 사모펀드의 경우 ‘계좌번호’란에 ‘-’ 기재

- (부동산 신탁재산) 신탁등기 이전까지는 ‘건물’ 항목에 종전 부동산을 신고, 신탁등기 이후인 경우에는 ‘건물’ 항목에 신고하지 않고 신탁회사의 평가금액을 ‘예금’(부동산 신탁회사 회신금액)항목으로 신고
- (연금) 개인이 가입한 연금은 모두 등록대상이나,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은 등록대상 재산 아님

5.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정치자금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을 신고

- (예금의 종류) 일반예금과 마찬가지로 보통예금, 정기예금, CD, 보험, 수익증권(펀드, ETF 등), 투자자예탁금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등록
- (보유액 산정 및 신고방법) 신고기준일 현재 적립된 금액 또는 평가금액을 등록하고, ‘변동사유’란에 해당 계좌가 수입용인지 지출용인지 기입

6. 증권(주식·국공채·회사채·백지신탁 등)

※ 금융정보활용입력 기능활용 ※ 비상장주식·채권(국채·지방채·특수채·금융채·회사채 등) 등은 직접 입력 필요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모든 증권의 종류(주식, 국채 등), 발행인(종목명), 종목코드(상장주식의 경우 반드시 기재), 수량, 가액 등을 신고

- (증권의 종류) 주식(국내·외 상장주식, 국내·외 비상장주식), 채권(국채·지방채·특수채·금융채·회사채 등),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등을 모두 등록

금융정보활용입력 기능은 상장주식만 적용되기 때문에, **비상장주식·채권 등은 직접 입력 필요**

- 종전 신고 시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미만으로 신고하지 않았으나, 이번 신고 시 1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 모든 증권의 수량 및 가액을 신고

※ 주식백지신탁 또는 매각 대상은 등록의무자가 공개대상자등*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한 경우임 (재산신고 금액기준과 주식백지신탁 금액기준이 다름)

* (공개대상자등) 재산공개대상자와 기획재정부의 금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4급 이상 공무원과 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 증권회사에 위탁하여 증권회사가 본인에게 알리지 않고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랩상품 등) 신고기준일 현재 개별주식을 신고(‘비고’란에 ‘랩상품’ 표시)

※ 예금항목으로 신고하지 않도록 유의

공개대상자의 경우 기타 비상장주식 및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재산형성과정**(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을 반드시 기재

- **(취득일자)** 거래계약일, 주주명부 등재일,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 등
- **(취득경위)** 목적, 방법(매입·상속·증여 등 여부), 상대방(매입·상속·증여의 상대방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
- **(소득원)**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간 채무 등 해당증권을 취득한 자금 출처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 **(유가증권)** 국채·공채·회사채 등은 ‘액면가’로 신고
 - ‘액면가’를 알 수 없는 해외채권 등은 ‘매입가’로 신고하고 ‘특기사항’에 해당상황 기재
 - **(상장주식)** 한국거래소 상장주식은 ‘신고기준일 최종거래가격’으로 신고
 - **(비상장주식)**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거래량 가중 평균가’로 등록하고, 기타 비상장주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또는 실거래가격’으로 등록
 - 상장폐지, 폐업중인 법인의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법인이 청산되기 전까지는 신고하여야 하며, 법인의 청산여부와 액면가는 대법원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음
 - 상장폐지, 폐업 등으로 해당 기업의 재무정보 취득이 어려운 경우, 소명자료(정보제공 요청일 및 방법, 거부사유 등)를 첨부하여 액면가로 신고할 수 있음
- * **한국장외시장(K-OTC)** : 종전 프리보드시장을 확대·개편한 시장으로 비상장 중소기업주뿐만 아니라 비상장 유명 대기업주도 거래되고 있으며, 홈페이지(<http://k-otc.or.kr>)를 통해 실시간으로 ‘거래량 가중 평균가’ 확인 가능
- **(주식매수선택권)** 보유 중인 스톡옵션도 신고대상이며, 받을 주식의 종류, 행사조건, 현재시가 등 입력
 - 받을 주식의 종류 및 수량, 행사 가격·기간 등 조건, 받을 주식의 현재시가 등 기재

- (매각 또는 백지신탁) 보유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가액’란에 매각금액 또는 백지신탁계약 체결금액을 입력하고, ‘변동사유’란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 여부를 기재

※ 주식백지신탁계약의 체결을 신고한 경우 그 신탁재산은 이후 변동신고 대상에서 제외

- (주식거래내역의 신고) 재산공개대상자의 경우 ‘주식거래내역서’를 공직윤리시스템에 첨부하여 제출

- 제출방법 : 금융기관이 발급하는 위탁계좌번호, 주식 거래일, 종목, 수량, 실거래액 등이 기재된 주식거래내역서 또는 위탁계좌원장 사본을 공직윤리시스템(PETI)에 첨부

주요 실수 사례

□ 예금, 증권 누락

- ① 금융정보가 사전에 제공 되었으나 금융정보제공동의서만 제출하면 자동 입력되는 것으로 알고 제공된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누락함
 - ☞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것만으로 자동으로 입력되지 않으며, 제공된 금융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신고해야 함
- ② ‘예금’만 금융정보활용 입력을 하고 ‘증권’, ‘금융채무’는 활용입력을 하지 않아 누락됨
 - ☞ 제공된 금융정보는 열람만 하면 자동 입력되지 않으며, 금융정보활용입력 기능을 활용하여 입력하되 ‘예금’, ‘증권’, ‘금융채무’ 각각 활용입력 버튼을 클릭해야 함
- ③ 금융채무, 소액 예금은 신고대상 재산이 아닌 것으로 알고 누락함
 - ☞ 소유자별 1천만원 미만을 계좌별 1천만원 미만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금융채무, 사인간 채무를 합산하여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대상임
- ④ 신고서 작성일 현재 금융채무를 변제하여 금융채무를 ‘0’으로 신고함
 - ☞ 신고서 작성일 현재에는 변제하였지만, 신고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므로 신고서 작성 시점으로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
- ⑤ 해약한 예금·보험 등을 현 가액만 ‘0’으로 신고함
 - ☞ 예금·보험 등을 해약한 경우 ‘해약’에 체크(✓)하고 가액 적정여부(‘0’원)를 반드시 확인하여 신고해야 함
- ⑥ 증권항목에 ‘환매조건부 채권’이 회신되었으나, ‘금융정보 활용입력’을 한 것으로 오해하여 신고된 것으로 알고 누락함
 - ☞ 회사채, 금융채 등 채권은 ‘금융정보 활용입력’이 되지 않으므로 회신된 정보를 참고하여 직접 신고해야 함

참고 3 기타 비상장주식 가액 산정방법

○ 기본방향

※ 공직윤리시스템(PETI)에서 **진단하기** 버튼을 활용하여 가액의 유형 결정

- (실거래가격) 매매가 있고 실거래가격의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평가액) 매매가 없거나 실거래가격의 인정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 (액면가) ① 실거래가격 또는 평가액이 액면가보다 낮은 경우(1주당 순자산가치로 신고하는 경우 제외), ② 평가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 등록의무자와 이해관계자가 동일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는 동일한 가액으로 신고

○ 실거래가격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실거래가격으로 인정

① (거래시기) 재산등록 기준일 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의 매매(매도 또는 매입)

※ 해당 기간 중 둘 이상의 매매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매매를 말함

② (거래상대방) 등록의무자나 이해관계자(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단, 재산등록사항을 고지거부한 사람 제외) 상호 간이 아닌 제3자와 매매거래

③ (거래규모) 매매한 주식의 총수가 해당 법인 발행주식 총수(매매일 기준)의 1% 또는 매매한 주식의 합계액(액면가 기준)이 3억원 이상

※ 발행주식 총수 또는 액면가는 주식발행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

④ (입증가능성) 매매로 인해 납부 의무가 발생한 국세 신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어야 함

*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납부계산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등

- 다만, 실거래가격이 액면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로 신고

○ 평가액 ※ 공직윤리시스템(PETI)에서 **계산하기** 버튼을 활용하여 1주당 평가액 계산

- 실거래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다음 ①~③ 중 가장 높은 금액 신고

① (1주당 당기순이익가치 × 3/5) + (1주당 순자산가치 × 2/5)

② 1주당 순자산가치 × 4/5

③ 1주당 액면가

☞ 1주당 액면가, 자산총액, 부채총액,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발행주식총수 정보 입력시 자동계산

1주당 당기순이익가치	1주당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의 가중평균액^① ÷ 이자율(10%)^② ① 신고기준일 기준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상의 1주당 당기순이익*을 최근 사업연도 순으로 각각 3 : 2 : 1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 ※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 * 각 사업연도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가액(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그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함)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이자율
1주당 순자산가치	(자산총액* - 부채총액*) ÷ 발행주식총수** ※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 * 신고기준일 기준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 상 금액 **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식총수

- 해당 주식이 다음 ①~②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인 경우 1주당 순자산가치로 신고

- ① 재산등록기간 이내에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에 따라 사업을 계속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 ②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4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

☞ 해당사항 체크 후 자산총액, 부채총액, 발행주식총수 정보 입력시 자동계산

- 단, 기업이 회계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평가액 산정에 필요한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액면가로 신고

* 기업에 정보제공을 요청한 일자·방법 등 요청 내역, 제출 거부사유 등 소명

○ 최종가액유형에 따른 구비서류

최종가액유형	구비서류
실거래가	국세 과세신고자료(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평가액	- 해당 기업에서 기업정보 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 재무제표 또는 기업정보확인서 - 해당 기업에서 기업정보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 재무제표
액면가	- 해당 기업에서 기업정보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 관련 소명자료 - 실거래가격으로 결정되었으나 액면가가 더 높은 경우 → 국세 과세신고자료 - 평가액으로 결정되었으나 액면가가 더 높은 경우 → 재무제표 또는 기업정보확인서

참고 4 주식거래내역의 신고

○ 주요내용

- (목적) 공직자 주식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
- (신고대상) 재산공개대상자(법 제10조제1항)
- (신고시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시(정기변동, 퇴직, 의무면제)
- (신고주식) 한국거래소 상장주식 및 장외거래 주식(영 제5조의2제1항)
※ 주식시장 :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KSM, K-OTC (단, 백지신탁계약 신고 주식 제외)
- (신고내용) 거래금액에 관계없이 직계존·비속 주식의 취득 또는 양도에 관한 모든
주식 거래내역(영 제5조의2제2항)
※ 직계비속 중 혼인한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외증손자녀 및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
- (의무위반시 제재)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 가능(법 제22조제2호)

○ 정기 재산변동신고 시 주식거래내역 신고방법

- (신고대상 기간) '22년 중 발생한 거래내역
※ '22.1.1. 이후 공개대상자가 된 경우, 등록기준일로부터 '22.12.31.까지의 거래내역
- (신고방법) 금융기관이 발급하는 위탁계좌번호, 주식 거래일, 종목, 수량, 실거래액 등이
기재된 주식거래내역서 또는 위탁계좌원장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영 제5의2제3항)
※ 공직윤리시스템(PETI)의 [주식변동사항신고]에서 파일 첨부

주식거래내역 신고안내

재산 공개대상자는 변동기간(2022.01.01 ~ 2022.12.31) 동안 주식거래내역이 있는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2에 따라 주식거래내역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 친족 포함)
- 미신고시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방법은 총괄표 화면 우측 상단의 **주식거래내역신고**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 (제출기간) 정기 재산변동신고 종료일인 '23.2.28.(화)까지 제출

7. 채권(사인간 채권)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모든 채권을 신고

- (신고방법) 채무자명, 채무자 주소(전화번호), 채무자와의 관계 등 상세정보를 기입
 - ※ 전세(임차)보증금은 채권 항목이 아닌 '부동산(건물)' 항목에 기입
 - ※ 사인간 채권·채무(부모-자녀간 포함)는 비조화성 재산으로 누락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산항목이므로 차용증, 원금·이자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정확히 신고 (증빙자료 첨부 가능)

공개대상자의 경우 사인간 채권에 대한 **재산형성과정**(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을 반드시 기재

- (취득일자) 계약이체일, 차용증 상 대여일 등
- (취득경위) 채무자와의 관계, 발생사유 등
- (소득원)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등 해당 채권의 자금 출처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8. 채무(건물임대채무, 금융채무, 사인간 채무)

※ 금융정보활용입력 기능활용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모든 채무(금융채무, 사인간 채무, 건물·토지 임대 채무 등)를 신고

- (금융채무) 증권사, 카드사, 보험사 등의 금융기관 채무(대출, 약관대출, 미수금, 카드론 등)은 '금융정보활용입력' 기능을 이용해 신고하고, 채무의 사용처를 기재
 - 예 등록의무자 본인이 2천만원 금융대출 후 지인에게 빌려준 경우 : 등록의무자는 [금융채무] 2천만원, [사인간 채권] 2천만원 신고
 - ※ 카드를 이용한 현금서비스 및 할부 물품구입비는 금융채무에 해당하지 않음
- (사인간 채무) 발생사유·일자, 채권자와의 관계, 사용처, 이자율 등을 상세하게 기재
 - (가족 간 채무) 부모-자녀 등 가족 사이에 발생한 채권·채무도 사인간 채권·채무로 등록
 - 예 배우자가 2천만원 금융대출 후 자녀에게 빌려준 경우 : 배우자는 [금융채무] 2천만원, [사인간 채권] 2천만원 신고, 자녀는 [사인간 채무] 2천만원 신고
 - ※ 전체 재산에 변동이 없어서 가족간 채권·채무를 신고하지 않거나, 어느 한쪽만 신고 (예: 부모만신고, 자녀는 누락) 하지 않도록 유의

공개대상자의 경우 사인간 채무에 대한 **재산형성과정**(취득일자·취득경위 등)을 반드시 기재

- (취득일자) 계좌이체일, 차용일 등
- (취득경위) 채권자와의 관계, 채무의 사용목적 등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 (건물임대채무)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소유하는 주택·아파트·상가·오피스텔 등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월세(임대)보증금은 ‘건물임대채무’로 신고
- (선거를 위한 채무) 선거자금을 위해 다수의 사람과 설정한 채무(일명 ‘선거펀드’)의 경우 채권자는 대표 1인 외 00명으로 입력하고, ‘비고’란에 사실관계 기재
예 [채권자] 김○○외 2,300명, [비고] 6.13. 지방선거 선거펀드

주요 실수 사례

□ 채권, 채무 누락

- ① 부모와 자식 사이에 주고받은 전세보증금, 사업자금 등은 전체 재산규모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신고하지 않음
※ 본인의 자금을 자녀에게 지원한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은 사인간 채권으로, 자녀는 사인간 채무로 신고해야 함(반대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신고)
※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증빙자료 첨부
- ② 임대 중인 건물의 보증금은 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지하여 누락함
※ 건물임대보증금, 전세보증금 등은 신고 대상이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함
- ③ 본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거주 또는 사업을 목적으로 임차한 부동산의 전세(임차)권을 건물 항목과 사인간 채권으로 중복 신고함
※ 전세(임차)권은 채권이 아닌 건물항목의 전세(임차)권으로 신고해야 함
- ④ 친족의 건물을 무상으로 임차 또는 임대하고 있는 경우 해당 건물전세권이나 건물임대 채무를 주변 시세로 신고함
※ 친족에게 무상으로 임차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아니며, 관리형태에 대해 해당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면 됨

예금, 증권, 채무항목 신고 관련 Q&A

질 문	답 변
①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하는데, 그 의미는?	•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개개인별로 판단, 예금·증권·채무 각각의 항목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대상임 ※ 사례 예시 1. 본인 예금 합계액 7백만원, 배우자 예금 합계액 3백만원인 경우 → 등록의무 없음 2. 본인 예금 합계액 3백만원, 본인 증권 합계액 7백만원 → 등록의무 없음 3. 자녀 1인의 예금(6개 계좌) 합계액 12백만원 → 등록대상임 • 계좌별 1천만원 이상인 예금, 증권, 금융채무만 신고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가 필요함
② 예금 등의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 예금, 증권, 채무 등 각각의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신고대상 아님 • 다만, 1천만원 미만으로 간주하여 신고하지 않았으나 실제 1천만원 이상 소유하여 처분 받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 필요
③ 예금계좌를 등록(신고)하려고 하는데 해당 예탁기관이 검색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예탁기관이 검색되지 않는 경우 '기타'로 검색하여 해당하는 기관을 선택하고 예탁기관명을 직접 입력
④ 부동산 신탁재산의 등록(신고) 방법은?	• 신탁등기 이전까지는 '건물' 항목에 종전 부동산을 신고, 신탁등기 이후에는 종전 부동산은 '소유권 상실' 처리하고 신탁회사의 평가금액을 '예금'(부동산 신탁회사 회신금액)항목으로 신고
⑤ 소유한 부동산이 신탁회사로 등기 이전된 경우 등록(신고) 방법은?	• 부동산 신탁회사로 부동산 등기가 이전된 부동산은 건물항목에 신고하지 않고, 신탁회사에서 회신한 금액을 예금항목에 신고
⑥ 실제 본인 재산은 아니나 사업 등 목적으로 본인 명의 예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	•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 등 재산은 실제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신고하고 사실관계를 '변동사유'란에 기재함

질 문	답 변
⑦ ETF, ETN, MMF, ELS, IRP의 등록(신고) 방법은?	보통, 정기, 자유 등 모든 예적금, DB, DC, IRP 등 퇴직연금, ETF, ETN, MMF, FX 등은 예금항목에 신고하여야 함
⑧ 증권계좌의 예탁금 및 간접금융상품 신고방법은?	- 증권계좌의 예탁금은 증권 구매를 위한 예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증권 항목이 아닌 예금 항목에 신고함 - 증권회사의 간접금융상품(MMF, ELS, 수익증권 등)도 예금 항목에 신고함
⑨ 주식담보대출을 받아 상장주식을 매수한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주식은 증권항목에 신고기준일 최종거래가액으로 신고하고 대출받은 금액은 채무항목에 금융채무로 신고
⑩ 해당 주식계좌에 미수금이 있는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주식거래시 발생한 미수금은 채무항목에 금융채무로 신고
⑪ 해외주식은 금융정보열람에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금융정보열람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재산등록 참고용 자료이며, 금융정보열람에 보이지 않는 해외주식이라도 신고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다면 신고하고, 가액은 신고기준일 현재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된 금액을 기재
⑫ 오래전에 상장폐지된 주식도 신고해야 하는지?	- 상장 폐지된 기타 비상장주식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청산이나 파산되기 전까지는 신고해야 함 - 법인의 청산여부와 액면가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해당 법인의 등기로 확인이 가능하며,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기타비상장주식 신고방법에 따라 평가액 등으로 신고 - 참고로 법인등록번호는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DART),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명으로 검색하여 확인

질 문	답 변
⑬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등록(신고) 방법은?	• 보유 중인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도 신고대상이며, 받을 주식의 종류, 행사조건, 현재시가 등을 기재하여야 함 • 받을 주식의 종류 및 수량, 행사가격·기간 등 조건, 받을 주식의 현재시가 등 기재
⑭ 배우자가 다니는 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보유하고 있어 증권항목에 신고하였는데 해당 금액이 총괄표 총액에 반영이 되지 않는데 오류인가요?	• 주식매수선택권은 신고기준일 현재 실현되지 않은 권리로 재산항목으로 신고는 하지만 총괄표의 총 재산액에 합산되지 않으므로 주식매수선택권은 증권항목에 신고는 하되 총계에는 반영되지 않으니 오류가 아님 • 참고로 주식매수선택권, 지식재산권,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총액에 합산되지 않음
⑮ 매각 또는 백지신탁한 주식의 신고 방법은?	• 보유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가액’란에 매각금액 또는 백지신탁계약 체결금액을 입력하고, ‘변동사유’란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 여부를 기재 ※ 주식백지신탁계약의 체결을 신고한 경우 그 신탁재산은 이후 변동신고대상에서 제외
⑯ 금융정보활용입력을 통한 예금, 증권, 금융채무의 신고방법은?	•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신고기준일 현재 본인이 소유한 금융계좌의 잔액 현황을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신 받아 이를 활용하여 신고 가능
⑰ 실제 본인이 소유한 계좌의 잔액과 금융기관이 회신해준 정보가 상이한 경우 신고방법은?	• 의무자가 직접 확인한 잔액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재산을 신고해야함 ※ 금융기관이 회신해준 자료는 참고용으로서 사실관계의 확인 및 최종 책임은 등록의무자에게 있음
⑱ 회신된 금융 정보 외 추가적인 금융재산을 소유 중인 경우 신고방법은?	• 금융정보는 「금융실명법」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회신되고 있으므로 해외은행 등의 금융정보는 회신되지 않음 • 미회신 금융정보의 경우 등록의무자가 추가로 해당 재산을 등록해야함

질 문	답 변
⑲ 보장성 보험도 신고대상인지?	• 적립보험료가 있는 모든 보험은 신고대상 • 자동차 보험 등 보장보험료만으로 구성된 보험은 신고대상이 아님 ※ 신고제외 : 자동차 보험 등 ‘적립보험료 0원’ 상품
⑳ 등록의무자의 보험을 고지거부하고 있는 모친(어머니)이 계약한 경우 신고 방법은?	• 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아닌 계약자를 기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므로 고지거부 대상자인 모친이 계약자인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됨
㉑ 마이너스 통장의 신고방법은?	• 신고기준일 현재 통장의 잔액이 (-) 인 경우 금융채무로 신고하고, (+) 인 경우 예금으로 신고함(한도액을 신고하는 것이 아님)
㉒ 부모-자녀간 등 등록대상 내에서 발생한 채권·채무도 신고해야 하는지?	• 자녀의 통학 편의 등을 위해 원룸 보증금을 대여한 경우, 자녀의 사업자금을 대여한 경우 등 부모-자녀간 발생한 사인간 채권·채무도 신고해야 함
㉓ 채무(건물임대채무, 금융채무, 사인간 채무)의 신고 대상은?	•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모든 채무(금융채무, 사인간 채무, 건물·토지 임대 채무 등)를 신고하고, 채무액 변동 시 그 사유, 자금흐름 등을 반드시 기재
㉔ 등록의무자인 본인의 배우자와 장모가 공동소유 중인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은 장모가 모두 관리하고 있는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 공동으로 소유한 건물의 경우 소유한 지분만큼 소유권으로 신고해야 하므로 배우자 소유지분 만큼 건물항목에 소유권으로 신고 • 건물임대보증금의 경우에도 해당 지분만큼 채무항목에 건물임대채무로 신고

9.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 포함)

소유자별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개별 품목 모두 신고

- (소유권 변동 시 가액산정) 매입한 경우 매입가격으로 신고하고, 매도한 경우 현재 가액을 '0원'으로 신고(☑ 매도) 후 '실거래가격'란에 매도 가격을 기재
※ 보석류에 부착되어 있는 금 및 백금은 보석류 항목에 신고
- (미거래 시 가액산정) 계속 보유 중인 경우(상속·증여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포함) 신고기준일 현재 시장가격으로 가액을 산정하고 변동사항 신고

10.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품목당 가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하고, 골동품 및 예술품은 품명, 크기(cm), 작가, 제작연대 등 작품 세부정보를 기재

- (소유권 변동 시 가액산정) 매입한 경우 매입가격으로 신고하고, 매도한 경우 현재 가액을 '0'원으로 신고(☑ 매도) 후 '실거래가격'란에 매도 가격을 기재
※ 매도 등 실거래 없이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종전에 신고한 가액 유지
- (미거래 시 가액산정) 신고기준일 현재 전문가 등의 평가액으로 가액을 산정
※ '변동사유'란에 평가액을 산정한 전문가·회사 등의 이름, 연락처 등을 기재

11. 회원권

권당 가액이 5백만원 이상인 모든 회원권을 신고

- (신고대상) 권당 가액이 5백만원 이상인 골프·헬스·콘도미니엄 등의 모든 회원권
※ 콘도미니엄은 부동산 소유권으로 등기되어 있어도 '회원권' 항목에 신고하고 변동사유란에 면적 기재
- (골프회원권) 신규 매입한 경우 평가액(지방세 시가표준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가액을 등록하되, 둘 중 어느 하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확인 가능한 가격으로 등록
 - 이전 신고 시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경우 시가표준액과 비교하여 높은 금액 신고 (이전 신고 시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한 경우 시가표준액으로 신고)

- **(그 외 회원권)** 매입가격으로 신고하고, 매도한 경우 현재 가액을 '0원'으로 신고(☑ 매도) 후 '실거래가격'란에 매도 가격을 기재
 - ※ 매도 등 실거래 없이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종전에 신고한 가액 유지
 - ※ 시가표준액은 위택스(WETAX), 이택스(ETAX) 또는 회원권 소재지 지자체에 문의

12. 지식재산권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을 신고

- **(신고방법)**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종류, 권리의 존속기간·등록번호 등 지식재산권의 권리명세 기재
- **(가액산정)** 지식재산권에서 발생한 연간소득금액을 신고하고, '변동사유'란에 소득원인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13.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금액에 관계없이 합명·합자·유한회사에 대한 출자지분이 있는 경우 신고

- **(신고방법)** 합명·합자·유한회사에 대한 출자가액, 출자지분, 연간 매출액 등의 정보를 신고
 - ※ 「상법」상 회사가 아닌 개인사업체에 대한 출자지분은 등록대상 아님
 - ※ 사업을 위해 등록대상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각 부동산, 자동차, 예금, 채권, 채무 등 보유 형태에 따라 **해당 항목에 신고**하고, '변동사유'란에 사실관계 기재
- **(확인방법)** 투자한 회사의 종류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주식회사인 경우 증권 항목에 '주식'으로 신고하고, 합명·합자·유한회사인 경우 '출자지분'으로 신고

공개대상자의 경우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에 대한 **재산형성과정**(취득일자·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반드시 기재

- **(취득일자)** 출자일,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재일 등
- **(취득경위)** 회사와의 관계, 출자목적 등
- **(소득원)**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간 채무 등 해당 출자지분의 자금 출처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14.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금액에 관계없이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이 있는 경우 신고

- (신고방법)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금액 또는 출연재산, 법인의 내역(명칭, 소재지, 대표자 등), 출연자가 비영리법인에서 보유하는 직위 및 직무 등을 신고
 - ※ 복지시설이나 자선단체 등에 납부한 기부금 또는 펀드 등은 신고 대상 아님
 - ※ 교회나 종중 등 사단·재단의 소유이나 등록대상자의 명의된 재산의 경우, '해당 항목'에 신고하고, '변동사유'란에 사실관계 기재
 - 이미 신고한 비영리법인 출연재산, 보유직위, 법인명칭, 대표자 등이 변동된 경우 변동내역을 신고
- (확인방법) 「민법」상 사단·재단법인과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비영리법인인 경우에 신고

주요 실수 사례

□ 기타

- ① 재산을 축소 신고하는 것은 문제되지만, 과다 신고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가액을 여유있게 신고함
 - ※ 재산신고는 등록의무자가 보유한 재산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하며, 재산을 신고하지 않거나(누락), 많이 신고하거나(과다), 축소 신고하는(과소) 것 모두 잘못된 신고임. 심사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② 9월경 최초 신고하고 12. 31.까지 기간이 짧아 특별히 재산의 변동사항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전체 변동없음'으로 신고
 - ※ 변동대상기간이 짧더라도 최소한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예금, 보험, 주식 등의 변동이 발생하므로 정확하게 확인 후 신고해야 함
 - ※ '전체 변동없음' 신고시 가중 처분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념
- ③ 지난번 신고 때 특별히 지적 받은 사실이 없어 잘못된 방식으로 계속 신고함
 -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별 잘못 신고한 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또는 심사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 등은 별도 지적사항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항목별 신고방법을 정확하게 숙지한 후 신고해야 함

기타 Q&A

질 문	답 변
① 재산신고를 잘못된 경우 어떠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 등록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빠트리거나 가액합산 등을 잘못 기재한 경우 재산등록서류의 보완명령을 받을 수 있고 •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허위자료 제출·거짓 소명 등 불성실하게 재산등록하거나 심사에 응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면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해임 또는 징계 의결 요구 처분을 받을 수 있음
② 재산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 병가, 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재산등록기간의 연장이 필요하여 신청한 경우 재산공개자는 20일까지, 그 밖의 등록의무자는 30일까지 등록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음

4 변동요약서 작성

재산항목별 증감사유 및 순재산 증감사유를 상세하게 기재

- (증감액 계산) 총괄표상의 증감액(가액으로 계산)과 변동요약서(실거래가격이 있는 경우 실거래가격으로 계산)상 순재산 증감액은 계산방식 차이로 인해 서로 다를 수 있음

※ 순재산 증감액은 가액변동 금액은 제외된 금액이므로 증감사유를 가액변동으로 기재하면 안됨

- (작성방법) 재산변동기간* 동안의 본인소득, 본인 외 소득자수 및 소득금액을 기재
- 소득은 천원 단위로 근로소득, 임대소득 등을 세전 기준으로 합산 신고

* '22년 정기 변동신고를 한 사람 : '22. 1. 1.~12. 31. 기간 소득

※ '21.10.1.~'22.9.30. 중 최초(승진) 또는 재등록한 사람 : 해당일~'22.12.31. 기간 소득

- **(오류확인)** 소득대비 순재산의 증감 폭이 큰 경우 재산의 증감 현황, 재산의 가액 입력 오류(단위 입력 오류 포함) 등 **총괄표에 기재된 재산항목을 재확인**

※ 매입한 부동산 또는 분양권의 누락 확인, 건물임대 보증금 신고 여부 확인, 가액 오기 확인, 사인간 채권·채무, 소득금액 누락·과다 등 확인

□ 변동요약서 작성 예시

- 소득이 6천만원인데 순재산 6천만원 증가인 경우 증가 사유
 - (수입) 급여 5천만원, 임대소득 1천만원, 펀드평가액 1천만원, 상속 3천만원 (지출) 자녀교육비 1천만원, 생활비 3천만원
- 소득이 1억원(본인 6천만원, 배우자 4천만원)인데 순재산 2천만원 감소인 경우 감소 사유
 - 자녀유학비 4천만원, 부모요양비 3천만원, 주택담보이자 1천만원, 펀드손실 1천만원, 생활비 3천만원(※ 생활비 사용내역은 연말정산서 등 참조)
- 부동산 매입·매도 등을 위해 계약금을 지급 또는 수령한 경우 해당 내역
-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보유한 경우 해당 통화 보유수량 및 취득가액, 평가액(신고기준일 현재) 등을 기재

5 공개목록 작성(재산공개대상자에 한함)

관보를 통해 **대국민 공개가 되는 사항**으로 재산항목별 정확하게 신고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작성**

- **(개인정보)** 재산신고서 작성 후 자동 생성되는 공개목록 초안을 기초로 작성하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
- **(소속·직위)** 신고기준일의 소속 및 직위를 기입
 - **(광역의원)** 【소속: ○○시·도의회】 / 【직위: 장/의원】
 - **(기초단체장)** 【소속: ○○시·도 ○○시·군】 / 【직위: 시장·군수·구청장】
 - **(소속기관)** 【소속: ○○부 ○○(기관명)】 / 【직위: 사장, 총장 등】

예 교육부 부산대학교/총장,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 **(건물)** 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은 **번지와 동·호수 기재 생략**

예 단독주택: ○○시 ○○동 대지 --㎡ 건물 --㎡
아파트: ○○시 ○○동 ○○아파트 건물 --㎡

특히, 외국 소재 부동산 소유권 등의 경우 세부주소가 드러나지 않도록 작성 필요

- **(자동차)** 연식, 차종, 배기량을 기재하고, **차량번호와 차량 제조회사**는 기재 생략
예) 2013년식 소나타 배기량(2000cc)
- **(채권·채무)** 채권·채무자의 주소, 성명 및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지 않도록 주의
- **(고지거부 등)** 고지거부하거나 등록제외한 친족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변동사유란에 기재(독립생계유지, 타인부양 등)
- **(변동사유)** 매도·매입·상속·가액변동 등 재산증감 주요 변동원인을 적고, 재산의 증감일자·증감경위·소득원 등 소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재
 - 개인별, 계좌별로 특이사항이 있으면 기재예) 사모펀드의 경우 자산운용사·사모펀드 유형을 변동사유에 기재

6 신고서 제출

재산항목별로 정확하게 신고한 후 반드시 신고서 '제출' 버튼 클릭

- **(신고마감)** 2023.2.28.(화) 24:00이전까지 제출
- **(제출방법)** 각 재산항목 '저장' 후 신고서 제출 화면에서 반드시 '제출' 버튼을 클릭해야 신고가 완료됨
- **(신고서 수정)** 2023.3.10.(금)까지 신고서 수정 가능. 단, '신고서 수정 요청' 버튼 클릭 후 소속기관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승인된 경우에만 수정 가능
 - ※ 신고기간(1.1.~2.28.) 중에는 신고서를 제출한 후에도 언제든지 수정 가능

참고 5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예시)

소 속		세종특별자치시 의회		직 위	의원		성 명	김공직
단위(천원)								
본인 과의 관계	재산의 종 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 가액	변동액		현재 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액)	감소액 (실거래액)			
▶ 토지(소계)			550,000	620,000	350,000	820,000		
본인	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번지 1,000㎡	100,000	20,000	0	120,000	가액변동	
본인	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200번지 2,000㎡(1,000㎡ 증가)	100,000	200,000 (250,000)	0	300,000	대여금 회수로 매입	
배우자	잡종지	서울 강남구 신사동 300번지 1,000㎡(1,000㎡ 증가)	0	200,000	0	200,000	장인으로부터 증여	
조부	임야	서울 강남구 논현동 400번지 0㎡ (1,000㎡ 감소)	200,000	0	200,000 (250,000)	0	부의 대지매입에 사용	
부	대지	서울 종로구 부암동 500번지 990㎡ (990㎡ 증가)	0	200,000 (220,000)	0	200,000	조부의 임야매도금으로 매입	
본인	대지	서울 종로구 누상동 151-3번지 500㎡ (500㎡ 감소)	150,000	0	150,000	0	매도	
▶ 건물(소계)			350,000	600,000	150,000	800,000		
본인	아파트	서울 종로구 적선동 현대아파트 80㎡ (건물 80㎡ 증가)	0	150,000 (150,000)	0	150,000	대지매도로 구입	
본인	아파트 (분양권)	서울 종로구 적선동 삼성아파트 90㎡ (건물 90㎡ 증가)	0	150,000 (500,000)	0	150,000	신규분양, 분양가 : 500,000천원, 전세보증금으로 납입	
배우자	연립 주택	서울 종로구 적선동 경희궁빌라 90㎡	100,000	50,000	0	150,000	가액변동	
배우자	연립 주택 (분양권)	서울 종로구 적선동 덕수궁빌라 90㎡	100,000	100,000 (300,000)	0	200,000	중도금납부, 분양가 : 300,000천원, 건물임대료로 납부	
부	전세권 (임차권)	서울 종로구 적선동 롯데아파트 0㎡ (90㎡ 감소)	150,000	0	150,000	0	계약만료	

단위(천원)

본인 과의 관계	재산의 종 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 가액	변동액		현재 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액)	감소액 (실거래액)		
차남	근린 생활 시설	서울 종로구 적선동 현대상가 100㎡ (건물 100㎡ 증가)	0	150,000	0	150,000	외조부로 부터 증여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7,000	25,000	1,000	31,000	
본인	자동차	2007년식 에쿠우스 배기량 (3,500cc) 증가	0	25,000 (25,000)	0	25,000	신규구입
배우자	자동차	2002년식 뉴소나타 배기량 (2,000cc)	7,000	0	1,000	6,000	가액변동
▶ 현금(소계)			10,000	0	5,000	5,000	
배우자		현금 감소	10,000	0	5,000	5,000	생활비 지출
▶ 예금(소계)			135,000	25,000	38,000	122,000	
본인		국민은행 10,000(15,000 감소), 우리은행 5,000(3,000 증가)	17,000	3,000	15,000	5,000	가액변동 채권회수로 구입
배우자		우리은행 30,000(20,000 감소)	50,000		20,000	30,000	
부		농협 50,000(20,000 증가), 대한생명보험 30,000 (2,000감소)	62,000	20,000	2,000	80,000	
차남		삼성생명보험 7,000(2,000 증가), 국민은행 0 (1,000감소)	6,000	2,000	1,000	7,000	
▶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소계)			0	0	0	0	
▶ 증권(소계)			95,000	15,000	30,000	80,000	
본인	상장 주식	삼성전자 5,000주, KT 100주	25,000	5,000	0	30,000	가액변동 채권회수로 구입
배우자	상장 주식	한국기업 5,000주(100주 증가), KT 0주(100주 감소)	20,000	10,000	10,000	20,000	
배우자	공채	서울도시철도공사, 50좌	50,000	0	20,000	30,000	
▶ 채권(소계)			70,000	20,000	10,000	80,000	
본인		사인간 채권 감소	20,000	0	10,000	10,000	증권매입에 사용
배우자		사인간 채권 증가	50,000	20,000	0	70,000	예금인출로 대여
▶ 채무(소계)			70,000	140,000	30,000	180,000	
본인		사인간 채무 감소	20,000	0	10,000	10,000	예금인출로 일부 상환
배우자	금융 기관 채무	국민은행 10,000(20,000 감소), 우리은행 20,000(10,000 증가), 신한은행 40,000(20,000 증가)	50,000	30,000	20,000	60,000	보급으로 상환

단위(천원)

본인 과의 관계	재산의 종 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 가액	변동액		현재 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액)	감소액 (실거래액)		
부	기타	중앙기업 10,000(10,000 증가)	0	10,000	0	10,000	생활비 사용
부	건물 임대 채무	서울 종로구 적선동 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증가	0	100,000	0	100,000	지인에게 대여
▶ 금 및 백금(소계)			20,000	15,000	0	35,000	
배우자		24K 금 100g(100g 증가)	0	10,000 (10,000)	0	10,000	신규구입
배우자		24K 금 200g	20,000	5,000	0	25,000	가액변동
▶ 보석류(소계)			30,000	5,000	0	35,000	
배우자		다이아몬드 반지, 1캐럿 증가	0	5,000 (5,000)	0	5,000	예금인출로 매입
배우자		다이아몬드 반지, 5캐럿	30,000	0	0	30,000	
▶ 골동품 및 예술품(소계)			130,000	0	120,000	10,000	
본인	도자기	도자기(고려청자), 작가미상, 160×320cm	120,000	0	120,000 (150,000)	0	매도후 출자
본인	서예	서예 (서예, 60×40cm, 계공, 1994)	10,000	0	0	10,000	
▶ 회원권(소계)			20,000	20,000	11,000	29,000	
본인	골프	한국컨트리클럽 감소	10,000	0	10,000 (12,000)	0	콘도회원권 구입에 사용
본인	골프	서울C.C	10,000	0	1,000	9,000	가액변동
배우자	콘도 미니엄	현대콘도미니엄 증가	0	20,000	0	20,000	
▶ 지식재산권(소계)			-	-	-	-	
본인	특허권	○○에 관한 특허 증가	-	-	-	-	연·월·일 신규등록
▶ 합명·합자·출자지분(소계)			80,000	20,000	0	100,000	
본인	출자	(유)서울기업, 출자가액 100,000천원, 지분비율 : 40%, 연간매출액100,000천원 (10,000천원 감소)	80,000	20,000	0	100,000	출자금액 증가

단위(천원)

본인 과의 관계	재산의 종 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 가액	변동액		현재 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액)	감소액 (실거래액)		
▶ 비영리법인의 출연재산(소계)			-	-	-	-	
본인	출연	한국장학재단, 보유직위: 재단이사장, 출연금 100,000천원	-	-	-	-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			-	-	-	-	
장남		고지거부	35,000	0	35,000	0	독립생계유지
장녀		등록제외	20,000	0	20,000	0	결혼
▶ 총 계			1,567,000	1,505,000	745,000	2,327,000	증감액 : 760,000천원 (가액변동 68,000천원)

위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등록의무자

(서명 또는 날인)



공직윤리시스템(PETI) 이용 재산신고 방법

Ministry of Personnel Management

III

공직윤리시스템(PETI) 이용 재산신고 방법

▶ 2023년도 정기 재산변동신고 대상자는 공직윤리시스템(PETI) 입력방법을 숙지하여 소유 재산을 빠짐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윤리시스템 재산등록 순서

1	공직윤리시스템(PETI) 접속	56
1-1.	시스템 접속 [정기변동신고 기간 메인 화면]	56
1-2.	로그인 후 사전 확인 사항	58
2	고지거부 허가 현황 및 정보제공동의서 현황 확인	59
2-1.	고지거부 허가(재심사) 신청	59
2-2.	고지거부 신청(진행) 현황	61
2-3.	고지거부 심사결과(허가) 현황	62
2-4.	금융 및 부동산정보 제공 동의현황 확인	63
3	정기재산변동신고서 작성	65
3-1.	PETI 메뉴 주요기능	65
3-2.	신고서 작성화면	66
3-3.	본인 정보 입력	67
3-4.	친족 정보 입력	69
3-5.	재산항목별 작성 방법	73
	• 부동산(토지·건물) 정보열람 및 신고방법	76
	• 금융정보 활용입력방법	87
	• 비상장주식 신고방법	92
	• 신고내역검증	117
3-6.	변동요약서 작성	120
3-7.	공개목록 작성(공개자에 한함)	122
3-8.	신고서 제출 및 완료	123
4	신고서 제출 후 조회·수정	124
4-1.	제출신고서 조회	124
4-2.	신고서 수정요청 및 승인확인	125
5	주식 매각·백지신탁 신고(공개대상자 등)	126

1 공직윤리시스템(PETI) 접속

1-1. 시스템 접속 [정기변동신고 기간 메인 화면]

PETI 공직윤리시스템

자산신고 바로가기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2023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

정기 재산변동 신고기간 : 1.1.(월) ~ 2.28.(목) **신고 안내서**

- 제공받은 금융정보를 활용한 재산신고 : 1.25.(화) ~ 2.28.(목)
 - 회신된 금융정보의 이상유무 확인 : 1.16.(목) ~ 1.20.(금)
 - ※ 이상이 있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수정 요구해야 함
- 증권항목으로 회신된 비상장 주식·국채·금융채·회사채 등은 직접 입력해야 함 (활용입력 안함)
- 신고서 수정 요청 : 3.1.(화) ~ 3.10.(금)

고지거부 신청안내

고지거부란? 고지거부 신청서 안내영상(화기) 안내영상(재심사)

고지거부 신청기간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지거부 허가 신청기간 : 1.1.(월) ~ 1.31.(목)
 - 최초로 고지거부 신청을 하는 경우
 - 2022.12.30.에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재심사 신청을 못한 경우 또는 재심사 불허된 경우
- 고지거부 재심사 신청기간 : 1.1.(월) ~ 2.28.(목)
 - 고지거부 허가기간이 2023.12.30.까지로 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재산을 잘못 신고(과다·과소·누락 신고)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또는 징계요청 요구
- 일관신문 공표
- 과태료 부과
- 경고 및 시정조치

업무망으로도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에 접속 및 재산신고 가능합니다.

※ 별도 통신망을 사용하는 기관은 제외
(국회, 국방부, 국세청, 경찰청,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신고하기 (로그인)

로그인 이용안내 | 환경설정 안내 | 자주 묻는 질문

시스템 이용 문의 **1522-4273**
평일 09~18시 / 점심시간 12~13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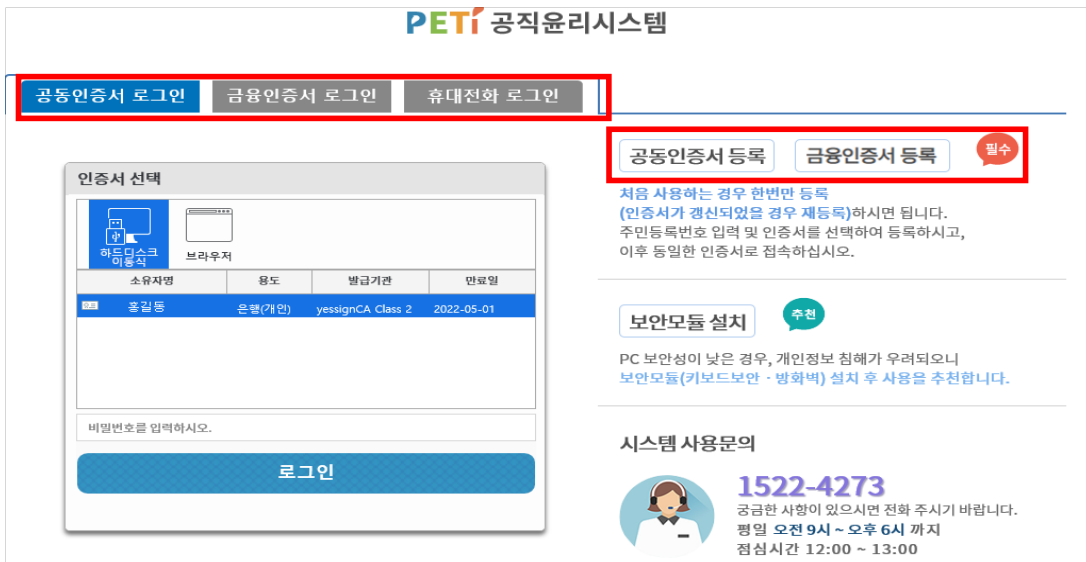
-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어 주소창에 “https://www.peti.go.kr”을 입력하여 “재산신고 바로가기”로 접속

- Internet Explorer, Microsoft Edge, Chrome 브라우저 사용 가능

- 정기변동신고 시 첫 화면에 표시되는 각종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

- 로그인 이용안내** 클릭하여 로그인 시 오류사항에 대해 조치방법 확인

- **신고하기 (로그인)** 버튼을 클릭 시 이동하는 화면



PETI 공직윤리시스템

공동인증서 로그인 | 금융인증서 로그인 | 휴대전화 로그인

공동인증서 등록 | **금융인증서 등록** 필수

인증서 선택

소유자명	용도	발급기관	만료일
홍길동	은행(개인)	yesignCA Class 2	2022-05-01

비밀번호를 입력하십시오.

로그인

공동인증서 등록

처음 사용하는 경우 한번만 등록
(인증서가 갱신되었을 경우 재등록)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입력 및 인증서를 선택하여 등록하시고,
이후 동일한 인증서로 접속하십시오.

보안모듈 설치 추천

PC 보안성이 낮은 경우,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오니
보안모듈(키보드보안 · 방화벽) 설치 후 사용을 추천합니다.

시스템 사용문의

1522-4273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까지
접속시간 12:00 ~ 13:00

- 인증서를 재발급 받았거나 처음 시스템에 로그인하는 경우
 - 사용하는 인증서에 따라 **공동인증서 등록** 또는 **금융인증서 등록** 클릭하여 등록
 - 사용할 인증서 암호 입력하여 시스템 접속
- 기존에 사용하던 인증서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사용할 인증서에 따라 암호 입력 후 **로그인** 을 클릭하여 시스템에 접속
- 인증서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를 활용한 '휴대전화 로그인' 가능

※ 사용 가능한 인증서의 종류

-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 공무원용 인증서, 소속기관의 담당부서*를 통해 발급
 - * 담당부서는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 홈페이지(www.gpki.go.kr)에서 확인
-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 민간인증기관 등을 통해 발급

* 금융인증서는 인터넷망에서만 사용 가능

※ 인증서 저장매체 아이콘과 인증서 목록이 안보인다면

인터넷익스플로러(IE) > 인터넷옵션 > 보안 탭 >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선택 후
“사이트 ” 클릭하여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에

“*.peti.go.kr”을 등록하고 로그인 확인

☞ 크롬(Chrome), 엣지(MS Edge) 브라우저는 별도 설정이 필요 없음

1-2. 로그인 후 사전 확인 사항

홍길동님은 고지거부 재심사 대상자입니다.
 반드시 2023.02.28까지 신청하셔야만 고지거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② 재심사 신청 바로가기

홍길동님 : 재산변동신고서 (정기변동) | 공개구분 : 비공개 | 등록기준일 : 2022.12.31. | 제출마감일 : 2023.02.28 | 고지거부 신청마감일 : 2023.01.31. | [남은 시간 : 29분 57초] | 접속연장 | 로그아웃

PETI 공직윤리시스템 | 마이페이지 | 재산신고 | 주식매각(백지신탁) | 취업심사 | ③ | 게시판

마이페이지

- 마이페이지
- 신고서조회
- 정보제공동의
- 고지거부신청
- 신고기간연장신청
- 신고유예신청
- 기타 비상장주식 가액계산

홍길동님 환영합니다.

- 소속 : 인사혁신처
- 신고서 진행상황 : 미작성
- 등록기준일 : 2022.12.31.
- 제출

재산변동신고서(정기변동)

- 재산을 팔듯 신고하거나 기타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 2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징계의결 요구, 과태료 부과 등의
법적 처분이 가능하오니 정확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서 작성

심사관 알림사항

※ 윤리업무담당자가 심사 시 특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확인 후 신고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차기 재산신고시 참고사항

- 건물의 전세권은 "건물"항목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20년 12월에 대출받은 금액중 빌려준돈은 사인간채권에 신규등록 하시기 바랍니다.

①

☐ 하루 동안 보지 않기

확인

친족현황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고지거부(기간)	등록대상	등록제외	정보제공동의	
							부동산	금융
배우자	이여향	800101-2222223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22길, 202동 101호 (논현동, 두산위브아파트)		☒		동의	동의
부	홍길	500202-3333334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무삼지로, 602동 108호 (인후동1가, 부영6차아파트)	(2020-12-31 ~ 2023-12-30)	☒		동의	동의
모	홍길	550303-4444445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무삼지로, 602동 108호 (인후동1가, 부영6차아파트)	(2020-12-31 ~ 2023-12-30)	☒		동의	동의

- ①은 심사담당자가 이전 신고서 심사 중 등록의무자가 유의할 사항을 메모한 내용
 - 심사관 알림사항이 있는 등록의무자의 경우만 표시됨
 - 이후에는 재산 항목별 신고 시 **심사관 알림사항** 버튼으로 알림메모 상시 확인 가능
- ②는 올해 '고지거부 재심사' 신청 대상인 등록의무자에게 안내하는 메시지 창으로 **재심사 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고지거부 신청 메뉴로 이동

※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지 3년째 되는 해에 계속해서 친족의 재산을 고지거부하려는 경우 정기변동 신고 기간(2023.1.1.~2.28.) 중에 반드시 재심사 신청해야 함
- ③ 자동 로그아웃되는 시간으로, **접속연장** 클릭하여 남은시간 연장 가능

2 고지거부 허가 현황 및 정보제공동의서 현황 확인

2-1. 고지거부 허가(재심사) 신청

☞ 마이페이지 > 고지거부 신청 > 심사기준보기 > 고지거부 사유별 증명서류

▶ 모든 정보는 '등록기준일인 2022.12.31.' 기준으로 입력 또는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고지거부 허가(재심사) 신청에 대한 심사가 완료되어야 신고서 제출 가능합니다.
▶ 심사 결과가 '불허' 또는 '반려'인 경우 ('고지거부 신청내역'에서 확인 가능) 해당 친족을 '등록대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고지거부 진행단계
작성중 (고지거부 신청이 완료되지 않은 저장상태) → 제출완료 (추가 서류는 등록기관에 별도 문의) → 심사완료 (결과 확인)
※ 고지거부 [제출완료] 상태에서는 수정할 수 없으므로 필요한 경우 소속하신 기관의 관리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친족정보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고지거부(기간)	등록대상	등록제외	정보제공동의	부동산	금융
배우자	이여향	800101-2000000	세종특별자치시 보탈로 15, 9동 909호 (도당동, 도당마을9단지)		☒			-	-
부	홍공	500202-1000000	경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우실지로 10, 602동 108호 (인후동1가, 부영6차아파트)		☒			-	-
모	홍경	550303-2000000	경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우실지로 10, 602동 108호 (인후동1가, 부영6차아파트)		☒			-	-
장남	홍익	900505-100000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마상로 71, 401호 (주교동, 덕양빌라)		☒			-	-
장녀	홍주	920606-2000000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강원대학길 1 (효자동, 강원대학교)		☒			-	-

고지거부 신청(진행) 현황
※ 진행단계가 [작성중]인 것은 미제출 상태이므로, 해당 건을 선택하여 나오는 화면에서 [제출] 버튼을 눌러 [제출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지거부 허가신청 시 오른쪽 상단의 고지거부 마감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구분	신청사유	진행단계	신청일
조회 자료가 없습니다						

☞ 재산신고 > 친족정보입력 > 고지거부자가진단

▶ 고지거부 자가진단은 진단 결과와 실제 신청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고지거부 기본정보

· 신청자 기준 ☐ 정기변동신고대상자 신규허가 ☐ 정기변동신고대상자 재심사 ☐ 수시(최초, 퇴직, 의무면제 등) 재산신고 신규허가

· 고지거부 사유: · 현 주거지 구분: · 가구원수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 · 소득기준(월): 0(천원)

※ 소득액은 세금 공제 전 총소득액 기준(천원단위 미만은 결사) / ※ 소득(재직)기간이 등록기준일(신청일) 이전, 1년 이상 이어야 합니다.

총 소득 (일반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0(천원)
▶ 소계(일반소득 월 환산액)				0(천원)
일반소득	근로소득(년)		0(천원)	월 소득환산 (천원)
	임대소득(월)		0(천원)	월 소득환산 (천원)
	연금소득(년)		0(천원)	월 소득환산 (천원)
	사업소득(년)		0(천원)	월 소득환산 (천원)
	금융소득(년)		0(천원)	월 소득환산 (천원)
	기타소득(년)		0(천원)	월 소득환산 (천원)
	농업소득 경지면적(㎡)		0(㎡)	농업소득 월 소득환산 (천원)
▶ 소계(재산소득 월 환산액)				0(천원)
재산소득	부동산 및 금융자산		0(천원)	월 소득환산 (천원)
	소득환산율(기준일 CD금리)		0(%)	금융투자협회 채권금리에서 기준일 CD금리 확인 : http://www.kofibond.or.kr

고지거부 자가진단하기

- ① 고지거부 신청 전 **고지거부 자가진단**을 통하여 허가요건에 충족한지 확인 가능
 - 정기변동신고대상자 신규허가 : 2022.12.31.기준 허가요건 적용('22년 소득기준 적용)
 - 정기변동신고대상자 재심사 : 2023.1.1. 이후 허가 기준 적용('23년 소득기준 적용)
 - 수시 재산신고 신규허가 : 수시신고가 발생한 해('23.1.1. 이후) 허가 기준 적용

고지거부신청

성명	홍길동				
신청구분	☒ 허가 ☐ 재심사	신청일	2023-01-23	공개여부	비공개
소속	인사혁신처	직급	서기관	직위	

고지거부 사유별 증빙서류 | 친족에서추가 | 삭제 | 서식다운로드

☒	관계	친족명	주민등록번호	고지거부사유	기타사유
☒	부	홍길	500202-1000000	독립생계유지	
☒	모	홍길	550303-2000000	독립생계유지	

고지거부신청서 (첨가)

☐	파일 이름	파일 크기	등록일자
☒	고지거부 신청서.jpg	205.63 KB	

최대 1 개 용량 무제한 | jpg, gif, tif, zip, pdf, bmp, png 파일만 가능 | 1 개, 205.63 KB 추가됨

파일추가 | 파일삭제

증빙서류

☐	파일 이름	파일 크기	등록일자
☒	고지거부 증빙서류.jpg	205.63 KB	

최대 10 개 용량 무제한 | jpg, gif, tif, zip, pdf, bmp, png 파일만 가능 | 1 개, 205.63 KB 추가됨

파일추가 | 파일삭제

※ 고지거부기간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반려 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의 윤리업무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 자료가 많으실 경우 압축파일(확장자 : ZIP)로 업로드 가능합니다.

저장 | 삭제 | 제출 | 닫기

- ② 신규로 고지거부를 신청할 경우 [마이페이지] → [고지거부신청] 메뉴에서 **고지거부 신청** 버튼을 클릭
- 친족에서추가** 버튼 클릭하여 고지거부 신청 친족을 선택 후 고지거부 사유 등 신청내역을 작성, 고지거부 신청서 및 증빙자료 첨부하여 **저장** 하고 상세화면에 생성되는 **제출** 버튼을 반드시 클릭해야만 고지거부 신청이 완료됨
 - 서식다운로드** 클릭하여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신청서」를 출력한 뒤 본인 및 친족의 서명 또는 날인 후 증빙서류와 함께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 제출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가 완료되어야 최종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심사결과가 '불허'인 경우 해당 친족의 재산항목을 모두 등록하여야 함

2-2. 고지거부 신청(진행) 현황

마이페이지 > 고지거부 신청 > 심사기준보기 > 고지거부 사유별 증명서류

▶ 모든 정보는 '등록기준일인 2022.12.31.' 기준으로 입력 또는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고지거부 허가(재심사) 신청에 대한 심사가 완료되어야 신고서 제출 가능합니다.
 ▶ 심사 결과가 '불허' 또는 '반려'인 경우('고지거부 신청내역'에서 확인 가능) 해당 친족을 '등록대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고지거부 진행단계
 작성중(고지거부 신청이 완료되지 않은 저장상태) → 제출완료(추가 서류는 등록기관에 별도 문의) → 심사완료(결과 확인)
 ※ 고지거부 [제출완료] 상태에서는 수정할 수 없으므로 필요한 경우 소속하신 기관의 윤리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친족정보 친족정보입력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고지거부(기간)	등록대상	등록제외	정보제공동의	
							부동산	금융
배우자	이여왕	800101-2000000	세종특별자치시 보합로 15, 9동 909호 (도당동, 도렐마을9단지)		☒		-	-
부	홍공	500202-10000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무삼지로 10, 602동 108호 (인후동1가, 무영6차아파트)		☒		-	-
모	홍경	550303-20000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무삼지로 10, 602동 108호 (인후동1가, 무영6차아파트)		☒		-	-
장남	홍익	900505-100000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마상로 71, 401호 (주교동, 덕양빌라)		☒		-	-
장녀	홍주	920606-2000000	강원도 춘천시 호자동 강원대학교길 1 (호자동, 강원대학교)		☒		-	-

고지거부 신청(진행)현황 고지거부 자기검단 고지거부 신청 고지거부 신청내역

※ 진행단계가 [작성중]인 것은 미제출 상태이므로, 해당 건을 선택하여 나오는 화면에서 [제출] 버튼을 눌러 [제출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지거부 허가신청 시 오른쪽 상단의 고지거부 마감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구분	신청사유	진행단계	신청일
부	홍공	500202-1000000	허가	독립생계유지	제출완료	2023-01-23
모	홍경	550303-2000000	허가	독립생계유지	제출완료	2023-01-23

고지거부 심사결과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일	심사결과	고지거부(기간)	사유	증빙서류
조회 자료가 없습니다							

● 고지거부 진행단계별 유의사항

- **(작성중)** 신청내역 작성중으로 저장만 된 상태, 고지거부 신청기한 내에 제출 필요
- **(제출완료)** 신청내역이 제출되고 윤리업무담당자가 심사 중인 상태, 신청내역 수정이 불가하므로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 윤리업무 담당자에게 요청
 - ※ 고지거부 허가신청이 심사 중인 경우 신고서 제출이 불가하며 심사완료 이후 제출 가능
- **(심사완료)** 고지거부 심사가 완료되었으며, 심사결과를 확인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친족정보' 입력 시 해당 친족의 등록상태를 '고지거부자'로 체크하여 신고서 제출
 - ※ [신고서작성]→[친족정보]에서 해당 친족을 클릭하여 상세화면에서 등록상태를 '고지거부자'로 체크

2-3. 고지거부 심사결과(허가) 현황

마이페이지
고지거부 신청
심사기준보기
고지거부 사유별 증명서류

모든 정보는 '등록기준일인 2022.12.31.' 기준으로 입력 또는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지거부 허가(재심사) 신청에 대한 심사가 완료되어야 신고서 제출 가능합니다.
심사 결과가 '불허' 또는 '반려'인 경우 '고지거부 신청내역'에서 확인 가능) 해당 친족을 '등록대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고지거부 진행단계
작성중(고지거부 신청이 완료되지 않은 저장상태) → 제출완료(추가 서류는 등록기관에 별도 문의) → 심사완료(결과 확인)
※ 고지거부 [제출완료] 상태에서는 수정할 수 없으므로 필요한 경우 소속하신 기관의 윤리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친족정보
친족정보입력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고지거부(기간)	등록대상	등록제외	정보제공동의	
							부동산	금융
배우자	이여향	800101-2000000	세종특별자치시 보합로 15, 9동 909호 (도당동, 도림마을9단지)		☒		-	-
부	홍공	500202-10000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인우동1가 무삼지로 10, 602동 108호 (인우동1가, 부영6차아파트)	(2022-12-31 ~ 2025-12-30)			-	-
모	홍경	550303-20000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인우동1가 무삼지로 10, 602동 108호 (인우동1가, 부영6차아파트)	(2022-12-31 ~ 2025-12-30)			-	-
장남	홍익	900505-100000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마상로 71, 401호 (주교동, 덕양빌라)		☒		-	-
장녀	홍주	920606-2000000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강원대학길 1 (효자동, 강원대학교)		☒		-	-

고지거부 신청(진행)현황
고지거부 자가진단
고지거부 신청
고지거부 신청내역

※ 진행단계가 [작성중]인 것은 미제출 상태이므로, 해당 건을 선택하여 나오는 화면에서 [제출] 버튼을 눌러 [제출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지거부 허가신청 시 오른쪽 상단의 고지거부 마감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구분	신청사유	진행단계	신청일
조회 자료가 없습니다						

고지거부 심사결과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일	심사결과	고지거부(기간)	사유	증빙서류
부	홍공	500202-1000000	2023-01-23	허가	2022-12-31 ~ 2025-12-30	독립생계유지	↓ 다운로드
모	홍경	550303-2000000	2023-01-23	허가	2022-12-31 ~ 2025-12-30	독립생계유지	↓ 다운로드

- ① 고지거부 신청내역 클릭하여 이전 신청한 고지거부 상세내역 확인
- ② 고지거부 심사결과에서 “고지거부 기간”을 확인하여 고지거부 허가기간이 만료되기 전 재심사 신청
 - ※ (예시) 고지거부 기간의 만료일이 2023.12.30.인 대상자는 2023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기간 (2023.1.1.~2.28.) 중 고지거부허가 연장을 위한 재심사 신청 대상자임

2-4. 금융 및 부동산정보 제공 동의현황 확인

마이페이지

- 마이페이지
- 신고서조회
- 정보제공동의**
- 고지거부신청
- 신고기간연장신청
- 신고유예신청

☞ 마이페이지 > 정보제공동의

▶ 정보제공동의서 제출방법

1) 동의할 대상자 및 동의여부 선택(금융, 부동산) → 2) **동의서 내려받기** 버튼 클릭 후 출력하여 서명 → 3) 스캔하여 파일 첨부(PDF 파일만 가능) 후 **동의서 제출**

※ 정보제공동의서 처리(수정, 확인)는 소속하신 기관의 윤리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대전화번호**가 없을 경우 **연락가능한 연락처**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동의서를 신규로 제출하는 경우 2020.06.04.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개정서식의 동의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정보제공시기 안내**

정보제공 동의신청

필수항목 * 추가선택항목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최종신고서 등록기준일	고지거부	등록제외	금융	부동산	실명인증
☐ 부	홍길동	500202-3333334		2022-01-01			☒	☒	인증완료
☐ 모	홍길	550303-4444445		2022-01-01			☒	☒	인증완료

첨부파일 (필수)

☐ 파일 이름: 파일 크기:

여기를 더블클릭 또는 파일을 드래그 하세요.

최대 1 개 용량 무제한 pdf 파일만 가능 0 개, 0 byte 추가됨

1 **동의서 내려받기**

2 **동의서 제출**

3 **정보제공 동의/철회자 현황** 처리상태가 '동의'인 경우에만 정보제공이 됩니다.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금융동의(철회)서 처리상태	금융동의(철회)서 제출일	부동산동의(철회)서 처리상태	부동산동의(철회)서 제출일	금융	부동산	실명여부
☐ 본인	홍길동	800101-1234567	동의	2022-11-15	동의	2022-11-15	☐	☐	
☐ 배우자	이영희	800101-2222223	동의	2022-11-15	동의	2022-11-15	☐	☐	
☐ 장남	홍익	900505-5555556	동의	2022-11-15	동의	2022-11-15	☐	☐	
☐ 장녀	홍주	920606-6666667	동의	2022-11-15	동의	2022-11-15	☐	☐	

※ 동의서 처리중에는 철회처리 불가능합니다.

4 **철회서 서식 다운**

5 **철회서 제출**

6 **정보제공 동의/철회서 진행현황**

제출일	제출구분	처리상태	성명	소속	직급	신청수	파일	반려사유
2022-11-15	동의	승인	홍길동	인사혁신처	4급	4	내려받기	

• [마이페이지] → [정보제공동의]에서 정보제공 동의현황 확인 가능

• 동의서 제출 방법

- ① 동의할 친족에 대해 체크 후 연락처 기재하여 **동의서 내려받기** 클릭한 뒤 서식에 체크한 친족 인적사항 입력내용을 확인 후 출력하여 대상자의 자필 서명을 받아 첨부

※ 2020. 6. 4.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으로 제출

※ 실명인증에 실패한 대상자의 정보제공동의서는 제출 불가하므로 주민등록상 정확한 정보로 변경 후 실명인증하여 동의서 제출 진행(외국인등록번호 소지자는 실명인증 여부 상관없이 제출 가능함)

- ② '정보제공 동의신청'의 목록 중 동의하고자 하는 친족을 체크(✓) 후 **동의서 제출** 을 클릭하여 '금융 및 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가능
 - ③ '정보제공 동의/철회자 현황'에서 '금융 및 부동산 정보제공' 동의 명단을 최종 확인
 - 철회서 제출 방법
 - ④ **철회서 서식 다운** 을 클릭하여 철회하고자 하는 대상자의 인적사항 입력내용을 확인 후 출력하여 대상자의 자필 서명을 받아 스캔하여 첨부
 - ⑤ '정보제공 동의/철회자 현황'에서 철회하고자 하는 대상자 체크(✓) 후 **철회서 제출** 클릭하여 '금융 및 부동산 정보제공' 철회서 제출 가능
 - ⑥ '정보제공 동의/철회서 진행현황'에서 이전 동의/철회서 제출이력 확인
- ※ 동의서 제출 후 첨부파일 변경, 친족명단 추가 등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기관 윤리업무 담당자에게 반려 요청하여 내용 보완 후 제출

3 정기재산변동신고서 작성

3-1. PETI 메뉴 주요기능

① **로그인** : 재산변동신고서 (정기변동) | **공공** : 비공개 | **등록기준일** : 2022.12.31. | **재용마감일** : 2023.02.28. | **고지거부 신청마감일** : 2023.01.31. | **남은 시간** : 29분 57초 | **접속현황** | **로그아웃**

PETI 공직윤리시스템 | **마이페이지** | **재산신고** | **주식매각 (백지신탁)** | **취업심사** | **계시판**

② **마이페이지**

- 신고서조회
- 정보제공동의
- 고지거부신청
- 신고기간연장신청
- 신고유예신청
- 기타 비상장주식 가액계산

홍길동님 환영합니다.

- 소속 : 인사혁신처
- 신고서 진행상황 : 미작성
- 등록기준일 : 2022.12.31.
- 제출마감일 : 2023.02.28.

재산변동신고서(정기변동)

- 재산을 잘못 신고하거나 기타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 2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징계의결 요구, 과태료 부과 등의 법적 처분이 가능하오니 정확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서 작성

연도별 재산총액 변동(최근 5회)

(단위: 억)

연도	재산총액
2022	80,000
2022	70,000

예금/보험 항목 재산변동

(단위: 만원)

항목	재산변동
예금/보험	80,000
2022	70,000

심사처분결과 (최근 3회)

등록기준일	처분결과
	처분 내역이 없습니다

친족현황 - 현재 등록된 친족현황으로 친족정보는 [신고서 작성]시에만 변경 가능합니다.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고지거부(기간)	등록대상	등록제외	정보제공동의
							무통산
배우자	이영향	800101-2222223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22길, 202동 101호 (논현동, 두산위브아파트)		☒		동의
부	홍길	500202-3333334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우성리, 602동 108호 (인후동1가, 부영6차아파트)		☒		동의
모	홍길	550303-4444445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우성리, 602동 108호 (인후동1가, 부영6차아파트)		☒		동의
장남	홍길	900505-555555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우고동 마성로, 401호 (우고동)		☒		동의

- ①은 등록의무자의 신고서 종류 및 일정 안내
- ②는 PETI 시스템의 메뉴 주요기능

메뉴명	하위메뉴	주요기능
신고서조회	제출신고서 조회	과거 제출한 신고서, 조회 및 출력
	재산변동요약서 조회	과거 변동요약서 조회 및 출력
	공개목록조회	과거 공개목록 조회 및 출력(공개자에 한함)
	연도별 변동흐름 조회	과거 제출한 신고서 간의 변동흐름 조회
	소명서관리	소명서 작성 및 소명이력 조회
	보완신고서 관리	보완신고 이력 및 보완요청 내역 조회
	정보제공동의	정보제공동의·철회서 제출 및 신청내역 확인
	고지거부신청	고지거부 신청 및 신청내역 확인
	신고기간연장신청/신고유예신청	기간연장 및 신고유예 신청 및 신청내역 확인
	기타 비상장주식 가액계산	기타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계산해볼 수 있는 기능

3-2. 신고서 작성화면

홍길동님: 재산변동신고서 (정기변동) | 통계구분: 비공개 | 등록기준일: 2022.12.31. | 제출마감일: 2023.02.28. | 고지거부 신청마감일: 2023.01.31. | [남은 시간: 29분 57초] | 검색연장 | 로그인아웃

PETI 공직윤리시스템 | 마이페이지 | **재산신고** | 주식매각(백지신탁) | 취업심사 | 게시판

마이페이지

- 마이페이지
- 신고서조회
- 정보제공동의
- 고지거부신청
- 신고기간연장신청
- 신고유예신청
- 기타 비상장주식 가액계산

홍길동님 환영합니다.

- 소속: 인사혁신처
- 신고서 진행상황: 미작성
- 등록기준일: 2022.12.31.
- 제출마감일: 2023.02.28.

재산변동신고서(정기변동)

- 재산을 잘못 신고하거나 기타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 2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징계의결 요구,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처분이 가능하오니 정확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서 작성

연도별 재산총액 변동(최근 5회)

(단위: 억)

연도	재산총액
2022	8.5
2022	8.5

예금/보험 | **향목 재산변동**

(단위: 천원)

연도	예금/보험
2022	75,000
2022	75,000

심사처분결과 (최근 3회)

등록기준일	처분결과
처분 내역이 없습니다	

친족현황 - 현재 등록된 친족현황으로 친족정보는 [신고서 작성]시에만 변경 가능합니다.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고지거부(기간)	등록대상	등록제외	정보제공동의	
							부동산	금융
배우자	이여왕	800101-2222223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22길, 202동 101호 (논현동, 두산위브아파트)		☒		동의	동의
부	홍광	500202-3333334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무상지로, 602동 108호 (인후동1가, 부영6차아파트)		☒		동의	동의
모	홍경	550303-4444445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무상지로, 602동 108호 (인후동1가, 부영6차아파트)		☒		동의	동의
장남	홍익	900505-555555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마성로, 401호 (주교동)		☒		동의	동의
장녀	홍주	010606-6666667	가위시 초원11 (송진동 가위마을가 (송진동 가위마을가 1가 11사대))		☒		동의	동의

- 로그인 후 나타나는 화면에서 상단의 **재산신고** 메뉴 또는 화면 우측의 **신고서작성** 버튼클릭
- 정기변동신고서가 생성되지 않았거나, 신고서를 이미 제출한 경우 **제출완료** 버튼이 보임
- 재산등록 대상이나 신고서가 생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 소속기관에 문의하여 신고서 생성 요청

3-3. 본인 정보 입력

등록의무자의 본인정보 확인

STEP.01 본인정보	STEP.02 친족정보	STEP.03 충팔표작성	STEP.04 변동요약서	STEP.05 신고서제출
☞ , 재산신고 , 본인정보입력 ○ 모든 정보는 "등록기준일인 2022.12.31." 기준으로 입력 또는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한글 : 홍길동	한자 :	주민등록번호	800101 - 1234567
소속	대표소속 : 인사혁신처 상세소속 : 윤리복무국 윤리정책과 선택하기 ☐ 상세소속이 없을시 체크			
직급 (필수)	4급 선택하기			
직위	윤리정책과장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기재 ※ 예 : 윤리정책과장(○), 과장(X)			
자택주소 (필수)	① 도로명 30098 주소찾기 ☒ 법정동주소 여부 ②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로 15 9 동 909 호 (도담동 , 도렘마을9단지) 주소찾기 ※ 지번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담동 855 도렘마을9단지			
거주형태 (필수)	자가 주소찾기			
직장주소 (필수)	도로명 30102 주소찾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동 호 (어진동 , 세종포스트빌딩) 주소찾기			
연락처	자택 --선택-- - ※ 해외 전화번호일 경우 '기타' 선택 직장 --선택-- - ※ 해외 전화번호일 경우 '기타' 선택 휴대전화 (필수) 010 1522 - 4273 ※ SMS수신 및 로그인을 위해 현행화 하여 기재 전자우편 (필수) gong @ korea.kr 공직자통합메일 온나라메일 @ mail.go.kr ※ 온나라메일을 입력할 경우 내부업무메일로 정보를 받을 수 있음			
저장			다음	

- 정기변동신고서 작성의 첫 번째 단계로, 등록기준일 현재 등록의무자의 성명, 상세소속, 직급, 직위, 자택주소 등 본인의 신상명세를 반드시 현행화하여 작성

◆ (필수) 표시는 필수입력사항

- 등록의무자의 한글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일, 신고서 종류, 소속 등의 기본정보가 잘못된 경우, 소속기관의 윤리업무담당자에게 정정요청
- 소속은 상세소속만 변경이 가능하며, 선택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상세소속을 조회한 후 입력

※ 대표소속이 변경된 경우 소속기관의 윤리업무담당자에게 소속 변경을 요청

• 주소 입력 방법

구 분	처리방법
도로명주소가 있는 국내 주소지	주소찾기 로 검색 후 선택
도로명주소가 없거나 국외(해외)인 경우	① 을 [기타(국외 등)]로 선택 후 주소를 직접 입력

- ② **법정등주소 여부** ☒ 에 체크 되어있지 않을 경우 **주소찾기** 선택하여 주소 재입력
- 항목 입력을 마치면 '저장'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친족정보입력' 화면으로 이동
- 의무자의 자택주소 변경 시 친족주소 일괄변경 가능

친족주소 일괄변경 알림

■ 귀하의 기존 주소와 일치하는 친족이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 이여왕 (배우자)

위 친족의 주소를 귀하의 변경된 주소로 일괄 변경 하시려면 **[일괄변경]** 을 선택하시고,
기존 주소를 유지하시려면 **[유지]** 를 선택하세요.

일괄변경

유지

기 능	내 용
일괄변경	(등록의무자와 친족의 주소가 같은 경우)친족의 자택 주소를 등록의무자의 변경된 주소지로 일괄 변경
유지	(등록의무자와 친족의 주소가 다른 경우) 등록의무자의 자택 주소만 변경하고 친족의 자택 주소는 '친족정보입력'에서 직접 변경

3-4. 친족 정보 입력

■ 친족현황(등록의무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STEP.01
본인정보
STEP.02
친족정보
STEP.03
총괄표작성
STEP.04
변동요약서
STEP.05
신고서제출

☛ 재산신고, 친족정보입력

▶ 모든 정보는 '등록기준일인 2022.12.31.' 기준으로 입력 또는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 등록의무자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등록대상 친족보기

비대상 : 계부(새아버지), 계모(새어머니), 양부모, 시(조)부, 시(조)모, 계자녀, 양자녀, 며느리, 형제자매, 결혼한 딸 등

• 등록된 친족 중 사망·이혼한 친족, 시(조)부모 혹은 결혼한 딸의 경우 해당 친족을 선택하신 후 등록제외로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친족정보 * 대상을 선택하면 친족정보 변경이 가능합니다. 추가하시려면 추가 버튼을 클릭하세요.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거주형태	직업	고지거부(기간)	등록대상	정보제외 부동산	실명인증
배우자	이여향	700101-2222223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로 15, 9동 909호 (도담동, 도행마을 9단지)	자가	회사원		☒	동의	동의 인증완료
부	홍공	500202-1333334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무삼지로, 602동 108호 (인후동1가, 무암6차아파트)	자가	무직		☒	동의	동의 인증완료
모	홍경	550303-6444445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무삼지로, 602동 108호 (인후동1가, 무암6차아파트)	자가	무직		☒	동의	동의 인증완료 (외국인)
장남	홍익	900505-155555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마상로, 401호 (주교동)	자가	회사원		☒	동의	동의 인증완료
장녀	홍주	920606-2666667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강원대학교길 (효자동, 강원대학교 기숙사A동)	기숙사	학생		☒	동의	동의 실명인증하기

※ 다음 사유에 해당하시면 해당란에 체크해 주세요.

• 직계존속(부모) 중 사망 등 등록제외 대상인 경우 해당란에 체크 ☐ 부 ☐ 모

• 배우자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다음 사항 중 하나를 체크 ☐ 미혼 ☐ 이혼 ☐ 사별

• 자녀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등록대상 자녀없음에 체크 ☐ 등록대상 자녀없음

※ 친족정보 신고내역 중 별도의 소명(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이혼, 사망 등) 필요시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파일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야 파일이 저장됩니다.**

파일첨부

이곳을 더블클릭 또는 파일을 드래그 하세요.

최대 10 개 용량 무제한 tif, jpg, jpeg, gif, png, bmp, pdf, zip, hwp, hwpk 파일만 가능 0 개, 0 byte 추가됨

파일추가 파일삭제

이전
저장
다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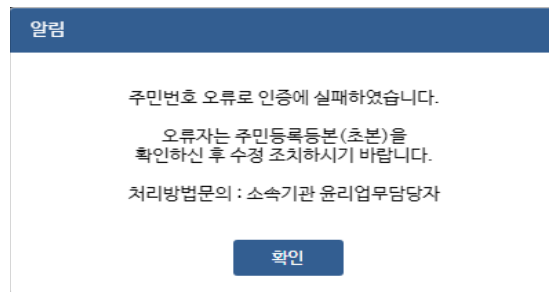
- 등록기준일('22.12.31.) 시점으로 이전과 변동사항이 있는 친족의 상세화면에서 주소, 직업, 등록상태(등록대상자, 고지거부자, 등록제외자), 변동사유 등을 수정

※ 기존에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친족의 등록상태는 이미 '고지거부자'로 체크되어 있으며, 신규로 고지거부 "허가" 받은 친족은 고지거부 심사완료 후 등록상태를 '고지거부자'로 선택

- ① 신규 친족이 있을 경우 **추가**, 기존 친족정보의 변동이 있을 경우 해당 친족을 선택하여 등록상태, 직업, 주소 등을 수정
- ②에서 아래 내용 확인 후 해당되는 내용에 체크하여 저장

- ☒ 직계존속(부모) 중 사망 등 등록제외 대상인 경우 {부/모} 란에 반드시 체크
- ☒ 배우자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미혼/이혼/사별} 란에 반드시 체크
- ☒ 자녀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등록대상 자녀 없음} 란에 반드시 체크

- ③ 실명인증이 완료된 경우 '인증완료'로 표시되며, 실명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친족이 있을 경우 **실명인증하기** 버튼 표시되어 클릭 시 아래 팝업 발생



※ 주민등록상 정확한 정보로 등록하여 동의서 제출이 완료된 대상자만 부동산 및 금융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미등록 친족 (상단 친족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정보제공 동의자 명단입니다.) 추가: 미등록 친족 추가, 제외: 정보제공동의 철회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금융동의(철회)서		부동산동의(철회)서		비고
			처리상태	제출일	처리상태	제출일	
장녀	장녀	200501-00000000	동의	2020-11-26	동의	2020-11-26	미등록 친족추가

- 미등록친족은 친족정보에 등록되지 않았으나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친족으로, **미등록친족추가** 클릭하여 친족에 추가

※ 등록대상 친족이 아닐 경우 제출된 정보제공동의서 철회 진행

- 사망, 혼인 등 변동 친족에 대한 참고자료가 있다면 첨부하여 등록
- 모든 작업완료 후 **다음** 버튼 클릭

등록된 친족정보 변경 시(고지거부, 등록제외 등)

친족정보수정

▶ 모든 정보는 "등록기준일인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친족이 시(조)부모인 경우, 등록제외자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정보

관계	부	성명	홍공	주민등록번호	500202-3333334
----	---	----	----	--------	----------------

추가정보

등록상태 (필수) ☒ 등록대상자 ☐ 고지거부자 ☐ 등록제외자(사망)

직업 (필수) 회사원

==자택주소선택==

자택주소 (필수) 도로명 55021 주소찾기 법정동주소 여부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무상지로 10 6 동 608 호 (인후동1가, 부영6차아파트)

거주형태 (필수) 자가

변동사유 (필수)

저장 변동취소 닫기

- 친족현황에서 변경할 친족의 주소를 클릭하여 친족정보 수정 처리
- 등록대상자 중 고지거부 허가받은 경우에는 '고지거부자'로, 사망, 혼인 등의 사유로 상태가 변경된 경우 '등록제외자'로 변경하고, '변동사유'에 사유와 발생일자를 입력
 - '21.9.30.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라 기존 시(조)부모를 등록한 경우 '등록제외' 처리 후 친(조)부모 등록

기본정보

관계	시부	성명	김시부	주민등록번호	380101-1000000
----	----	----	-----	--------	----------------

추가정보

등록상태 (필수) ☐ 등록대상자 ☐ 고지거부자 ☐ 등록제외자(사망, 위헌결정 적용)

※ 고지거부 허가받은 친족(고지거부 심사가 완료된 경우)을 고지거부자로 체크하지 않고 다음 진행할 경우 아래 알림창 나타남

알림

고지거부 허가자 (부 홍공, 모 홍경)가 있습니다.
고지거부자로 적용하고 진행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오

친족추가

친족정보추가

모든 정보는 등록기준일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정보

관계 (필수)	차녀		
성명 (필수)	홍차녀		
주민등록번호 (필수)	051010	-	4444445
	실명인증	인증성공	☐ 외국인 여부 ☐ 주민등록번호 미소유자

추가정보

등록구분 (필수)	☒ 등록대상자		
직업 (필수)	학생		
자택주소 (필수)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로 15 9동 909호 (도담동, 도렘마을9단지)		
	도로명	30098	주소찾기
	법정등록주소 여부 ☒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로 15	9	동 909
	호 (도담동, 도렘마을9단지)		
거주형태 (필수)	자가		
변동사유			

저장

닫기

- ①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실명인증** 클릭
- ② 실명인증이 완료된 경우 '인증성공'으로 표시되며, 추가정보 입력한 뒤 **저장** 클릭
 - ※ 개인정보보호 강화 조치에 따라 실명인증이 완료되지 않는 친족은 등록 불가
 - 주민등록상 정확한 정보로 등록해야 하며, 외국인 등록번호 소지자의 경우 실명인증 없이 친족 추가 가능
 - ※ 외국인등록번호 소유자인 경우
 - '☒ 외국인 여부'에 체크 후 외국인 등록번호 입력
 - ※ 주민등록번호 미소유자인 경우
 - '☒ 주민등록번호 미소유자'에 체크 후 생년월일만 입력

토지(소유권·지상권·전세권·분양권) 입력방법

● 재산신고, 토지(소유권·지상권·전세권) 형성과정 신고영상 작성방법

○ 모든 정보는 "등록기준일인 2022.12.31." 기준으로 입력 또는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정보제공 동의자)의 경우 부동산정보열람 버튼을 클릭하여 제공된 부동산 보유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공시지가일괄반영** 추가 삭제 미리보기 (단위: 천원)

③ **변동신고가 필요한 항목** 내, 해당 칸을 선택하여 변동신고 하십시오. **변동재산** ④

☐ 매도, 증여 등으로 인한 소유권(전세권, 분양권) 상실 ☐ 소재지 오기정정 ☐ 행정구역 변경

관계	부
권리자	부권
권리종류	소유권
소재지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개천리 1번지
지목	임야

면적변경 (필수)	출 면적	폐 면적 (필수)	증가 면적	감소 면적
	1,000 (㎡)	1,000 (㎡)	0 (㎡)	0 (㎡)

가액변경 (필수)	출 가액	폐 가액 (필수)	증가액	감소액
	24,200 (천원) [이전사액이십만 원]	24,200 (천원) [이전사액이십만 원]	0 (천원)	0 (천원)

공시가격조회를 클릭하여 조회하거나 인터넷망에서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공시가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②

표 실거래가격 (천원)

가액변동여부 (필수) ○예 ○아니오 ※ 면적의 변동없이 부동산의 공시가격등 평가액만이 변동된 경우에 "예"를 선택하십시오

⑤ **형성과정**

취득일자 (필수)	약 15년 전 ※ 매입일, 상속일, 증여일 등	(7 / 100)
취득경위 (필수)	조부에게 상속받음 ※ 목적, 방법(매입·상속·증여 등 여부), 상대방(매입·상속·증여의 상대방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	(9 / 300)
소득원 (필수)	상속받은 토지이기 때문에 소득원은 없음 ※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토지를 취득한 자금 출처	(21 / 300)
기타		

※ 그 밖에 형성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내용

변동사유 (필수)

※ 매도·매입·상속·증여·유증·수용·가액변동 등 권리증감 변동사유를 적으십시오.

파일첨부분

☐ 파일 이름 파일 크기

이곳을 더블클릭 또는 파일을 드래그 하세요.

최대 10 개 용량 무제한 tif, jpg, jpeg, gif, png, bmp, pdf, zip, hwp, hwpx 파일만 가능 0 개, 0 byte 추가됨

파일 추가 파일 삭제

저장 작성취소

● 토지 공시지가 일괄반영

- ① **공시지가일괄반영** 은 기존 신고 항목에 소유권, 사실상소유권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중 법정동 주소로 신고한 재산항목에 대해 일괄반영 가능
※ 본 기능은 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편의를 위한 선택사항으로 재산신고 내용은 반드시 확인하여 본인 책임하에 신고하여야 함
- 기존 신고금액보다 조회된 공시지가가 낮을 경우 변경되지 않으며, 변경되지 않은 경우 해당 재산항목 클릭하여 개별적으로 변경해야 함

- ② 가액이 일괄 반영되지 않은 경우 **공시가격조회**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클릭하여 개별 조회하여 변경 처리

- 소재지와 면적을 정확히 입력 후 **공시가격조회** 클릭하면 공시지가 조회 팝업이 나타남

공시지가 조회
✕

※ 해당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조회제공된 **2022년도 기준 가격** 입니다.

면적	500 (㎡)
개별공시지가(원/㎡)	14,200 (원)
가액 (원수)	7,100 (천원) (7,100,000 원)

☞ **확인** 을 클릭하시면 해당 가액이 신고서에 자동입력됩니다.

- 조회되는 개별공시지가 및 가액 확인 후 **확인** 버튼 클릭하여 입력
- 이전 재산신고 시 가액을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경우 현 신고기준일의 공시지가가 실거래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만 가액변경 처리(공시지가가 낮으면 종전가액 유지)
- 토지를 신규 취득한 경우 가액을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되, 상속·증여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공시지가로 신고
- 면적의 증감 없이 공시지가 등 평가액만 변동된 경우도 가액 증감분 신고
- 공동소유 토지의 전체면적 수정이 필요한 경우 기존 토지는 ☐ 매도, 증여 등으로 인한 소유권(전세권, 분양권) 상실 처리한 뒤 신규 추가하여 정확한 정보로 신고
- ③ 매도, 증여, 상속 등으로 소유권이 상실된 경우 ☐ 매도, 증여 등으로 인한 소유권(전세권, 분양권) 상실 에 체크한 뒤 “現 실거래가격”란에 매도한 금액 입력하여 저장
- ④ 토지 소재지가 오기된 경우 ☐ 소재지 오기정정 에 체크하여 소재지 변경 가능
※ 토지의 매도·매입인 경우는 소유권 상실, 추가 입력 등을 통하여 신고하여야 함
- ⑤ 공개자는 형성과정의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항목이 필수사항이며, 비공개자는 형성과정 항목이 선택사항임
※ 부동산 유관부서의 경우 공개 여부와 상관없이 부동산(토지, 건물) 형성과정 필수 기재
- ⑥ 항목별 특이사항이나 참고사항 있을 경우 첨부파일 등록
- 변동사항을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해 내용 저장

부동산(토지) 정보열람

☞ , 재산신고 , 토지(소유권·지상권·전세권) 형성과정 신고영상 작성방법

○ 모든 정보는 "등록기준일인 2022.12.31." 기준으로 입력 또는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정보제공 동의자) ① 부동산정보열람

부동산(토지) 정보내역

※ 소재지를 선택하면 해당 정보 추가화면으로 이동됩니다.
※ 토지정보는 국토교통부 "토지대장"과 대법원 "등기사항증명서" 자료를 활용하므로 등록기준일의 보유정보와 오차가 있을 수 있으나, 반드시 기준일자자의 보유정보를 직접 확인하신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출력 닫기

소유자성명	조회기준일	소재지	지목	면적(㎡)	공유자수	변동일자	정보제공처
홍공	2022-12-31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12-1번지 ②	임야	2,604.00	1	2005-01-21	국토교통부
홍공	2022-12-31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12번지 1호	임야	2,604.00	1	2005-01-21	대법원

신규재산

권리종류 (필수) 소유권
※ 타인에게 임대(전세)
※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지번 주소찾기

소재지 (필수)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일반 12 - 1 번지

※ 소재지 정보(지번)를 정확히 입력하셔야 공시가격이 자동계산 됩니다.

지목 (필수) 임야

전체면적 (필수) 2,604 (㎡)

취득형태 (필수) ○ 매입의 경우 ○ 상속 또는 증여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③

공유자 추가 공유자 삭제

권리자 (필수)	지분면적 (필수)	가액 (필수)	실거래가격(실매입액) (필수)
부-홍공	2,604 (㎡)	 (천원) 공시가격조회	 (천원)

※ 공시가격조회를 클릭하여 조회하거나 인터넷망에서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공시가격(기준시가)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① '부동산 정보제공'에 동의한 등록의무자는 부동산정보열람 을 클릭하여 부동산 소유 정보 확인 가능
※ 토지정보는 국토교통부의 토지대장 자료와 대법원의 등기 자료가 제공되므로 반드시 기준일자자의 보유정보를 직접 확인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확인 후 신고하여야 함
- 동일한 토지가 부동산정보열람에는 2건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도 실제 동일한 토지이므로 1건으로 등록
- ② 등록의무자 및 친족의 토지 보유내역을 보여주며, 신규로 추가할 경우 해당 소재지 주소를 클릭하여 기본정보가 표시되면 추가적인 정보 입력하여 저장
- ③ 취득형태에 따라 매입의 경우 실거래가격, 상속 등의 경우 공시지가 조회하여 입력
- ④ 공동소유 토지는 공유자 추가 클릭하여 소유 지분만큼의 면적·가액 입력

건물(소유권·전세(임차)권·분양권) 입력방법

※ 재산신고 · 건물(소유권 · 전세권 · 분양권) · 형성과정 신고영상 작성방법

○ 모든 정보는 "등록기준일인 2022.12.31." 기준으로 입력 또는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정보공개 동의자)의 경우 부동산정보열람 버튼을 클릭하여 제공된 부동산 보유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①는 변동신고가 필요한 항목입니다. 해당 내용을 선택하여 변동신고 하십시오. ②는 공시가격열람영상

변동대상

☐ 매도, 증여 등으로 인한 소유권(전세권, 분양권) 상실 ☐ 소재지 오기정정 ☐ 행정구역 변경 ※ 가격여나 면적 변동시에는 체크없이 변동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본인
권리자	홍길동
권리종류	소유권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58번지 두산위브아파트 101동 202호
종류 및 용도	아파트
건물면적변경 (필수)	前 건물면적 68 (㎡) 現 건물면적 (필수) 68 (㎡) 증가면적 0 (㎡) 감소면적 0 (㎡)
대지면적변경 (필수)	前 대지면적 0 (㎡) 現 대지면적 (필수) 0 (㎡) 증가면적 0 (㎡) 감소면적 0 (㎡)
가액변경 (필수) 7	前 가액 590,000 (천원) 現 가액 (필수) 590,000 (천원) 증가액 0 (천원) 감소액 0 (천원)

공시가격조회를 클릭하여 조회하거나 인터넷망에서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공시가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②

現 실거래가격 (천원)

가액변동여부 (필수) ☐ 예 ☐ 아니오 ※ 면적의 변동없이 부동산의 공시가격등 평가액만이 변동된 경우에도 "예"를 선택하십시오

5. 형성과정

취득일자 (필수) 2015년 8월 10일 취득
※ 매입일, 상속일, 증여일 등

취득경위 (필수) 실 거주를 목적으로 매입
※ 목적, 방법(매입 · 상속 · 증여 등 여부), 상대방(매입 · 상속 · 증여의 상대방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

소득원 (필수) 당시 일부 예금 및 증도금 대출
※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건물을 취득한 자금 출처

기타
※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변동사유 (필수)

※ 매도 · 매입 · 상속 · 증여 · 유증 · 수용 · 가액변동 등 권리증강 변동사유를 적으십시오.

파일첨부

☐ 파일 이름

이곳을 더블클릭 또는 파일을 드래그 하세요.

최대 10 개 올릴 수 있는 jpg, jpeg, gif, png, bmp, pdf, zip, hwp, hwpk 파일만 가능 0 개, 0 byte 추가됨

파일 추가

파일 삭제

작성 취소

- 건물 공시가격 일괄반영

- ① **공시가격일괄반영**은 기존 신고 항목에 소유권, 사실상소유권으로 등록되어 있는 아파트, 단독주택 중 법정동 주소로 신고한 재산항목에 대해 일괄반영 가능
 - ※ 본 기능은 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편의를 위한 선택사항으로 재산신고 내용은 반드시 확인하여 본인 책임하에 신고하여야 함 (아파트, 단독주택만 가능)
- 기존 신고금액보다 조회된 공시가격이 낮을 경우 변경되지 않으며, 변경되지 않은 경우 해당 재산항목 클릭하여 개별적으로 변경해야 함

- ② 가액이 일괄 반영되지 않은 경우 **공시가격조회**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클릭하여 개별 조회하여 변경 처리(**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는 인터넷망에서 사용가능)

- 소재지와 면적을 정확히 입력 후 **공시가격조회** 클릭하면 공시가격 조회 팝업이 나타남

공시가격 조회
✕

※ 해당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조회제공된 **2022년도 기준 가격** 입니다.

면적	68.48 (㎡)	조회 전체면적 (68.48㎡)
공동주택가격	983,000,000 (원)	
가액 (필수)	983,000 (천원)	(983,000,000 원)

가액 = (건물지분면적 / 건물전체면적) * 공동주택가격 **확인** **닫기**

☞ **확인** 을 클릭하시면 해당 가액이 신고서에 자동입력됩니다.

- 조회되는 공동주택가격 및 가액 확인 후 **확인** 버튼 클릭하여 입력
- 종전에 신고한 건물을 변동처리할 경우 해당 항목을 클릭하여 변동사항 입력
- 이전 재산신고 시 가액을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경우 현 신고기준일의 공시가격이 높아진 경우만 가액변경 처리(공시가격이 낮으면 종전가액 유지)
- 건물을 신규 취득한 경우 가액을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되, 상속 · 증여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공시가격으로 신고
- 면적의 증감 없이 공시가격 등 평가액만 변동된 경우도 가액 증감분 신고
- 공동소유 건물의 전체면적 수정이 필요한 경우 기존 건물은 ☐ **매도, 증여 등으로 인한 소유권(전세권, 분양권) 상실** 처리한 뒤 신규 추가하여 정확한 정보로 신고
-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경우 건물항목에 토지와 건물을 같이 신고하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분리하여 신고(아파트는 전용면적만 기재)
- ③ 매도, 증여, 상속 등으로 소유권이 상실된 경우 ☐ **매도, 증여 등으로 인한 소유권(전세권,분양권) 상실** 에 체크한 뒤 “現 실거래가격”란에 매도한 금액 입력
- ④ 건물 소재지가 오기된 경우 ☐ **소재지 오기정정** 에 체크하여 소재지 변경 가능
 ※ 건물의 매도·매입인 경우는 소유권 상실, 추가 입력 등을 통하여 신고하여야 함
- ⑤ 공개자는 형성과정의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항목이 필수사항이며, 비공개자는 형성과정 항목이 선택사항임
 ※ 부동산 유관부서의 경우 공개 여부와 상관없이 부동산(토지, 건물) 형성과정 필수 기재
- 변동사항을 입력한 후 **저장** 을 클릭해 내용 저장

부동산(건물) 정보열람

☞ 재산신고, 건물(소유권·전세권·분양권) 항성과정 신고명상 작성방법

○ 모든 정보는 "등록기준일인 2022.12.31." 기준으로 입력 또는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정보제공 동의자)의 경우 **부동산정보열람** 부동산(건물) 정보내역

① 는 변동신고가 필요한 항목이니, 해당 건물 선택하여 변동신고

※ **소재지를 선택하면 해당 정보 추가화면으로 이동됩니다.**
 ※ 건물정보는 "지방세 과세자료(매년 6.1)"를 활용하므로 등록기준일 보유정보와 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반드시 기준일자 보유정보를 직접 확인하신 후 신고바랍니다.

출력 닫기

소유자성명	조회기준일	소재지 ②	면적 (㎡)	지분비율	취득일자	용도	정보제공처
출감동	2022-12-3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626번지 개나리아파트 1동 101호	61.90		2007-07-19	아파트	행정안전부
출감동	2022-12-3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626번지 개나리아파트 1동 101호	61.90		2007-07-19	아파트	대법원

신규재산

권리종류 (필수) 소유권

※ 타인에게 임대(전·월세)
 ※ 콘도미니엄은 부동산

소재지 (필수) 주소찾기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일반 626 - 번지

개나리아파트 1 동 101 호

※ 소재지 정보 (지번)을 정확히 입력하셔야 공시가격이 자동계산 됩니다.

종류 및 용도 (필수) 아파트

건물면적 (필수) 전체면적: 61.90 (㎡)

대지면적 전체면적: (㎡) ③

취득형태 (필수) ☐ 매매의 경우 ☐ 상속 또는 증여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④ 공유자 추가 공유자 삭제

권리자 (필수)	건물지분면적 (필수)	대지면적 (필수)	가액 (필수)	실거래가격(실매입액) (필수)
본인·종감동 본인-종감동	61.90 (㎡)	 (㎡)	 (천원) 공시가격조회	0 (천원)

※ 공시가격조회를 클릭하여 조회하거나 인터넷망에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공시가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조회가 안되는 경우는 해당지역 시·군·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의 경우 매입가나 사실상 거래가액을 기재)

- ① '부동산 정보제공'에 동의한 등록의무자는 **부동산정보열람**을 클릭하여 부동산 소유 정보 확인 가능
 ※ 건물정보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과세자료(6.1.기준)와 대법원의 등기 자료가 제공되므로 반드시 기준일자 보유정보를 직접 확인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확인 후 신고하여야 함
 - 동일한 건물이 부동산정보열람에는 2건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도 실제 동일한 건물이므로 1건으로 등록
- ② 등록의무자 및 친족의 건물 보유내역을 보여주며, 신규로 추가할 경우 해당 소재지 주소를 클릭하여 기본정보가 표시되면 추가적인 정보 입력하여 저장
- ③ 취득형태에 따라 매매의 경우 실거래가격, 상속 등의 경우 공시가격 조회하여 입력
- ④ 공동소유 건물은 **공유자 추가** 클릭하여 소유 지분만큼의 면적·가액 입력

공동소유인 부동산(토지, 건물)의 전체면적 수정방법

● 재산신고 · 건물(소유권 · 전세권 · 분양권) 항상과정 신고영상 작성방법

○ 모든 정보는 "등록기준일인 2022.12.31." 기준으로 입력 또는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정보제공 동의자)의 경우 | 부동산정보영입 버튼을 클릭하여 제공된 부동산 보유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는 변동신고가 필요한 항목이니, 해당 건을 선택하여 변동신고 하십시오. 공시가격일괄반영 **추가** 삭제 미리보기 (단위: 천원)

변동재산 ② ☒ 매도, 증여 등으로 인한 소유권(전세권,분양권) 상실 ☐ 소재지 오기정정 ☐ 행정구역 변경 ※ 가액이나 면적 변동시에는 체크없이 변동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본인			
권리자	홍길동			
권리종류	소유권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도당동 855번지 도행마을9단지 9동 909호			
종류 및 용도	아파트			
건물전체면적	68.48 (㎡) ☒ 공유자분 여부 ①			
건물면적변경	前 건물면적 34.24 (㎡)	現 본인지분 0 (㎡)	증가 본인지분 0 (㎡)	감소 본인지분 34.24 (㎡)
대지면적변경	前 대지면적 0 (㎡)	現 대지면적 0 (㎡)	증가면적 0 (㎡)	감소면적 0 (㎡)
가액변경	前 가액 280,000 (천원)	現 가액 0 (천원)	증가액 0 (천원)	감소액 280,000 (천원) [이력물원인] 등
現 실거래가격 (필수) ③	(천원) ※ 소유(전세)권 상실(매도 등)로 실거래가격이 있는 경우 부동산 매매 계약서 등을 참고하여 반드시 실거래가격(매도가격 등)을 신고하되, 상속이나 증여 등 실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실거래가격을 '0'으로 입력하고 변경사유란에 '상속' 또는 '증여' 등 상세내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실거래가격은 현 시세가 아닌 실제 거래 금액임			
가액변동여부 (필수)	☐ 예 ☒ 아니오 ※ 면적의 변동없이 부동산의 공시가격등 평가가액만이 변동된 경우에 "예"를 선택하십시오			

- 이전 신고 시 공동명의의 부동산(토지, 건물)을 신고한 경우 ① 전체면적은 바로 수정이 불가하므로 아래 절차에 따라 수정 필요
- ② ☐ 매도, 증여 등으로 인한 소유권(전세권,분양권) 상실 체크 후 ③ '現 실거래가격'란에 '0'을 기재하여 저장
 - 실제로 매도를 한 것이 아니더라도 기존에 오기 입력한 내용(면적 등)을 정정하기 위한 방법이므로 변동사유에 해당 내용을 자세히 기재
- ④ **추가** 클릭하여 정확한 면적 및 정보 기재 후 저장
 - ☞ 공동소유가 아닌 단독소유 부동산의 면적 수정은 위 절차 없이 기존 신고 상세화면에서 바로 수정 가능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입력방법

☞ 재산신고,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작성방법

○ 모든 정보는 "등록기준일인 2022.12.31." 기준으로 입력 또는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계속 보유하는 경우(상속·증여 포함) 보험기준 가액, 시가표준액 순으로 신고하고, 할부로 구입한 경우 자동차 가액 신고 후 할부 잔액은 채무 란에 신고하십시오.
○ 신규 추가 시 권리종류, 제작연도, 배기량, 등록번호 등 권리명세를 신고하고, 가액은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십시오.

① 는 변동신고가 필요한 항목이니, 해당 건을 선택하여 변동신고 하십시오. [추가] [삭제] [미리보기] (단위: 천원)

변동재산

☐ 권리명세변경(차량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만 체크를 하십시오.)

관계	본인
권리자	홍길동
권리종류	자동차
권리명세	2010년식 그랜저 배기량(2,359cc), 11가1234
소유여부	☐ 공동지분 ☒ 대표소유자 ☐ 공동소유자 공동소유자 수: 1 소유자 지분율: 100 (%)

☐ 매도, 증여, 폐차 등으로 인한 소유권(지당권) 상실

	前 가액	後 가액 (필수)	증가액	감소액
가액변경 (필수)	20,000 (천원) [이전만] 원	20,000 (천원) [이전만] 원	0 (천원)	0 (천원)
제 실거래가격	(천원) ※ 소유권 상실 등으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실거래가격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가액변동여부 (필수)	☐ 예 ☒ 아니오			

① 자동차보험의 차량기준가액
② 「지방세법」 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③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평가액

형성과정

취득일자 (선택)	 ※ 매입일, 상속일, 증여일 등
취득경위 (선택)	 ※ 목적, 방법(매입·상속·증여 등 여부), 상대방(매입·상속·증여의 상대방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
소득권 (선택)	 ※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재산을 취득한 자금 출처
기타 (선택)	 ※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변동사유 (필수) 변동없음
※ 매도·매입·상속·증여·유증·존속기간 만료·가액변동 등 권리증감 변동사유를 적으십시오.

파일첨부

☐ 파일 이름 파일 크기

이곳을 더블클릭 또는 파일을 드래그 하세요.

최대 10 개 용량 무제한 tif, jpg, jpeg, gif, png, bmp, pdf, zip, hwp, hwpx 파일만 가능 0 개, 0 byte 추가됨

[파일 추가] [파일 삭제]

[저장] [작성취소]

- 종전 신고 건을 변동처리할 경우 해당 항목을 클릭하여 변동사항 입력
- 자동차의 경우 매매 시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며 보유 시 자동차보험의 차량 기준가액, 시가표준액 등의 순으로 가액을 변동 신고

- 순수하게 평가가 액만 변동된 경우에도 가액 증감분 신고(자동차보험의 차량 기준가액 등 확인)
 - 신규재산을 등록하는 경우 우측 상단의 **추가** 버튼 클릭
 - 권리자, 권리종류, 제작연도(년식), 차명(자동차명), 배기량(CC), 차량번호, 평가가액, 변동사유를 입력
 - 공동소유일 경우 **+ 소유자추가** 클릭하여 공동소유자 수와 지분율(소수점 이하 절사), 가액입력
- ※ 등록대상 친족의 공동소유 재산일 경우 소유자별 해당 지분에 대해 각각 신고
- 매도·증여 등으로 소유권이 상실된 경우 ☐ 매도, 증여, 폐차 등으로 인한 소유권(저당권) 상실 에 체크
 - 리스자동차는 소유권으로 신고하지 않으며, 리스 종류에 따라 신고기준 참고하여 신고
 - 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는 평가액(지방세 시가표준액, 전문가 평가액 등)으로 신고하되, 평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실거래가격으로 신고
 - 광업권, 어업권은 시가표준액 또는 전문가 평가액을 신고
 - 변동사항을 입력한 후 **저장** 을 클릭해 내용 저장

현금(수표 포함) 입력방법

🏠 , 재산신고 , 현금(수표) 작성방법

○ 모든 정보는 "등록기준일인 2022.12.31." 기준으로 입력 또는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① 는 변동신고가 필요한 항목이나, 해당 건을 선택하여 변동신고 하십시오. 추가 삭제 미리보기 (단위: 천원)

변동재산

관계	모
소유자	홍경

☐ 소비(※ 보유 현금을 전액 소비하였을 경우에만 체크 하십시오.)

보유액 (원수)	前 보유액	現 보유액(원수)	증가액	감소액
	15,000 (천원) [입천오백만] 원	15,000 (천원) [입천오백만] 원	0 (천원)	0 (천원)

형성과정

취득일자 (선택)		※ 매입일, 상속일, 증여일 등
취득경위 (선택)		※ 목적, 방법 (매입·상속·증여 등 여부), 상대방 (매입·상속·증여의 상대방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
소멸원 (선택)		※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재산을 취득한 자금 출처
기타 (선택)		※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변동사유 (원수)

※ '변동사유'란에는 증감변동사유를 적고, 증감 원인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으십시오.

파일첨부

☐ 파일 이름	파일 크기
이곳을 더블클릭 또는 파일을 드래그 하세요.	
	
최대 10 개 용량 무제한 tif, jpg, jpeg, gif, png, bmp, pdf, zip, hwp, hwpX 파일만 가능	
0 개, 0 byte 추가됨	
파일 추가	파일 삭제

-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모두 신고
- 신규재산을 등록하는 경우 총괄표 현금항목 오른쪽의 **추가** 버튼 클릭
 - 소유자, 보유액, 변동사유 입력
- 종전에 신고한 현금을 변동처리할 경우 해당 항목을 클릭하여 변동사항 입력
 - 등록기준일 보유액을 “現 보유액”란에 입력
- 보유액을 모두 소비했을 경우 ☐ 소비 에 체크 후 변동사유 입력
- 변동사항을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해 내용 저장

금융정보 일괄반영

금융정보(예금, 상장주식, 금융채무) 일괄반영

※ 본 기능은 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편의를 위한 선택사항으로 재산신고 내용은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금융정보(예금, 상장주식, 금융채무) 일괄반영

아래 대상자에 대한 금융정보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제공된 금융자료(예금, 상장주식, 금융채무)를 신고서에
일괄반영하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일괄반영 동의 ☐ 미동의 ☒ ①

※ 미동의 할 경우 항목별 '금융정보활용입력' 가능

관계	성명	금융	비고
본인	홍길동	동의	
배우자	이여왕	동의	
부	홍길동	동의	
모	홍길동	동의	
장남	홍길동	동의	
장녀	홍길동	동의	

※ 동의자 재산 중 종전 신고자료가 중복된 자료이거나 회신되지 않은 자료인 경우에는 현재 가액이 0으로 변동 처리되나 꼭 확인하시어 필요시 재입력 바랍니다.

확인

- ① 금융정보제공 동의자에 대해 회신 받은 금융자료를 일괄반영 하는 기능

※ 최초 1회만 발생하는 팝업으로 '동의' 시 예금·보험, 증권(상장주식), 금융채무가 회신 받은 자료로 반영, 미동의 시 재산 항목별로 '금융정보활용입력' 으로 반영 가능

(본 기능은 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편의를 위한 선택사항으로 재산신고 내용은 반드시 확인하여 본인 책임하에 신고하여야 함)

- 일괄반영 후 변동처리 되지 않고 가 남아있는 항목은 아래 사항에 해당하므로 개별 확인하여 신고 필요

㉠ 본인이 이전에 신고하였으나 이번 신고 시 해약 등으로 금융기관에서 회신하지 않은 계좌
→ 현재가액이 '0'원으로 표시되므로 소유 여부 확인하여 직접 수정 필요

㉡ 금융정보제공 미동의자 및 회신하지 않는 기관의 이전 신고 계좌(해외금융기관, 상호회 등)
→ 회신 받은 정보가 없으므로 소유 여부 확인하여 직접 가액 수정 필요

㉢ 증권 항목의 비상장주식, 국·공채 등, 채무 항목의 금융 외 채무
→ 금융정보 일괄반영이 불가하므로 소유 여부 확인하여 직접 가액 수정 필요

예금 · 보험 입력방법

※ 재산신고, 예금/보험

○ 모든 정보는 "등록기준일인 2022.12.31." 기준으로 입력 또는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소유자별로 예금의 합계액(정치자금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계좌와 예금 포함)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등록 대상자의 모든 계좌를 등록하되, 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과 관련한 예금계좌의 예금은 별도의 항목에 등록하십시오. (계좌별 1천만원 이상이 아닙니다.)

○ 금융정보활용입력 시 성명, 주민번호, 금융기관 등록정보와 다른 경우 반드시 확인 후 수정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정보제공 동의자)의 경우 **금융정보발행권**을 클릭하여 내용 확인 후 **금융정보활용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예금/보험 일괄신고가 가능합니다.

1 는 변동신고가 필요한 항목이나, 해당 칸을 선택하여 변동신고 하십시오.

추가 삭제 미리보기 (단위: 천원)

변동재산

관계	본인
소유자	윤길동
매탁기관	우리은행(국내)
예금종류	보통예금
계좌번호	1002-123-456789

☐ **해 약(※ 선택된 예금(보험)계좌를 해약한 경우 체크하십시오.)**

	前 보유액	現 보유액(원수)	증가액	감소액
보유액변경 (원수)	12,003(천원) [일천이백만삼천 원]	12,003(천원) [일천이백만삼천 원]	0(천원)	0(천원)
	*적립된 금액 또는 평가금액을 기재하십시오 *보유액이 마이너스인 예금은 채무항목에 신고하십시오 *외화예금은 신고기준일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하여 신고하십시오			
개설일자	2013-05-29			
만기일자				

형성과정

취득일자 (선택)	
	※ 매입일, 상속일, 증여일 등
취득경위 (선택)	
	※ 목적, 방법(매입·상속·증여 등 여부), 상대방(매입·상속·증여의 상대방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
소득원 (선택)	
	※ 예금, 부동산 임대료, 금융채무, 시간 간 채무 등 해당 예금을 취득한 자금 출처
기타 (선택)	
	※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특기사항

파일첨부

☐ 파일 이름

이곳을 더블클릭 또는 파일을 드래그 하세요.

최대 10 개 용량 무제한 tif,jpg,jpeg,gif,png,bmp,pdf,zip,hwp,hwp,x 파일만 가능 0 개, 0 byte 추가됨

- 소자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모두 신고
- 금융정보제공 미동의자의 경우 종전 신고한 예금(보험)항목을 클릭하여 증감 및 변동사항을 입력하고 신규 예금(보험)의 경우 **추가** 버튼 클릭하여 등록
 - 보험의 경우 등록기준일('22.12.31.)까지 불입한 금액으로 변동하여 신고
 - 보유액만 변경된 경우 "現보유액"에 기재(증가/감소액은 자동입력됨)
- 보유예금을 해약했을 경우 ☐ **해약** 에 체크 후 특기사항 입력
- 계좌별 증감액에 대한 변동사유는 기재하지 아니하고 총괄표의 예금항목 **변동사유기재** 버튼을 클릭하여 예금항목의 전체적인 증감액에 대한 변동사유를 기재
- 변동사항을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해 내용 저장

- 금융정보제공 동의자의 경우 ① **금융정보열람** 을 클릭하여 아래 화면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확인

금융 정보내역

금융 보유정보에 대한 조회결과

금융기관연락처(엑셀)

금융기관연락처(PDF)

출력

닫기

(※ 금융기관 연락처는 매년 정기변동 시점인 12.31.기준으로 현행화 됩니다)

1.예금보유정보

2.증권보유정보

3.채무보유정보

※ 채권은 증권 항목에서 [열람] 자료를 활용하여 직접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1.예금보유정보(예금, 보험, 예수금, 펀드) 등

소유자성명	조회기준일	금융기관명(계좌번호)	예금(상품)종류	예금잔액(천원)	계좌개설일	비고
계				63,580	-	-
홍길동	2022-12-31	국민은행(457615-01-333333)	연금보험	5,000	2009-02-18	
홍길동	2022-12-31	신한은행(110-345-1661313)	출거비암치료	6,480	2009-05-01	
홍길동	2022-12-31	우리은행(국내)(1002-135-111111)	우리스마트적금	22,100	2010-05-03	
이여왕	2022-12-31	국민은행(412345-01-4444444)	자유적금	2,500	2009-02-18	
이여왕	2022-12-31	국민은행(431564-02-6134812)	청약저축	3,500	2009-02-18	
이여왕	2022-12-31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13-4943512)	암플러스종신보험	24,000	2007-10-03	

※ 정기변동신고서 작성 시 1.16.~1.20.까지 사전 검증 기간으로, 의무자는 제공받은 금융정보를 열람하여 자료의 누락, 오해 등 수정이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연락처(엑셀)** **금융기관연락처(PDF)** 를 통해 회신기관에 직접 오류사항 수정 요청하여야 함

- 1.25. 09:00부터 ② **금융정보활용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일괄 변경 및 신규 추가

※ 본 기능은 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편의를 위한 선택사항으로 재산신고 내용은 반드시 확인하여 본인 책임하에 신고하여야 함

※ **금융정보활용입력은 예금·보험, 증권, 채무항목에서 각각 진행해야 함**

☞ 특히, 채권(국채·지방채·특수채·금융채·회사채 등)은 금융정보활용입력이 되지 않으니, 증권 항목에서 직접 등록하여야 함

금융정보 활용입력 방법

☞ 재산신고 · 예금/보험 · 금융정보활용입력

금융정보활용입력(예금/보험 등)

- 금융기관에서 제공한 정보를 활용하여 신고하는 화면입니다.
- 최종적으로 화상정보와 신고내용을 비교 확인하고 **일괄저장** 버튼 클릭하여 신고를 완료합니다.
- **붉은색**으로 표시된 자료는 금융기관에서 회신되지 않은 계좌로
 - ① 이미 신고 되어 있거나 해약된 계좌는 현재가액을 '0'인 상태로 유지하고, ② 수정이 필요한 경우 직접 입력 후 저장합니다.
- 중복 신고계좌는 이전 신고 시 여러 건으로 나뉘어 등록되었던 동일계좌를 한 계좌로 통합 신고하기 위해 0원 처리됩니다.
- **계권(국채·지방채·특수채·금융채·회사채 등)**은 증권 항목에서 [열람] 자료를 활용하여 직접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기관에서 회신받은 자료를 이전에 신고한 자료와 비교한 결과 (13건)

관계	소유자	예탁기관(계좌번호)	예탁종류	종전가액 (천원)	현재가액 (천원)	증가액 (천원)	감소액 (천원)	비고
본인	김공직	국민은행 (457615-01-333333)	연금보험	① 0	5,000	5,000	0	
본인	김공직	국민은행 (457615-01-333333-2)	연금보험	5,500	0	0	5,500	③
본인	김공직	신한은행 (110-345-1661313)	올커버임치로	8,000	6,480	0	1,520	
본인	김공직	우리은행(국내) (1002-135-111111)	정기예탁금	4,000	4,000	0	0	④
본인	김공직	우리은행(국내) (1002-135-111111)	정기예탁금	20,454	0	0	20,454	중복 신고계좌
본인	김공직	우리은행(국내) (1002-135-111111)	출자금	20	0	0	20	중복 신고계좌
배우자	이여왕	국민은행 (412345-01-4444444)	자유적금	0	2,500	2,500	0	
배우자	이여왕	국민은행 (412345-01-4444444-1)	자유적금	2,800	0	0	2,800	
배우자	이여왕	국민은행 (431564-02-6134812)	청약저축	2,600	3,500	② 900	0	
배우자	이여왕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13-4943512)	암플러스종신보험	26,000	24,000	0	2,000	

⑤ **일괄저장** **변동취소**

- ① '종전가액'란이 '0' 원인 계좌는 금융기관에서 신규로 회신된 계좌
- ② '현재가액'란은 금융기관에서 제공한 금액이 표시
 - 등록기준일자 '현재가액'란에 표시된 금액이 실제 보유금액과 다를 경우 '일괄저장' 이후 목록에서 해당항목을 직접 클릭하여 '현재가액'(증권은 수량, 현재가액)을 수정
- ③ 붉은색으로 표시된 계좌는 종전에 신고하였으나, 금융기관에서 회신되지 않은 계좌임 (해약, 기존신고계좌와 불일치, 금융기관 회신오류 등)
 - 일괄변동 처리를 위해 시스템에서 '현재가액'란이 '0'으로 표시되어 나타나므로 목록을 확인한 후, 현재 보유중이지만 회신 받지 못한 계좌라면 '현재가액' 직접 입력
- ④ 예탁종류는 다르지만 계좌가 동일한 경우 대표계좌로 합산된 금액이 신고 되며, 중복된 계좌는 일괄변동 처리를 위해 시스템에서 '현재가액'을 '0'처리 하므로 일괄저장 이후 목록에서 최종 검토 필요
- ⑤ **변동취소** 클릭 시 자료가 초기화(금융정보 활용입력을 통한 신고 이전)되므로 주의해야 하며, 제공받은 자료로 반영하기 위해 **일괄저장** 클릭하여 신고 진행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채산신고,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 모든 정보는 “등록기준일인 2022.12.31.” 기준으로 입력 또는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정치자금법에 따른 예금 계좌로 신고할 경우, 예금에 신고된 계좌는 삭제해야 중복 신고되지 않으므로 예금에 동일한 계좌가 존재하는지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예금의 종류’란에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저축예금 및 양도성예금증서(CD), 자축성이 가미된 보통(100% 보장성보험만 제외) · 수익증권(펀드 등) · 금융투자기관에 예약한 투자자예탁금(파생상품위탁증거금 포함) 등 그 명칭을 붙문하고 모두 등록하십시오.

! 는 변동신고가 필요한 항목이니, 해당 건을 선택하여 변동신고 하십시오.

관계	배우자
소유자	이여왕
예약기관	(주)KEB하나은행
예금종류	정기예금
계좌번호	123-12345-12

☐ 해 약(※ 선택된 예금(보험)계좌를 해약한 경우 체크하십시오.)

	前 보유액	現 보유액(월수)	증가액	감소액
보유액변경 (월수)	10,000 (천원) [일천만원] 원	10,000 (천원) [일천만원] 원	0 (천원)	0 (천원)
※ 적립된 금액 또는 평가금액을 적으십시오. ※ 보유액이 마이너스인 예금은 채무항목에 신고하십시오.				
개설일자	2021-06-01			
만기일자				

형성과정

취득일자 (선택)	
※ 매입일, 상속일, 증여일 등	
취득경위 (선택)	
※ 목적, 방법(매입·상속·증여 등 여부), 상대방(매입·상속·증여의 상대방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	
소속원 (선택)	
※ 예금, 부등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건물을 취득한 자금 출처	
기타 (선택)	

특기사항

파일첨부

☐ 파일 이름

파일을 더블클릭 또는 파일을 드래그 하세요.

최대 10 개 용량 무제한 tif,jpg,png,gif,bmp,pdf,zip,hwp,hwpk 파일만 가능

파일 추가 | 파일삭제

0 개, 0 byte 추가됨

- 종전 신고한 재산항목을 변동처리할 경우 해당 항목을 클릭하여 변동사항 입력
- 보유액만 변경된 경우 “**현보유액**”에 기재(증가/감소액은 자동입력됨)
- 신규재산을 등록할 경우 목록의 우측 상단에 **추가** 버튼 클릭
 - 소유자, 예탁기관, 예금종류, 계좌번호, 개설일자, 만기일자, 보유액, 특기사항을 입력
- 계좌번호가 없는 경우 “관리번호-일련번호”형태로 입력
- “**변동사유**”란에 해당계좌의 용도기재(수입용 또는 지출용)

※ 예금 항목에 동일한 계좌가 있을 경우 중복 신고 되지 않기 때문에 확인 후 예금항목에 신고된
계좌는 삭제 및 해약 처리해야 함

증권 (상장주식) 입력방법

● , 재산신고 , 증권(주식·국채·공채·회사채·백지신탁·주식매수선택권 등) 형성과정 신고영상 작성방법

○ 모든 정보는 "등록기준일인 2022.12.31." 기준으로 입력 또는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정보활용입력 시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국유기관 등록정보와 다른 경우 자료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정보제공 동의자)의 경우 **금융정보열람** 을 클릭하여 내용 확인 후 **금융정보활용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증권 중 상장주식에 대한** 일괄반영이 가능합니다.

○ 기타 비상장주식(K-OTC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상장주식)을 등록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는 **기타 비상장주식 등록/변경**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는 변동신고가 필요한 항목이나, 해당 칸을 선택하여 변동신고 하십시오. 주식거래내역신고 기타 비상장주식 등록/변경 추가 삭제 미리보기 (단위: 천원)

변동재산

관계	본인
소유자	홍길동
권리종류	상장주식
매각기관	신한금융투자(주)
계좌번호	123-111-1012
발행인	공저물산
종목코드	030201

☐ 전담매도(※ 선택된 주식 또는 채권 전담 매도한 경우 체크 하십시오.) ☐ 주식매지선택여부

보유량 변경	前 보유량	現 보유량	증가량	감소량
	500 (주)	500 (주)	0 (주)	0 (주)
보유액 변경	前 보유액	現 보유액	증가액	감소액
	13,350 (천원) [일전상배상심오민] 원	13,350 (천원) [일전상배상심오민] 원	0 (천원)	0 (천원)

※ 필요시 증권거래소사세 조회 를 클릭하여 주식사세 조회 가능하며 계산하기 를 클릭하여 가액 산정 가능

가액변동여부 (필수) ☐ 예 ☒ 아니요

형성과정

취득일자 (선택)
※ 거래계약일, 주주명부 등재일,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 등

취득경위 (선택)
※ 목적, 방법(매입·상속·증여 등 여부), 상대방(매입·상속·증여의 상대방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

소득원 (선택)
※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증권을 취득한 자금 출처

기타 (선택)
※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특기사항
※ 백지신탁의 경우 신탁일자, 신탁회사 등을 기재하십시오

파일첨부

☐ 파일 이름 파일 크기

이곳을 더블클릭 또는 파일을 드래그 하세요.

최대 10 개 용량 무제한 gif, jpeg, png, bmp, pdf, zip, hwp, hwpk 파일만 가능 0 개, 0 byte 추가됨

-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모두 신고
- 정보제공동의자는 **금융정보열람** 을 통해 제공받은 정보 확인이 가능하며, **상장주식**의 경우 **금융정보활용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제공받은 회신자료로 일괄반영 가능
- ※ 본 기능은 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편의를 위한 선택사항으로 재산신고 내용은 반드시 확인하여 본인 책임하에 신고하여야 함
- ※ 금융정보활용입력은 예금·보험, 증권, 채무항목에서 각각 진행해야 함
- ☞ 특히, 채권(국채·지방채·특수채·금융채·회사채 등)은 금융정보 활용입력이 되지 않으니, 증권 항목에서 직접 등록하여야 함

- 금융정보제공 미동의자의 경우 종전 신고한 증권 항목을 클릭하여 변동사항을 입력하고 신규 증권의 경우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
 - 상장주식의 경우 등록기준일('22.12.31.)의 최종거래가격(등록기준일 전에 거래가 마감된 경우에는 마감일의 최종거래가격)으로 변동신고
 - 증권 매수를 위한 예탁금, MMF, 수익증권, 뮤추얼 펀드, 주가연계증권인 ELS, CMA, MMDA등 간접금융상품은 예금항목으로 신고
 - 종전 신고한 증권의 보유수량 및 가액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된 수량 및 “現보유액”을 입력(증가/감소량은 자동입력 됨)
- ※ “現 보유액”란 하단의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주식시세 계산”창이 나타나고, 주당 주식시세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계산 됨

주식시세 계산
✕

수량	350 (주)
주식시세(원/주)	68,500 (원)
가액	23,975 (천원)

확인
취소

- 종전 신고한 증권의 보유수량 및 가액변동이 없는 경우 “가액변동여부”를 “아니오”로 체크하여 신고
- 보유주식을 모두 매도했을 경우 ☐ **전량매도**에 체크 후 특기사항 입력
- 건별 증감액에 대한 변동사유는 기재하지 아니하고 총괄표의 증권항목 **변동사유기재** 버튼을 클릭하여 증권항목의 전체적인 증감액에 대한 변동사유를 기재

증권(국채·공채·회사채·백지신탁·주식매수선택권 등) 입력방법

☞ , 재산신고 , 증권(주식·국채·공채·회사채·백지신탁·주식매수선택권 등) 형성과정 신고영상 작성방법

○ 모든 정보는 "등록기준일인 2022.12.31." 기준으로 입력 또는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정보활용입력 시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금융기관 등록정보와 다른 경우 자료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정보제공 동의자)의 경우 [금융정보열람](#) 을 클릭하여 내용 확인 후 [금융정보활용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증권 중 상장주식에 대한 일괄신고가 가능합니다.

○ 기타 비상장주식(K-OTC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상장주식)을 등록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는 [기타 비상장주식 등록/변경](#)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는 변동신고가 필요한 항목이니, 해당 건을 선택하여 변동신고 하십시오. 주식거래내역신고 기타 비상장주식 등록/변경 [추가](#) [삭제](#) [미리보기](#) (단위: 천원)

신규재산

소유자 (필수)	배우자-이여왕 ※ 소유자별 증권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등록대상자의 모든 계좌의 증권을 등록하십시오. (주식매수선택권은 합계액에 관계없이 기재하십시오.)	
권리종류 (필수)	국채	선택하기
예탁기관 (필수)	--선택-- 상장주식	
계좌번호 (필수)	국채 공채 금융채 회사채 지방채	계산하기
발행인(종목명) (필수)	주식백지신탁 주식매수선택권 제3시장주식(K-OTC) 기타	
수량	(주)	
가액 (필수)	(천원)	

※ 가액은 수량을 입력하시고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에 주식시세를 입력하면 자동계산 됩니다.
※ 등록기준일의 종가 기준으로 입력하십시오.

취득일자 (선택)
※ 거래계약일, 주주명부 등재일,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 등

- 국채·공채·회사채 등은 [금융정보열람](#) 을 통해 확인이 되더라도 [금융정보활용입력](#) 기능을 통해 일괄 신고할 수 없기 때문에 [증권] 항목에서 개별 확인하여 신고
 - 계좌번호와 상품(종목)명이 동일한 경우 합산하여 1건으로 신고하되, 상품(종목)명이 다른 경우 각각 신고
- K-OTC시장의 비상장주식은 [기타 비상장주식 등록/변경](#) 에서 등록하지 않으며, [증권]에서 추가하여 권리종류를 '제3시장주식(K-OTC)'로 선택 후 "거래량가중평균가"를 신고
- 보유하고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도 신고대상임
- 필수사항을 모두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해 내용 저장

증권 (기타비상장주식) 입력방법

[기타비상장주식 변동신고]

증권, 재산신고, 증권, 기타 비상장주식

기업정보확인서 신고영상 구비서류 작성방법

○ 모든 정보는 등록기준일인 "2022.12.31" 기준으로 입력 또는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별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법인의 주식을 여러명의 친족이 소유한 경우 [소유자 추가] 및 [진단하기]를 통해 신고하십시오.
○ K-OTC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거래량 가중평균가'를 확인하여 '증권' 항목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는 변동신고가 필요한 항목이니, 해당 건을 선택하여 변동신고 하십시오.

선택	상태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최종가액유형	최종가액 (1주당/원)	증정가액 (천원)	변동액(천원) 증가액 감소액	현재가액 (천원)
		계				7,120	0 0	7,120
☒	1	○○전자	1201110799950	① -	-	7,120	- -	7,120

- ① 법개정에 따라 신고한 기타비상장주식 변동처리 시 [증권] 항목의

기타 비상장주식 등록/변경 메뉴에서 기존에 신고했던 법인 클릭하여 진행

- ※ 기타비상장주식 등록/변경 메뉴로 이동하지 않고 [증권] 항목에서 해당 기타비상장주식을 클릭할 경우 내용 수정이 불가함

소유자별 재산 정보

최종가액유형 평가액 1주당 최종가액 35,600 (원)

선택 소유자 권람매도 / 주식매지선택여부

배우자-배우자

보유량 200 (주)

보유액 7,120 (천원)

가액변동여부 (필수) ○ 예 ● 아니오

권람매도 / 주식매지선택여부

진단하기

평가액

1주당 권람매도 35,600 (원)

증가량 0 (주)

감소량 0 (주)

증가액 0 (천원)

감소액 0 (천원)

20년 전증 취득함

취득일자 (필수)

취득경위 (필수)

소득원 (필수)

기타

특기사항

가액변동 없음

파일첨부 (필수)

파일 이름

기업정보확인서.pdf

파일 크기 41.33 KB

최대 10 개 올릴 수 있음. tif, jpg, jpeg, gif, png, bmp, pdf, zip, hwp, hwpk, 파일만 가능

파일 추가

파일 삭제

계산하기 저장

- ② '현보유량' 확인 후 [진단하기]를 통해 진단가액유형 결정
- ③ [계산하기] 클릭하여 ④ 최종가액유형 및 1주당 최종가액 산정
- ⑤ 이전 신고 이후 거래로 인해 수량의 변동이 있거나, 가액의 변동이 없는 경우 '아니오', 그 외에는 '예' 선택
- ⑥ 최종가액유형에 따라 구비서류 참고하여 첨부 후 ⑦ [저장] 클릭

※ 유형별 상세 내용은 다음 <기타비상장주식 유형별 신규 등록 방법> 참고

[기타비상장주식 유형별 신규 등록 방법]

☞ . 재산신고 . 증권(주식·국채·공채·회사채·백지신탁·주식매수선택권 등) 원성파견 신고영상 작성방법

○ 모든 정보는 "등록기준일인 2022.12.31." 기준으로 입력 또는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정보활용입력 시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금융기관 등록정보와 다른 경우 자료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정보제공 동의자)의 경우 [금융정보발람] 을 클릭하여 내용 확인 후 [금융정보활용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증권 중 상장주식에 대한 일괄신고가 가능합니다.
 ○ 기타 비상장주식(K-OTC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상장주식)을 등록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는 [기타 비상장주식 등록/변경]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는 변동신고가 필요한 항목이나, 해당 칸을 선택하여 변동신고 하십시오. 주식거래내역신고 기타 비상장주식 등록/변경 추가 삭제 미리보기 (단위: 천원)

☞ . 재산신고 . 증권 . 기타 비상장주식 ① 기업정보확인서 신고 영상 구비서류 작성방법

○ 모든 정보는 등록기준일인 "2022.12.31" 기준으로 입력 또는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별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법인의 주식을 여러명의 친족이 소유한 경우 [소유자 추가] 및 [진단하기]를 통해 신고하십시오.
 ○ K-OTC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거래량 가중평균가'를 확인하여 '증권' 항목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는 변동신고가 필요한 항목이나, 해당 칸을 선택하여 변동신고 하십시오. ② 추가 삭제

선택	상태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최종가액유형	최종가액 (1주당/원)	종전가액 (천원)	변동액(천원)		현재가액 (천원)
							증가액	감소액	
						0	0	0	0
조회 자료가 없습니다									

- **기타 비상장주식 등록/변경** 클릭하여 기타비상장주식 등록화면으로 이동
- ① 기타 비상장주식 추가를 위해 필요한 정보 확인
 - **기업정보확인서** : 기타 비상장주식 신고를 위한 법인의 재무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서식을 내려 받아 법인에게 요청
 - **신고 영상** : 기타 비상장주식의 상황별 신고방법을 참고할 수 있도록 영상 제공
 - **구비서류** : 최종가액유형에 따른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파일 첨부

최종가액유형	구비서류
실거래가격	국세 과세신고자료
평가액	해당 기업에서 기업정보 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 재무제표 또는 기업정보확인서 해당 기업에서 기업정보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 재무제표
액면가	순자산 가치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기업이 회계정보제공 거부 등) → 관련 소명자료 실거래가격으로 결정되었으나 액면가가 더 높은 경우 → 국세 과세신고자료 평가액으로 결정되었으나 액면가가 더 높은 경우 → 재무제표 또는 기업정보확인서

- ② **추가** 클릭하여 나오는 추가 화면에서 법인 기본정보 먼저 입력 후 저장

법인 기본정보

법인명 (필수)	
법인등록번호 (필수)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등록된 법인등록번호를 '-'없이 13자리 연속 입력하세요. ※ 법인등록번호 검색은 한국거래소 또는 전자공시시스템 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1주당액면가 (필수)	(원)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1주당 액면가를 입력하세요.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에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진단가액유형이 실거래가격인 경우〉

소유자별 재산 정보						소유자 추가
최종가액유형		-	1주당 최종가액	- (원)		
선택	소유자	수량	가액진단	진단가액유형	1주당 진단가액	가액
	배우자-배우자	600 (주) [육백]주	진단하기		(원)	(천원)
가액변동여부 (필수)		☐ 예 ☒ 아니오				

- ① 소유자와 현재 보유 중인 수량 입력
 - 동일한 비상장주식을 등록대상 중 2명 이상 보유한 경우 **소유자 추가** 클릭하여 등록
- ② **진단하기** 클릭하여 기타 비상장주식 신고를 위한 가액유형 진단

신고가액 진단하기									
최근매매일자 (매입, 매도)	2022-09-09 ☐ 최근6개월(2022.07.01 ~ 2022.12.31)이내 매매 없음 ※ 입력한 최근매매일로 등록기준일 (2022.12.31) 기준 6개월 이내인지 자동 확인됩니다.								
국세신고여부	☒ 예 ☐ 아니오 ※ 국세신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는 경우에만 "예"를 선택하세요.								
제3자거래여부	☒ 예 ☐ 아니오 ※ 등록대상 친족이 아닌 제3자와 거래한 경우 "예"를 선택하세요.								
1주당 액면가	5,000 (원)								
발행주식총수	60,000 (주) [육만]주 ※ 최근매매일자 기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를 입력하세요. (법인등기부등본 등 참고)								
매매수량	600 (주) [육백]주 ※ 최근매매일자의 매입 또는 매도 수량을 입력하세요.								
1주당 실거래가격	6,500 (원) [육천오백]원 ※ 최근매매일자 기준 매입 또는 매도한 1주당 실거래가격을 입력하세요.								
진단하기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4">진단 결과</th> </tr> </thead> <tbody> <tr> <td>진단가액유형</td> <td>실거래가격</td> <td>1주당 진단가액</td> <td>6,500 (원) [육천오백]원</td> </tr> </tbody> </table>		진단 결과				진단가액유형	실거래가격	1주당 진단가액	6,500 (원) [육천오백]원
진단 결과									
진단가액유형	실거래가격	1주당 진단가액	6,500 (원) [육천오백]원						
진단완료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실거래가격으로 인정 ① (거래시기) 재산등록 기준일 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의 매매 (매도 또는 매입) ※ 해당 기간 중 둘 이상의 매매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매매를 말함 ② (거래상대방) 등록의무자나 이해관계자(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단, 재산등록사항을 고지거부한 사람 제외) 상호 간이 아닌 제3자와 매매거래 ※ 발행주식 총수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매매일 기준)의 1% 또는 매매한 주식의 합계액(액면가 기준)이 3억원 이상 ③ 발행주식 총수 또는 액면가는 주식발행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 ④ (입증가능성) 매매로 인해 납부 의무가 발생한 국세 신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어야 함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납부계산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등 다만, 실거래가격이 액면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로 신고									

- ③ 등록기준일 이전 6개월 이내 매매를 한 경우 최근 매매일자 선택
- ④ 국세신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고, 이해관계자가 아닌 제 3자와 거래한 경우 '예' 선택
- ⑤ 최근매매일자 기준 발행주식 총수와 매매한 수량, 1주당 실거래가격 입력
 - 입력된 매매수량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실거래가격으로 인정
- ⑥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진단하기** 클릭하면 진단 결과가 표시되며, 진단 결과 확인 후

진단완료 클릭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실거래가격으로 인정

소유자별 재산 정보 소유자 추가

최종가액유형		실거래가격		⑤ 1주당 최종가액		6,500 (원)
--------	--	-------	--	------------	--	-----------

선택	소유자	수량	가액진단	① 진단가액유형	1주당 진단가액	가액
	배우자-배우자	600 (주) [육백]주	진단하기	실거래가격	6,500 (원) [육천오백]원	3,900 (천원) [삼백구십만]원

② 가액변동여부 (필수) ☐ 예 ☒ 아니오

③ 형성과정

취득일자 (필수)	21.9.9. 취득 (10 / 300) ※ 거래계약일, 주주명부 등재일,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 등3
취득경위 (필수)	투자 목적으로 매입 (10 / 300) ※ 목적, 방법(매입·상속·증여 등 여부), 상대방(매입·상속·증여의 상대방 및 상대방과의 관계)
소득원 (필수)	예금과 기존 주식 매도 대금으로 매입 (20 / 300) ※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증권을 취득한 자금 출처
기타	 ※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특기사항

⑥ 파일첨부 (필수)

☐ 파일 이름	파일 크기
☒ 국세과세신고자료.pdf	41.33 KB

최대 10 개 용량 무제한 tif, jpg, jpeg, gif, png, bmp, pdf, zip, hwp, hwpex 파일만 가능 1 개, 41.33 KB 추가됨

파일 추가 파일 삭제

④ **계산하기** 저장 ⑦ 작성취소

- ① 진단하기를 통해 실거래가격 인정요건에 모두 충족한 경우 진단가액유형은 실거래가격, 1주당 진단가액은 실거래가격으로 산정됨
- ② 비상장주식 신규 추가 시 가액변동여부는 '아니오'로 선택됨
- ③ 공개대상자의 경우 형성과정의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을 필수 입력
- ④ **계산하기** 클릭하여 최종가액유형 및 1주당 최종가액 산정
※ 진단가액유형이 실거래가격이기 때문에 '평가액 계산하기' 진행하지 않고, 본인이 입력한 1주당 실거래가격으로 계산됨
- ⑤ 진단가액유형이 실거래가격이고, 액면가보다 실거래가격이 높기 때문에 최종가액유형이 실거래가격으로 표시
- ⑥ 최종가액유형이 실거래가격이므로 국세과세신고자료 첨부
- ⑦ 모든 항목 입력 후 **저장** 클릭

〈진단가액유형이 평가액인 경우〉

소유자별 재산 정보				소유자 추가	
최종가액유형		-	1주당 최종가액		
선택	소유자 ①	수량	가액진단	진단가액유형	1주당 진단가액
	본인-홍길동	600 (주) (육백)주	진단하기 ②		(원)
가액변동여부 (필수)		☐ 예 ☒ 아니오			

- ① 소유자와 현재 보유 중인 수량 입력
 - 동일한 비상장주식을 등록대상 중 2명 이상 보유한 경우 **소유자 추가** 클릭하여 등록
- ② **진단하기** 클릭하여 기타 비상장주식 신고를 위한 가액유형 진단

신고가액 진단하기	
최근매매일자 (필수) (매일, 매도)	2021-11-08 ☐ 최근6개월(2021.07.01 ~ 2021.12.31)이내 매매 없음 ③
국세신고여부	☒ 예 ☐ 아니오 ※ 국세신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는 경우에만 "예"를 선택하세요.
제3자거래여부	☒ 예 ☐ 아니오 ※ 등록대상 친족이 아닌 제3자와 거래한 경우 "예"를 선택하세요. ④
1주당 액면가	5,000 (원)
발행주식총수	9,067,263 (주) [구역외판권인력육십삼]주
매매수량	200 (주) [이백]주 ⑤
1주당 실거래가격	6,500 (원) [육천오백]원
진단하기	
진단 결과 ⑥	
진단가액유형	평가액
1주당 진단가액	(원)
진단완료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실거래가격으로 인정

① (거래시기) 재산등록 기준일 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의 매매 (매도 또는 매입)
※ 해당 기간 중 둘 이상의 매매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매매를 알함

② (거래상대방) 등록의무자나 이해관계자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단, 재산등록사항을 고지거부한 사람 제외) 상호 간인 아닌 제3자와 매매거래

③ (거래규모) 매매한 주식의 총수가 해당 법인 발행주식 총수 (매매일 기준)의 1% 또는 매매한 주식의 합계액 (액면가 기준)이 3억원 이상
※ 발행주식 총수 또는 액면가는 주식발행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

④ (입증가능성) 매매로 인해 납부 의무가 발생한 국세 신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어야 함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납부계산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등

다만, 실거래가격이 액면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로 신고

- ③ 등록기준일 이전 6개월 이내 매매 여부에 따라 정확한 날짜를 선택하거나 '최근 6개월 이내 매매 없음'에 체크
 - 매매 없음에 체크 시 다음 항목 입력없이 평가액으로 진단됨
- ④ 국세신고여부와 제3자 거래여부를 선택
 - 두 항목 중 한 항목이라도 '아니오'에 체크될 경우 평가액으로 진단됨
- ⑤ 국세신고여부와 제3자 거래여부를 '예'로 체크한 경우에만 활성화되며, 최근 매매일자 기준 발행주식총수, 최근 매매수량, 최근 매매한 1주당 실거래가격 입력
 - 입력된 매매수량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인 경우 평가액으로 진단
- ⑥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진단하기** 클릭하면 진단 결과가 표시되며, 진단 결과 확인 후

진단완료 클릭

소유자별 재산 정보 소유자 추가

최종가액유형		1주당 최종가액	
선택	소유자	수량	가액진단
본인-홍길동	600 (주) [유백]주	진단하기	진단가액유형
		평가액	1주당 진단가액
			가액
가액변동여부 (필수)		가액	
☐ 예 ☒ 아니오			
③ 형성과정	취득일자 (필수)	21.11.8. 취득 (11 / 300) ※ 거래계약일, 주주명부 등제일,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 등3	
	취득경위 (필수)	투자를 목적으로 지인 소개받아 매입 (19 / 300) ※ 목적, 방법(매입·상속·증여 등 여부), 상대방(매입·상속·증여의 상대방 및 상대방과의 관계)	
	소득원 (필수)	타 증권을 매도한 대금으로 매입 (17 / 300) ※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증권을 취득한 자금 출처	
	기타		
※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특기사항			

파일첨부 (필수)

파일 이름
파일 크기

이곳을 더블클릭 또는 파일을 드래그 하세요.

최대 10 개 용량 무제한 tif, jpg, jpeg, gif, png, bmp, pdf, zip, hwp, hwpk 파일만 가능
 0 개, 0 byte 추가됨

파일 추가
파일 삭제

④ 계산하기
저장
작성취소

- ① 진단을 통해 결정된 유형 표시
- ② 비상장주식 신규 추가 시 가액변동여부는 '아니오'로 선택됨
- ③ 공개대상자의 경우 형성과정의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을 필수 입력
- ④ 계산하기 클릭하여 최종가액유형 및 1주당 최종가액 산정

평가액 계산하기

기업정보 확인서(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제1호의4)를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선택하세요.

☐ 해당 주식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법인이 회계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등)
 ☐ 현재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A)
 ☐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4년 미만의 법인, 휴업·폐업 중인 법인(B)

■ 평가대상 기업 재무정보

1주당 액면가

5,000 (원)

발행주식총수

9,067,263 (주) [구백육만칠천이백육십삼] 주

자산총액

2,399,863,325,445 (원) [이조삼천구백구십팔억육천삼백삼십이만오천사백사십오] 원

부채총액

1,996,368,162,220 (원) [일조구천구백육십삼억육천팔백십육만이천이백이십] 원

순자산가액

403,495,163,225 (원) [사천삼십사억구천오백삼십삼천이백이십오] 원

사업연도

최근 사업연도

2020-01-01 ~ 2020-12-31

직전 사업연도

2019-01-01 ~ 2019-12-31

직전전 사업연도

2018-01-01 ~ 2018-12-31

당기순이익

22,996,028,686 (원) [이백이십구억구천육백이만팔천육백삼십육] 원

26,589,126,668 (원) [이백육십오억팔천구백십삼이만육천육백육십팔] 원

8,171,212,768 (원) [팔십일억칠천일백이십일만이천칠백육십팔] 원

발행주식총수

9,067,263 (주) [구백육만칠천이백육십삼] 주

9,067,263 (주) [구백육만칠천이백육십삼] 주

9,067,263 (주) [구백육만칠천이백육십삼] 주

1주당 당기순이익

2,536 (원) [이천오백삼십육] 원

2,932 (원) [이천구백삼십이] 원

901 (원) [구백일] 원

1주당 평가액 계산하기

다시입력하기

■ 기타 비상장주식 1주당 평가액

1주당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의 가중평균액

2,395 (원) [이천삼백구십오] 원

1주당 당기순이익가치

23,950 (원) [이만삼천구백오십] 원

1주당 순자산가치

44,500 (원) [사만사천오백] 원

1주당 평가액

35,600 (원) [삼만오천육백] 원

계산완료

- ① 평가액 계산 전 3가지 항목 중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체크하여 진행
 - 해당 주식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 체크할 경우 관련 소명내용을 기재할 수 있는 칸이 생성되며, 기업 재무정보가 모두 비활성화 되고, **1주당 평가액 계산하기** 클릭 시 1주당 평가액은 액면가로 계산됨
 - 현재 청산절차 진행 중 또는 휴·폐업중인 경우 : 사업연도 ~ 1주당 당기순이익이 비활성화되어 나머지 기본정보만 입력하여 평가액 계산
- ② 자산총액과 부채총액 입력 시 순자산가액이 자동 계산되며, 단위 착오 없이 기재
- ③ 해당 법인의 최근, 직전, 직전전 사업연도를 중복되지 않게 입력하고, 그에 맞는 ④ 당기순이익과 발행주식 총수 입력하여 1주당 당기순이익 자동 계산
- ⑤ 모든 항목 입력 후 **1주당 평가액 계산하기** 클릭하면 자동으로 1주당 평가액이 계산되며, **계산완료** 클릭하여 팝업으로 안내되는 구비서류 확인

98 Ministry of Personnel Management

소유자별 재산 정보 소유자 추가

최종가액유형		평가액 2		1주당 최종가액		35,600 (원)	
--------	--	---	--	----------	--	------------	--

선택	소유자	수량	가액진단	진단가액유형	1주당 진단가액	가액
	본인-홍길동	600 (주) [육백]주	진단하기	평가액	35,600 (원) [삼만오천육백] 원	21,360 (천원) [이천일백삼십육만] 원 1

가액변동여부 (필수) ☐ 예 ☒ 아니오

형성과정

취득일자 (필수) 21.11.8. 취득 (11 / 300)
※ 거래계약일, 주주명부 등재일,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 등3

취득경위 (필수) 투자를 목적으로 지인 소개받아 매입 (19 / 300)
※ 목적, 방법(매입·상속·증여 등 여부), 상대방(매입·상속·증여의 상대방 및 상대방과의 관계)

소득원 (필수) 타 증권을 매도한 대금으로 매입 (17 / 300)
※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증권을 취득한 자금 출처

기타
※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특기사항

파일첨부 (필수) 3

☐ 파일 이름

☒ 기업정보확인서.pdf 41.33 KB

최대 10 개 용량 무제한 tif, jpg, jpeg, gif, png, bmp, pdf, zip, hwp, hwpkx 파일만 가능

1 개, 41.33 KB 추가됨

파일 추가 파일 삭제

계산하기
저장 4
작성취소

- ① ‘평가액 계산하기’를 통해 계산된 1주당 진단가액과 가액(1주당 최종가액 × 수량)이 표시됨
- ② 진단가액유형이 평가액이고, 액면가보다 평가액이 높기 때문에 최종가액 유형이 평가액으로 표시됨
- ③ 최종가액유형이 평가액이므로 기업정보확인서 또는 재무제표 첨부
- ④ 모든 항목 입력 후 저장 클릭

〈해당 주식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액면가)〉

소유자별 재산 정보				1주당 최종가액	
선택	소유자	수량	가액진단	진단가액유형	1주당 진단가액
	배우자-배우자 ①	400 (주) [사액주]	진단하기 ②		(원)
가액변동여부 (원수) ☐ 예 ☒ 아니오					

- ① 소유자와 현재 보유 중인 수량 입력
 - 동일한 비상장주식을 등록대상 중 2명 이상 보유한 경우 **소유자 추가** 클릭하여 등록
- ② **진단하기** 클릭하여 기타 비상장주식 신고를 위한 가액유형 진단

신고가액 진단하기	
최근매매일자 (필수) (매매, 매도)	③ [] ☒ 최근6개월(2021.07.01 ~ 2021.12.31)이내 매매 없음 ※ 입력한 최근매매일로 등록기준일 (2021.12.31) 기준 6개월 이내인지 자동 확인됩니다.
국세신고여부	④ ☐ 예 ☐ 아니오 ※ 국세신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는 경우에만 “예”를 선택하세요.
제3자거래여부	☐ 예 ☐ 아니오 ※ 등록대상 친족이 아닌 제3자와 거래한 경우 “예”를 선택하세요.
1주당 액면가	5,000 (원)
발행주식총수	(주) ※ 최근매매일자 기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를 입력하세요. (법인등기부등본 등 참고)
매매수량	(주) ※ 최근매매일자의 매입 또는 매도 수량을 입력하세요.
1주당 실거래가격	(원) ※ 최근매매일자 기준 매입 또는 매도한 1주당 실거래가격을 입력하세요.
진단하기	
진단가액유형	⑥ 평가액 1주당 진단가액 (원)
진단완료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실거래가격으로 인정

- (거래시기) 재산등록 기준일 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의 매매 (매도 또는 매입)
※ 해당 기간 중 둘 이상의 매매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매매를 말함
- (거래상대방) 등록의무자나 이해관계자(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단, 재산등록사항을 고지거부한 사람 제외) 상호 간에 아닌 제3자와 매매거래
- (거래규모) 매매한 주식의 총수가 해당 법인 발행주식 총수(매매일 기준)의 1% 또는 매매한 주식의 합계액(액면가 기준)이 3억원 이상
※ 발행주식 총수 또는 액면가는 주식발행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
- (입증가능성) 매매로 인해 납부 의무가 발생한 국세 신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어야 함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납부계산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등

다만, 실거래가격이 액면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로 신고

- ③ 등록기준일 이전 6개월 이내 매매여부에 따라 정확한 날짜를 선택하거나 ‘최근 6개월 이내 매매 없음’에 체크
 - 매매 없음에 체크 시 다음 항목 입력 없이 평가액으로 진단됨
- ④ 국세신고여부와 제3자 거래여부를 선택
 - 두 항목 중 한 항목이라도 ‘아니오’에 체크될 경우 평가액으로 진단됨
- ⑤ 국세신고여부와 제3자 거래여부를 ‘예’로 체크한 경우에만 활성화되며, 최근 매매일자 기준 발행주식총수, 최근 매매수량, 최근 매매한 1주당 실거래가격 입력
 - 입력된 매매수량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인 경우 평가액으로 진단
- ⑥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진단하기** 클릭하면 진단 결과가 표시되며, 진단 결과 확인 후

진단완료 클릭

소유자별 재산 정보 소유자 추가

최종가액유형		1주당 최종가액	
선택	소유자	수량	가액잔단
	배우자-배우자	400 (주) [사백]주	진단하기
		진단가액유형	1주당 진단가액
		평가액 ①	가액
			(원)
		가액변동여부 (필수)	②
		☐ 예 ☒ 아니오	
형성과정 ③	취득일자 (필수)	15년 전부터 보유중 (11 / 300)	
	취득경위 (필수)	당시 투자 목적으로 매입 (13 / 300)	
	소득원 (필수)	타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매입 (17 / 300)	
	기타		
특기사항			
파일첨부 (필수) 파일 이름 파일 크기 이곳을 더블클릭 또는 파일을 드래그 하세요. 최대 10 개 용량 무제한 bit, jpg, jpeg, gif, png, bmp, pdf, zip, hwp, hwpX 파일만 가능 0 개, 0 byte 추가됨 파일 추가 파일 삭제			
		④	계산하기
		저장	작성취소

- ① 진단을 통해 결정된 유형 표시
- ② 비상장주식 신규 추가 시 가액변동여부는 '아니오'로 선택됨
- ③ 공개대상자의 경우 형성과정의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을 필수 입력
- ④ **계산하기** 클릭하여 최종가액유형 및 1주당 최종가액 산정

평가액 계산하기

기업정보 확인서(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제1호의4)를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선택하세요.

☒ 해당 주식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법인이 회계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등) ※ 정보취득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장폐지된 주식으로, 해당 법인이 청산종결되지 않아 기업정보확인서를 요청하려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으며, 메일로 기업정보확인서를 보냈음에도 답변이 없어 정보 확인이 어려운 상태

(102 / 300)

①

☐ 현재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A)
☐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4년 미만의 법인, 휴업·폐업 중인 법인(B)

■ 평가대상 기업 재무정보

1주당 액면가	5,000 (원)		
발행주식총수	(주)		
자산총액	(원)		
부채총액	(원)		
순자산가액	(원)		
사업연도	최근 사업연도	작성 사업연도	작성전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원)	(원)	(원)
발행주식총수	(주)	(주)	(주)
1주당 당기순이익	(원)	(원)	(원)

1주당 평가액 계산하기

다시입력하기

■ 기타 비상장주식 1주당 평가액

1주당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의 기중평균액	(원)
1주당 당기순이익가치	(원)
1주당 순자산가치	(원)
1주당 평가액	5,000 (원) [오천원]

②

계산완료

- ① 해당 주식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법인이 회계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등)에 체크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작성하고, 해당 사유에 체크할 경우 평가대상 기업 재무정보는 모두 비활성화됨
- ② 1주당 평가액 계산하기 클릭 시 법인 기본정보에 입력한 1주당 액면가로 최종 1주당 평가액이 계산되며, 계산완료 클릭하여 팝업으로 안내되는 구비서류 확인

102 Ministry of Personnel Management

소유자별 재산 정보 소유자 추가

최종가액유형		액면가	②	1주당 최종가액	5,000 (원)
--------	--	-----	---	----------	-----------

선택	소유자	수량	가액진단	진단가액유형	1주당 진단가액	가액
	배우자-배우자	400 (주) [사백] 주	진단하기	평가액	① 5,000 (원) [오천] 원	2,000 (천원) [이백만] 원
가액변동여부 (필수) ☐ 예 ☒ 아니오						
형성과정		취득일자 (필수)	15년 전부터 보유중 (11 / 300)		※ 거래계약일, 주주명부 등제일,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 등3	
		취득경위 (필수)	당시 투자 목적으로 매입 (13 / 300)		※ 목적, 방법(매입·상속·증여 등 여부), 상대방(매입·상속·증여의 상대방 및 상대방과의 관계)	
		소득원 (필수)	타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매입 (17 / 300)		※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증권을 취득한 자금 출처	
		기타			※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특기사항						

파일첨부 ③

☐ 파일 이름

파일 크기

이곳을 더블클릭 또는 파일을 드래그 하세요.

최대 10 개 용량 무제한 tif, jpg, jpeg, gif, png, bmp, pdf, zip, hwp, hwpX 파일만 가능
 0 개, 0 byte 추가됨

파일 추가
파일 삭제

계산하기
저장 ④
 작성취소

- ① '평가액 계산하기'를 통해 계산된 1주당 진단가액과 가액(1주당 최종가액 × 수량)이 표시됨
- ② '평가액 계산하기'에서 '해당 주식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체크하여 진행했기 때문에 최종가액유형이 액면가로 표시됨
- ③ 최종가액유형이 액면가이므로 기업에 정보제공을 요청한 일자·방법 등 요청내역, 제출 거부사유 등 관련 소명자료를 첨부
※ 해당 사유인 경우 첨부파일은 필수가 아니며, 선택사항임
- ④ 모든 항목 입력 후 저장 클릭

[기타비상장주식 전량매도]

소유자별 재산 정보 소유자 추가

최종가액유형	전량매도	1주당 최종가액	0 (원)	
선택	소유자	전량매도 / 주식백지신탁여부	가액진단	전량가액유형
	배우자-배우자	☒ 전량매도 ☐ 주식백지신탁여부	진단하기	전량매도
	보유량	前보유량 200 (주) [미백]주	現보유량 0 (주)	증가량 0 (주)
	보유액	前보유액 7,120 (천원) [실백일십이만 원]	現보유액 0 (천원)	감소액 7,120 (천원) [실백일십이만 원]
	가액변동여부 (필수)	☐ 예 ☒ 아니오		
형성과정	취득일자	20년 전쯤 취득함 (10 / 300) ※ 거래계약일, 주주명부 등재일,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 등7		
	취득경위	투자를 목적으로 매입 (11 / 300) ※ 목적, 방법(매입·상속·증여 등 여부), 상대방(매입·상속·증여의 상대방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		
	소득원	당시 예금잔액으로 매입 (12 / 300) ※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증권을 취득한 자금 출처		
	소속권	당시 예금잔액으로 매입 (12 / 300) ※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증권을 취득한 자금 출처		
	상실일자 (필수)	2021-11-04 [미] ※ 매도일, 증여일 등		
	상실경위 (필수)	타 증권 매입을 위해 제 3자에게 매도 (21 / 300) ※ 목적, 방법(매도·상속·증여 등 여부), 상대방(매입·상속·증여의 상대방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		
	사용처 (필수)	타 증권 매입함 (8 / 300) ※ 매도금 사용처 (예) 매도금(2억)은 예금으로 전환		
	기타			
	특기사항	전량매도 (0 / 300)		
파일첨부	파일 이름	파일 크기		
	여기를 더블클릭 또는 파일을 드래그 하세요. 			
최대 10 개 용량 무제한 tif, jpg, jpeg, gif, png, bmp, pdf, zip, hwp, hwpk 파일만 가능 0 개, 0 byte 추가됨				
파일 추가 파일 삭제 계산하기 <input checked="" type="button" value="저장"/> 작성취소				

- ① 보유하고 있던 기타 비상장주식을 전량 매도한 경우 ☒ 전량매도 체크 시 '現보유량'과 '現보유액'이 '0'으로 변동됨
 - ② 공개대상자의 경우 형성과정의 상실일자, 상실경위, 사용처를 필수 입력
 - ③ 모든 항목 입력 후 클릭
- ※ 소유자가 2명 이상일 때 일부 소유자만 전량매도하고 나머지 소유자는 아직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경우 해당 주식의 최종가액유형을 결정하기 위하여 전량매도한 대상자도 를 통해 가액진단해야 함

주식거래내역 신고(공개자)

- 재산공개대상자는 한국거래소 상장주식 및 장외거래 주식에 대해 거래내역이 있는 경우 '주식거래내역서'를 등록기관에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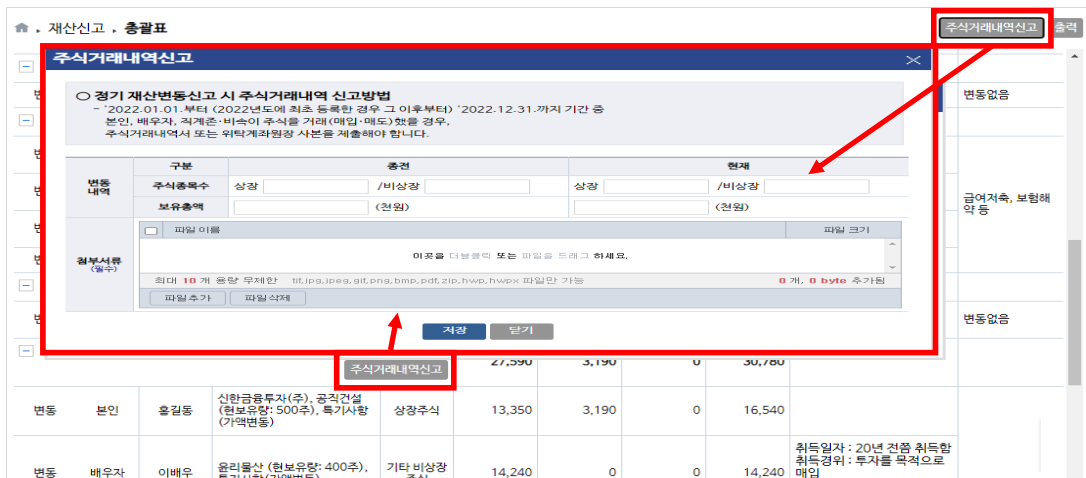
■ 정기 재산변동신고 시 주식거래내역 신고방법

- (신고대상기간) '22.1.1.부터('22년도에 최초 재산신고시 그 이후부터) 12.31.까지의 거래내역
※ '21.10.1.~'21.12.31. 중 공개대상자가 된 경우 그 등록기준일자로부터 '22.12.31.까지의 거래내역
- (신고방법) 금융기관이 발급하는 위탁계좌번호, 주식 거래일, 종목, 수량, 실거래액 등이 기재된 주식거래내역서 또는 위탁계좌원장 사본을 첨부하여 등록기관에 신고(영 제5의2제3항)

- 총괄표를 클릭하면 주식거래내역 신고안내 팝업이 나타나며, '예' 클릭하여 바로 이동 가능



- '아니오'를 클릭한 경우 총괄표 목록 '주식거래내역신고' 버튼을 통해 작성 후 저장



채권 입력방법

● 재산신고 · 채권(사인 간 채권, 기타) 형성과정 신고영상 작성방법

☐ 모든 정보는 "등록기준일인 2022.12.31." 기준으로 입력 또는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신규채권) 발생사유, 일자, 채무자와의 관계, 자금출처, 이자율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고 전세권(임차권)은 채권항목이 아닌 '부동산(건물)' 항목에 신고하십시오.
☐ (기존채권) 변동 시 변동사유, 자금흐름 등을 기재하십시오.

① 는 변동신고가 필요한 항목이니, 해당 건을 선택하여 변동신고 하십시오. 추가 삭제 미리보기 (단위: 천원)

변동재산

관계	모
소유자	홍경
관리종류	사인간채권

☐ 전액환수(※ 선택된 채권 전액을 환수한 경우 체크 하십시오.)

채권액변경 (일수)	前 채권액	後 채권액(일수)	증가액	감소액
	10,000(천원) [일천만] 원	10,000 (천원) [일천만] 원	0 (천원)	0 (천원)
발생일자	2020-04-16			
만기일자 (일수)	2025-04-15			
채무자	박재우			
채무자 주소 (일수)	도로명 12945 우소찾기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79- 동 호 (신장동, 대명강변타운아파트) ※ 해외거주자일 경우 기타(국외 등)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 검색이안되는 보안 사설인 경우 기타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 전화번호 (일수)	010-1234-5678 예: 010-1234-5678			

형성과정

취득일자 (일수)	2020-04-16 취득
취득경위 (일수)	※ 계약이체일, 차용증상 대어일 등 채무자가 친척이며, 친척의 전세 보증금 일부를 빌려줌
소득원 (일수)	※ 채무자와의 관계, 발생사유 등 보유중인 예금으로 빌려줌
기타	※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등 해당 채권의 자금 출처 ※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변동사유 (일수)

※ '변동사유'란에는 증감 변동사유를 적으십시오.

파일첨부

☐ 파일 이름 파일 크기

이곳을 더블클릭 또는 파일을 드래그 하세요.

최대 10 개 용량 무제한 gif, jpeg, png, pdf, zip, hwp, hwpx 파일만 가능 0 개, 0 byte 추가됨

파일 추가 파일 삭제

저장 작성취소

-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모든 채권을 신고
- 신규재산을 등록할 경우 총괄표에서 **추가** 버튼 클릭
 - 채권자, 채권액, 발생일자, 만기일자, 채무자, 채무자주소, 전화번호, 변동사유를 입력
 - ※ 타인의 주택, 상가 등 부동산에 설정한 전세(임차)권은 채권항목에 등록하지 않고 부동산(토지·건물) 항목에 전세권으로 신고
- 종전 신고한 재산항목을 변동처리할 경우 해당 항목을 클릭하여 변동사항 입력
- 보유채권을 전액환수했을 경우 ☐ 전액환수에 체크 후 변동사유 입력
- 변동사항을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해 내용 저장

채무 입력방법

● 재산신고 · 채무(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건물(또는 토지) 임대 채무) 현성과정 신고영상 작성방법

○ 모든 정보는 "등록기준일인 2022.12.31." 기준으로 입력 또는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정보활용입력 시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국유기관 등록정보와 다른 경우 기록이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정보제공 동의자)의 경우 **금융정보열람** 또는 **금융정보활용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내용 확인 후 **금융정보활용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금융채무 일괄신고가 가능합니다.
 ※ 부동산을 임대해주고 받는 돈(보증금)은 "건물임대채무"로 신고해야 합니다.

① 는 변동신고가 필요한 항목이니, 해당 건을 선택하여 변동신고 하십시오. 추가 삭제 미리보기 (단위: 천원)

변동채무

관계	본인
채무자	홍길동
채무종류	금융채무
대출기관	신한은행
계좌번호	110-001-001234

☐ 전액상환(※ 선택된 채무 전액을 상환한 경우에 체크 하십시오.)

	前 채무액	現 채무액 (입수)	채무증가액	채무감소액
가액변경 (입수)	10,000 (천원) [일천만] 원	10,000 (천원) [일천만] 원	0 (천원)	0 (천원)
발생일자	2020-08-07			
만기일자	2025-08-06 만기입력삭제			

형성과정

취득일자 (선택)
 ※ 계약이체일, 차용일 등

취득경위 (선택)
 ※ 채권자와의 관계, 채무의 사용목적 등

기타 (선택)
 ※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변동사유

파일첨부

☐ 파일 이름 파일 크기

이곳을 더블클릭 또는 파일을 드래그 하세요.



최대 10 개 용량 무제한 gif, jpg, jpeg, gif, png, bmp, pdf, zip, hwp, hwpx; 파일만 가능 0 개, 0 byte 추가됨

파일추가 파일삭제

저장 작성취소

-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모든 채무를 신고
- 정보제공동의자는 **금융정보열람** 을 통해 제공받은 정보 확인이 가능하며, **금융채무**의 경우 **금융정보활용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제공받은 회신자료로 일괄반영 가능
 - ※ 본 기능은 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편의를 위한 선택사항으로 재산신고 내용은 반드시 확인하여 본인 책임하에 신고하여야 함
 - ※ 금융정보활용입력은 예금·보험, 증권, 채무항목에서 각각 진행해야 함
- 금융정보제공 미동의자의 경우 종전 신고한 채무항목을 클릭하여 변동사항을 입력하고 신규 채무의 경우 **추가** 버튼 클릭하여 등록
 - 종전 신고한 채무항목에 대해 채무액이 변경된 경우 "현재채무액"에 기재 (증가/감소액은 자동입력됨)
 - **추가** 할 경우 채무자, 채무종류, 채무액, 발생일자, 만기일자, 변동사유를 입력

-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먼저 건물항목에 소유권으로 등록한 뒤 보증금은 채무종류 ‘건물임대채무’ 선택하여 등록 (보증금 없이 월세만 받는 경우 채무는 등록하지 않음)
- 부모-자녀 등 가족 사이에 발생한 채무도 사인간 채무로 신고
※ (예시) 등록의무자가 자녀에게 전세보증금을 빌려준 경우 등록의무자는 사인간 채권, 자녀는 사인간 채무로 각각 신고
- 보유채무를 전액 상환하였을 경우 ☐ 전액상환에 체크 후 변동사유 입력
- 변동사항을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해 내용 저장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 포함) 입력방법

● 재산신고 :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 포함) 작성방법

○ 모든 정보는 "등록기준일인 2022.12.31." 기준으로 입력 또는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소유자별 합계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모두 신고하십시오.
 ○ 매입한 경우 매입가격으로 신고하고, 매도한 경우 현재 가액을 '0원'으로 신고 후 '실거래가격'란에 매도 가격을 기재하고, 계속 보유 중인 경우(상속·증여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포함) 등록기준일 현재 시장가격으로 가액을 산정하고 변동사항 신고하십시오.

● 는 변동신고가 필요한 항목이니, 해당 건을 선택하여 변동신고 하십시오. 추가 삭제 미리보기 (단위: 천원)

변동재산

관계	배우자
소유자	이여왕
종류	순금
함량	24

☐ 매도, 증여 등으로 인한 소유권 상실

보유량 변경	前 보유량	現 보유량(필수)	증가량	감소량
	75(g)	75(g) ※ 금 1(환)돈 중량: 3.75g	0(g)	0(g)
가액 변경	前 가액 5,625(천원) [오백육십이만오천] 원	現 가액(필수) 5,625(천원) [오백육십이만오천] 원	증가액 0(천원)	감소액 0(천원)
現 실거래가격	0(천원) 한국금거래소			
가액변동여부(필수)	☐ 예 ☒ 아니오			

형성과정

취득일자 (선택)	
취득경위 (선택)	※ 매입일, 상속일, 증여일 등
소득원 (선택)	※ 목적, 방법(매입·상속·증여 등 여부), 상대방(매입·상속·증여의 상대방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
기타 (선택)	※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변동사유 (필수)

가액변동 없음
 ※ '변동사유'란에는 매입·매도·상속·증여·가액변동 등 증감원인을 적으십시오.

파일첨부

☐ 파일 이름

이곳을 더블클릭 또는 파일을 드래그 하세요.

최대 10 개 용량 무제한 tif, jpg, jpeg, gif, png, bmp, pdf, zip, hwp, hwpX 파일만 가능 0 개, 0 byte 추가됨

파일추가 파일삭제

저장 작성취소

- 소유자별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모두 신고
- 신규재산을 등록할 경우 총괄표에서 추가 버튼 클릭
 - 소유자, 종류(금·백금), 함량, 보유량, 실거래액, 변동사유를 입력
 - ※ 신규 등록하는 경우 가액은 감평가 등 시장거래 금액으로 산정
- 종전 신고한 재산항목을 변동처리할 경우 해당 항목을 클릭하여 변동사항 입력
 - 보유량의 증감 없이 가액만 변동된 경우도 등록기준일의 금 시세를 조회하여 신고하고,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가액변동여부”를 “아니오”로 체크하여 신고
- 보유재산을 매도한 경우 ☐ 매도, 증여 등으로 인한 소유권 상실 에 체크 후 변동사유 입력
- 변동사항을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해 내용 저장

보석류 입력방법

재산신고 · 보석류

작성방법

○ 모든 정보는 "등록기준일인 2022.12.31." 기준으로 입력 또는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품목당 가격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하되, 매입한 경우 매입가격으로 신고하고, 매도한 경우 현재 가격을 '0원'으로 신고 후 '실거래가격'란에 매도 가격을 기재하십시오.

○ 증여·상속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등록기준일 현재 전문가 등의 평가액으로 신고하십시오.

!

는 변동신고가 필요한 항목이니, 해당 건을 선택하여 변동신고 하십시오.

추가식제미리보기(단위: 천원)

변동재산

관계	모
소유자	홍경
종류	다이아몬드
크기	1캐럿
색상	흰색

☐ 매도, 증여 등으로 인한 소유권 상실

가격 변경	前 가격	現 가격 (필수)	증가액	감소액
	10,000 (천원) [일천만] 원	10,000 (천원) [일천만] 원	0 (천원)	0 (천원)
現 실거래가격	0 (천원) 한국보석감정사회 ※ 매도 시에는 중전가격을 감소하여 해당란에 기재하되 실패도액을 '실거래가격'란에 적으십시오.			

형성과정

취득일자 (선택)

※ 매입일, 상속일, 증여일 등

취득경위 (선택)

※ 목적, 방법(매입·상속·증여 등 여부), 상대방(매입·상속·증여의 상대방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

소득원 (선택)

※보석류를 취득한 자금 출처

기타 (선택)

※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변동사유 (필수)

※ '변동사유'란에는 매입·매도·상속·증여 등 증감원인을 적으십시오.

파일첨부

☐ 파일 이름
 파일 크기

이곳을 더블클릭 또는 파일을 드래그 하세요.

최대 10 개 용량 무제한 tif,jpg,png,gif,png,bmp,pdf,zip,hwp,hwpX 파일만 가능

0 개, 0 byte 추가됨

파일추가

파일삭제

저장

작성취소

- 품목당 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
- 신규재산을 등록할 경우 총괄표에서 **추가** 버튼 클릭
 - 소유자, 종류(다이아몬드 등), 함량, 보유량, 실거래액, 변동사유를 입력
 - ※ 매입한 경우 매입가격으로 신고
- 종전 신고한 자산항목을 변동처리할 경우 해당 항목을 클릭하여 변동사항 입력
- 거래 없이 계속 보유만 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 가액을 그대로 유지
- 보유재산을 매도한 경우 ☐ **매도, 증여 등으로 인한 소유권 상실**에 체크 후 변동사유 입력
- 변동사항을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해 내용 저장

골동품 및 예술품 입력방법

★ 재산신고, 골동품 및 예술품 작성방법

○ 모든 정보는 "등록기준일인 2022.12.31." 기준으로 입력 또는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품목당 가격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하고, 매입한 경우 매입가격으로 신고하고, 매도한 경우 현재 가액을 '0원'으로 신고 후 '실거래가격'란에 매도 가격을 기재하십시오.
○ 증여·상속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등록기준일 현재 전문가 등의 평가액으로 신고하십시오.

① 는 변동신고가 필요한 항목이니, 해당 건을 선택하여 변동신고 하십시오. 추가 삭제 미리보기 (단위: 천원)

변동재산

관계	부
소유자	홍공
종류	동양화
품명	네이처
크기	50*50
작가	이**
제작연대	1950년대

☐ 매도, 증여 등으로 인한 소유권 상실

가액 변경	前 가액	現 가액(필수)	증가액	감소액
	10,000(천원) [일천만] 원	10,000 (천원) [일천만] 원	0 (천원)	0 (천원)

現 실거래가격: 0 (천원) 한국고미술협회

형성과정

취득일자 (선택):
※ 매입일, 상속일, 증여일 등

취득경위 (선택):
※ 목적, 방법(매입·상속·증여 등 여부), 상대방(매입·상속·증여의 상대방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

소득원 (선택):
※ 골동품 및 예술품 취득한 자금 출처

기타 (선택):
※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변동사유 (필수):
※ '변동사유'란에는 매입·매도·상속·증여 등 증감원인을 적으십시오.

파일첨부

☐ 파일 이름: 파일 크기:

이곳을 더블클릭 또는 파일을 드래그 하세요.

최대 10 개 용량 무제한 tif, jpg, jpeg, gif, png, pdf, zip, hwp, hwpX; 파일만 가능 0 개, 0 byte 추가됨

파일추가 파일삭제

저장 작성취소

- 품목당 500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
- 신규재산을 등록할 경우 총괄표에서 추가 버튼 클릭
 - 소유자, 종류(도자기, 회화 등) 품명, 크기, 작가, 제작연대, 실거래가격, 변동사유를 입력
 - ※ 매입한 경우 매입가격으로 신고
- 종전 신고한 재산항목을 변동처리할 경우 해당 항목을 클릭하여 변동사항 입력
- 거래 없이 계속 보유만 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 가액을 그대로 유지
- 보유재산을 매도한 경우 ☐ 매도, 증여 등으로 인한 소유권 상실 에 체크 후 변동사유 입력
- 변동사항을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해 내용 저장

회원권 입력방법

· 재산신고
· 회원권
작성방법

○ 모든 정보는 "등록기준일인 2022.12.31." 기준으로 입력 또는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골프 · 헬스 · 콘도미니엄 등 종류를 불문하고 권당 5백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하되, 매입한 경우에는 매입가격으로 신고하고, 매도한 경우에는 현재 가격을 '0' 천원으로 신고 후 '실거래가격'란에 매도가격을 기재하십시오.

! 는 변동신고가 필요한 항목이나, 해당 건을 선택하여 변동신고 하십시오.

우가
소재
미리보기
(단위: 천원)

변동재산

관계	배우자		
소유자	이여왕		
종류	골프		
발행인	레이크힐스제주골프클럽		
소재지	도로명	주소찾기	
	등 ※ 회원권이 있는 곳 (등기가 되어 있는 곳) 을 기재하십시오. ※ 해외거주자나 도로명 검색이 안되는 보안 시설인 경우 기타 (국외 등) 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회원권 번호	M-09-1234		

☐ 매도, 증여 등으로 인한 소유권 상실

	前 가격	現 가격(원수)	증가액	감소액
가격 변경 (원수) *	6,000(천원) [육백만] 원	6,000 (천원) [육백만] 원	0 (천원)	0 (천원)
현 실거래가격	0 (천원) *			
가격변동여부	☐ 예 ☒ 아니요			

형성과정	취득일자 (선택)	※ 매입일, 상속일, 증여일 등
	취득경위 (선택)	※ 목적, 방법(매입·상속·증여 등 여부), 상대방(매입·상속·증여의 상대방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
	소득원 (선택)	※ 회원권을 취득한 자금 출처
	기타 (선택)	※ 그 밖에 형성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내용

변동사유 (원수)	※ '변동사유'란에는 매입 · 매도 · 상속 · 증여 등 증감원인을 적으십시오.
------------------	---

파일첨부분	☐ 파일 이름 이곳을 더블클릭 또는 파일을 드래그 하세요. 파일 크기 최대 10 개 올릴 무제한 tif,jpg,jpeg,gif,png,bmp,pdf,zip,hwp,hwpk 파일만 가능 0 개, 0 byte 추가됨 파일추가 파일삭제
-------	--

저장
작성취소

- **권당 500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
 - 소유자, 종류, 발행인, 회원권번호, 가액, 변동사유를 입력
 - ※ **골프회원권 가액 신고 방법**
 - 신규 매입한 경우 실거래가격(매입가격)으로 신고하되, 상속·증여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 표준액으로 신고
 - 이전 신고 시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경우 시가표준액과 비교하여 높은 금액 신고(이전 신고 시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한 경우 시가표준액으로 신고)
 - ※ 시가표준액은 위택스(WETAX), 이택스(ETAX) 또는 회원권 소재지 지자체에 문의

- 종전 신고한 재산항목을 변동처리할 경우 해당 항목을 클릭하여 변동사항 입력
- 골프회원권은 등록기준일의 가액을 확인하여 가액증감분 신고하고, 변동이 없을 시에는 “가액변동여부”를 “아니오”로 체크하여 신고
 - ※ “가액변동여부”는 회원권의 종류가 “골프”인 경우에만 나타남
- 콘도미니엄의 경우 부동산 등기가 되어있더라도 건물이 아닌 회원권으로 신고
- 보유회원권을 매도했을 경우 ☐ 매도, 증여 등으로 인한 소유권 상실 에 체크 후 변동사유 입력
- 변동사항을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해 내용 저장

지식재산권 입력방법

● 재산신고, 지식재산권(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등) 작성방법

○ 모든 정보는 "등록기준일인 2022.12.31." 기준으로 입력 또는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그 지식재산권을 신고하되, 지식재산권에서 발생한 연간소득금액을 신고하고 '변동사유'란에 소득 원인행위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① 는 변동신고가 필요한 항목이나, 해당 건을 선택하여 변동신고 하십시오. 추가 삭제 미리보기 (단위: 천원)

변동재산

관계	모
소유자	홍경
종류	특허권
권리의 명세	휴대전화케이스

☐ 매도, 존속기간만료 등으로 인한 소유권 상실

가액 변경	前 소득금액	10,000(천원) [입천단] 원	現 소득금액(필수)	0 (천원)

형성과정

형성과정	취득일자 (선택)	
	※ 매입일, 상속일, 증여일 등	
	취득경위 (선택)	
	※ 목적, 방법(매입·상속·증여 등 여부), 상대방(매입·상속·증여의 상대방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	
소득원 (선택)		
		※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자금 출처
기타 (선택)		
		※ 그 밖에 형성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내용

변동사유 (필수)

※ '변동사유'란에는 신규등록·매도·존속기간만료 등 권리의 변동사유를 적으십시오.

파일첨부

☐ 파일 이름 파일 크기

이곳을 더블클릭 또는 파일을 드래그 하세요.

최대 10 개 용량 무제한 tif, jpg, jpeg, gif, png, bmp, pdf, zip, hwp, hwpkx 파일만 가능 0 개, 0 byte 추가됨

파일 추가 파일 삭제

저장 작성취소

-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
- 신규재산을 등록할 경우 총괄표에서 추가 버튼 클릭
 - 소유자, 종류, 권리명세, 소득금액, 변동사유를 입력
- 종전 신고한 자산항목을 변동처리할 경우 해당 항목을 클릭하여 변동사항 입력
- 지식재산권이 소멸된 경우 ☐ 매도, 존속기간만료 등으로 인한 소유권 상실 에 체크 후 변동사유 입력
- 변동사항을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해 내용 저장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입력방법

☛ 재산신고 ·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원성과정 신고영상 작성방법

○ 모든 정보는 "등록기준일인 2022.12.31." 기준으로 입력 또는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합명·합자·유한회사에 새로 출자했거나 이미 신고한 회사의 출자가액, 출자지분이 변동된 경우 신고하고, 당해 연도 매출액 변동사항을 신고하되, 투자한 회사의 종류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주식회사이면 '주식' 항목에 신고하고, 합명·합자·유한회사인 경우 출자지분으로 신고하십시오.

1 는 변동신고가 필요한 항목이니, 해당 칸을 선택하여 변동신고 하십시오. 추가 삭제 미리보기 <단위: 천원>

변동재산

관계	배우자
출자자	이여향
회사명	코리아전력
소재지 (필수)	도로명 06168 주소찾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1길 - 동 호 (삼성동 · 바나나 빌딩)
대표자	이대표
영업종류	전기회사
설립일	2012-02-02
자본금	400,000 (천원) (사액) 원 ※ 자본금이 증감한 경우에는 매도처리하고, 신규로 다시 등록하십시오.

☐ 출자지분 회수 등으로 인한 소유권 상실

	종전	현재
출자지분 (필수)	3 %	3 (%) ※ 변동된 출자가액과 자본금에 대한 그 지분비율의 증감사항을 적으십시오.
출자가액 (필수)	12,000 (천원) (일천이백만) 원	12,000 (천원) (일천이백만) 원 ※ 변동된 출자가액의 증감사항을 적으십시오.
회사연간매출액 (필수)	180,000 (천원) (일억팔천만) 원	180,000 (천원) (일억팔천만) 원 ※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이전 최근 사업연도의 그 회사 결산서상의 연간매출액을 적으십시오.

형성과정

취득일자 (필수)	 ※ 출자일,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재일 등
취득경위 (필수)	 ※ 회사와의 관계, 출자목적 등
소득원 (필수)	 ※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출자지분의 자금 출처
기타	 ※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변동사유 (필수)
 ※ '변동사유'란에는 출자가액 및 출자지분의 증감변동원인행위를 적으십시오.

파일첨부

☐ 파일 이름	파일 크기
이곳을 더블클릭 또는 파일을 드래그 하세요.	
최대 10 개 용량 무제한 gif, jpeg, png, bmp, pdf, zip, hwp, hwpk 파일만 가능	
0 개, 0 byte 추가됨	
파일 추가	파일 삭제

- 신규재산을 등록할 경우 총괄표에서 **추가** 버튼 클릭
 - 출자자, 회사명, 소재지, 대표자, 영업종류, 설립일, 자본금, 출자지분, 출자가액, 회사연간매출액, 변동사유를 입력
- 종전 신고한 자산항목을 변동처리할 경우 해당 항목을 클릭하여 변동사항 입력
- 출자한 지분이 소멸된 경우 ☐ 출자지분 회수 등으로 인한 소유권 상실 에 체크 후 변동사유 입력
 - ※ 자본금이 변경된 경우에도 ☐ 출자지분 회수 등으로 인한 소유권 상실 에 체크하고 신규로 다시 신고
- 변동사항을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해 내용 저장

비영리법인에의 출연재산 입력방법

채산신고, **비영리법인에 출원한 재산**

※ 모든 정보는 "등록기준일인 2022.12.31." 기준으로 입력 또는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비영리법인에 새로 출원하거나 이미 신고한 비영리법인 출연재산, 보유직위, 법인명칭, 대표자 등이 변동된 경우에 신고하되, 「민법」 상 사단법인, 재단법인과 「협동조합기본법」 상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비영리법인인 경우에 신고하십시오.
※ 복지시설이나 자선단체 등에 납부한 기부금 또는 펀드 등은 신고 대상 제외

1 는 변동신고가 필요한 항목이니, 해당 건을 선택하여 변동신고 하십시오.

변동재산

관계	배우자		
소유자	이여항		
법인명칭	아나바다		
보유직위	이사	※ 비영리법인에서 보유하는 직위와 담당 직무를 적으십시오.	
대표자	박대표		
목적사업	환경살리기		
소재지	도로명 주소찾기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1길 - 동 호 (논현동 ,) ※ 해외거주자나 도로명 검색이안되는 보안 시설인 경우 기타(국외 등)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소멸(※ 선택된 재산의 소멸의 경우 체크 하십시오.)

	前 출연재산	총 출연재산 (합계)	증감 출연재산
출연재산 변경	20,000 (천원) (이천만 원)	20,000 (천원) ※ 변동된 출연재산의 명세를 적으십시오.	0 (천원)

형성과정

취득일자 (선택)	 ※ 매입일, 상속일, 증여일 등
취득경위 (선택)	 ※ 목적, 방법(매입·상속·증여 등 여부), 상대방(매입·상속·증여의 상대방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
소득원 (선택)	 ※출연재산을 취득한 자금 출처
기타 (선택)	 ※ 그 밖에 형성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내용

변동사유 (필수)

※ '변동사유'란에는 신규출연 · 출연증가 · 보유직위변경 또는 비영리법인 목적사업변경 등 변동신고사유를 적으십시오.

파일첨부

☐ 파일 이름 파일 크기

이곳을 더블클릭 또는 파일을 드래그 하세요.

최대 10 개 용량 무제한 tif,jpg,png,gif,png,bmp,pdf,zip,hwp,hwpx 파일만 가능 0 개, 0 byte 추가됨

- 신규재산을 등록할 경우 총괄표에서 **추가** 버튼 클릭
 - 출연자, 출연재산, 보유직위, 법인명칭, 소재지, 대표자, 목적사업, 변동사유를 입력
- 종전 신고한 재산항목을 변동처리할 경우 해당 항목을 클릭하여 변동사항 입력
- 출연재산이 소멸된 경우 ☐ **소멸**에 체크 후 변동사유 입력
- 변동사항을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해 내용 저장

신고내역 검증

☞ 재산신고, 신고내역 검증

총괄표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아래 모든 사항을 확인하시고, 이상 없을 경우 **다음**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본 페이지 내용을 출력하시고자 할 경우 인터넷 브라우저 메뉴 중 「파일」 인쇄 미리보기,에서 「페이지에 맞게 축소」를 선택하여 화면조절 후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 친족별 동의·신고가액 현황입니다.

관계	성명	정보제공 동의현황		총신고액	변동액		현재가액(천원)
		부동산	금융		증가	감소	
본인	홍길동	동의	동의	344,650	568,802	2,000	911,452
배우자	이배우	동의	동의	600,820	63,500	11,580	652,740
부	부친	미동의	미동의	21,000	3,900	0	24,900
모	모친	미동의	미동의	38,000	0	0	38,000
장남	장남	동의	동의	0	0	0	0

▲ 고지거부 재심사 신청을 하셨나요?

수정

※ **고지거부 재심사 미신청자 내역**입니다. 고지거부 재심사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성명	고지거부신청일	고지거부적용시각일	고지거부적용종료일
차남	김차남	2020-07-01	2020-06-09	2023-12-30

▲ 제공된 부동산·금융정보 중 누락 또는 중복 신고된 항목이 있나요?

※ 신고건수와 회신건수의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무조건 잘못 신고한 것은 아니며,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다음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의 경우 전세권, 분양권 등 회신되지 않는 항목과 금융정보의 경우 0원으로 신고된 항목 때문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분	재산항목	신고내용	회신내용	조회	열람일시	활용입력일시
부동산	토지	2 건	2 건	확인	2023-01-25 13:45:28	
	건물	4 건	3 건	확인	2023-01-25 13:47:51	
금융	예금/보험	4 건 (56,800천원)	6 건 (60,350천원)	확인	2023-02-10 20:55:13	2023-02-10 19:23:10
	증권	2 건 (30,780천원)	2 건 (30,780천원)	확인	2023-02-10 19:25:23	2023-02-10 19:23:10
	채무	1 건 (10,000천원)	1 건 (10,000천원)	확인	2023-02-10 20:59:59	2023-02-10 19:23:10

▲ 본인 및 친족이 거주중인 건물을 신고 했나요?

수정

※ 아래 주소지가 총괄표(건물)에 신고되어 있지 않습니다. 등록대상 재산인 경우 건물재산(소유권, 전세권)을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대상 재산이 아닌 경우(관사, 기숙사, 친척집 등) 친족사항의 거주형태란에 거주형태를 정확히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거주형태	관계	성명	변동사유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569번지 대명강변타운아파트 1동 101호	자가	본인	홍길동	

▲ 타인에게 임대중인 건물이 있나요?

※ 아래 주소지가 채무항목 건물임대채무로 신고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유중인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 보증금이 있는 경우 이를 채무항목에 건물임대채무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무상임대나 공실, 본인 사용 중인 경우 해당 건물의 비교, 변동사유란에 '○○○에게 무상임대', '공실', '본인사무실' 등 사실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성명	권리종류	주소	변동사유
본인	홍길동	소유권	세종특별자치시 도당동 855번지 도렘마을9단지 9동 909호	-
배우자	이배우	소유권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626번지 개나리아파트 101동 101호	가액변동 없음

▲ 매도한 건물의 임대채무를 신고한건 아닌가요?

수정

※ 매도한 건물의 임대채무는 '전액상환' 하셔야 합니다.

▲ 폭식, 주식 매각·백지신탁 대상에 해당되나요?

※ 공개자등은 본인 및 이해관계자(배우자 등)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2개월 이내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고, 그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관계	성명	재산항목	가액(천원)
본인	홍길동	신한금융투자(주), 공적건설 (현보유량: 500주), 특기사항(가액변동)	16,540
배우자	이배우	우리물산 (현보유량: 400주), 특기사항(가액변동)	14,240
계			30,780

이전

다음

- 신고한 내용을 시스템 상에서 비교하여 내용을 사전 점검하는 기능

※ 이 화면의 신고한 내용은 단순착오 및 실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스템으로 점검한 내용으로 등록의무자가 반드시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시 다음 단계로 이동

Q 고지거부 재심사 신청을 하셨나요?

- 고지거부 만료일이 2023.12.30.까지인 대상자로서 고지거부 허가 연장을 위한 재심사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표시되며, 2023.2.28.까지 고지거부 재심사 신청 가능

Q 제공된 부동산·금융정보 중 누락 또는 중복 신고된 항목이 있나요?

- 신고한 내용과 회신받은 내용을 비교하여 부동산은 건수, 금융은 건수와 총액을 비교하여 차이가 있는 경우 붉은색으로 표시함

※ 부동산의 경우 전세권, 분양권 등 회신되지 않는 항목과, 금융의 경우 0원으로 신고된 항목 때문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상 없을 경우 다음 진행

- 부동산, 금융정보의 열람일시를 보여주며, 금융의 경우 활용입력 일시도 보여줌

※ 열람 또는 활용입력을 하지 않은 경우 공란으로 표기

- ① **확인**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신고자료와 조회자료 목록을 비교할 수 있음

재산항목 열람 - 토지

○ 신고자료 목록 (4건)

상태	관계	권리자	재산항목	권리종류
변동	본인	홍길동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10번지 0.00㎡ (5,000.00㎡ 감소)	소유권
신규	본인	홍길동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9번지 250.00㎡ (250.00㎡ 증가)	소유권
신규	본인	홍길동	전라북도 남원시 금지면 입암리 1373-3번지 300.00㎡ (300.00㎡ 증가)	소유권
신규	장남	홍익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10번지 500.00㎡ (500.00㎡ 증가)	소유권

○ 조회자료 목록 (3건)

소유자성명	소재지	지목	면적(㎡)	공유자수
홍길동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9번지		250.00	
홍길동	전라북도 남원시 금지면 입암리 1373-3번지		300.00	
홍익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10번지		500.00	

닫기

Q 본인 및 친족이 거주중인 건물을 신고 했나요?

- 본인 또는 친족정보 입력 시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로 입력했으나 ‘건물’에 소유권 또는 전세권 등이 신고되지 않은 경우에 나타남
 - 누락이 맞는 경우 총괄표 ‘건물’로 이동하여 추가하고, 관사·기숙사·친척집 거주, 보증금 없는 월세 등일 경우 추가하지 않고 다음으로 진행
- 거주지 주소체계(도로명주소)와 소재지 주소체계(지번주소)의 법정동, 행정동 표기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니 확인하고 이상 없을 시 다음으로 진행

Q 타인에게 임대중인 건물이 있나요?

- ‘건물’에 신고된 항목 중 등록의무자 또는 친족이 거주하는 주소가 아니며, ‘채무’ 항목의 ‘건물임대채무’도 신고되지 않은 경우에 나타남
 - 해당 건물을 임대중인 경우에는 ‘채무’항목으로 추가하고, 해당 건물이 공실이거나 무상임대, 본인사용 등인 경우 ‘건물’항목에서 해당건물의 ‘비고’, ‘변동사유’에 기재
- 거주지 주소체계(도로명주소)와 소재지 주소체계(지번주소)의 법정동, 행정동 표기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니 확인하고 이상 없을 시 다음으로 진행

Q 매도한 건물의 임대채무를 신고한 건 아닌가요?

- ‘채무’에 토지임대채무 및 건물임대채무로 신고한 주소가 ‘토지’ 또는 ‘건물’에 신고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나타남
 - 부동산을 매도하여 임대계약이 종료된 경우 ‘채무’항목에서 해당 임대채무를 ☐ 전액상환 하고, 해당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고 있을 경우 ‘토지’ 또는 ‘건물’ 항목에 부동산 소유권 추가하여 등록

Q 혹시,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 대상에 해당되나요?

- 재산 공개대상자, 기획재정부 금융관련부서 및 금융위원회 4급 이상이 해당하며, 본인 및 이해관계자(배우자 등)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2개월 이내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 등을 진행해야 함(9쪽 참고)

3-6. 변동요약서 작성

☞ 재산신고, 재산변동 요약서 ※ 실거래액 기준으로 자금의 흐름을 확인하는 화면으로 총괄표의 재산증감과 다를 수 있습니다.

총괄표 보기 변동요약서 다시가져오기

구분	재산증가		재산감소	
	금액(천원)	변동사유 (100자까지 입력가능)	금액(천원)	변동사유 (100자까지 입력가능)
01.토지	-		① (▽22,100)	
02.건물	58,823		-	
03.자동차	-		(▽5,000)	
04.현금(수표)	-		-	
05.예금/보험	30,500	부동산 계약금 납부 등의 변동	(▽44,020)	부동산 계약금 납부 등의 변동
06.정치예금	-		-	
07.증권	2,355	평가액 변동	(▽675)	평가액 변동
08.채권	-		-	
09.채무	20,000		(▽1,000)	
10.금 및 백금	-		-	
11.보석류	-		-	
12.골동품및예술품	-		-	
13.회원권	500		-	
14.지식재산권	-		-	
15.출자지분	-		-	
16.출연재산	-		-	
합계	총재산증가	112,178	총재산감소	(▽72,795)
	- 가액변동 증가	61,678	- 가액변동 감소	(▽5,675)
	- ① 순재산 증가	50,500	- ② 순재산 감소	(▽67,120)
(순재산) ③ 변동금액(①-②)	▽ 16,620(천원)			
※ ④재산 증가, 감소 사유(필수) (2,000자까지 입력)	토지 매도 및 건물 공시가격 상승, 신규분양권 매입을 위한 계약금 납입 등 ② (42 / 2,000)			
⑤ 본인소득(필수)	55,000 천원 [오천오백만] 원	※ 이권신고서 등록기준일 이후부터 현 신고서 등록기준일 사이의 소득(세전금액)을 천원단위로 기재		
⑥ 본인외소득	본인외소득자수 2명 ▾ 본인외소득 75,000 천원 [칠천오백만] 원	③		
(⑤+⑥) 총소득	130,000 천원 [일억삼천만] 원			

이전 임시저장 다음

- 총괄표에 입력한 내용을 토대로 생성된 변동요약서의 항목별 변동금액을 확인
 ※ 총괄표(가액으로 계산)와 변동요약서(실거래가격이 있는 경우 실거래가격으로 계산)의 순증감액은 서로 다를 수 있음
- ① 재산증가, 재산감소의 “변동사유”란에 변동사유내용 입력
- ② 재산의 증가와 감소 사유, 총괄표에 나타나지 않는 재산의 변동사항 등을 “재산 증가, 감소사유”에 입력

- ③ 본인소득과 친족의 소득을 기재

※ 이전 신고서 등록기준일 이후부터 현 신고서 등록기준일 사이의 소득(세전금액)을 천원 단위로 기재하고, 임대소득 등 별도의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

- 변동요약서 작성 완료 후 **임시저장** 버튼을 클릭해 내용 저장

- 모든 작업 완료 후 **다음** 버튼 클릭

※ 순재산 변동비율이 총소득 대비 $\pm 70\%$ 이상일 때 나오는 팝업으로 이상이 없다면 '예' 클릭하여 진행, 이상 있을 경우 '아니오' 클릭 후 총괄표 수정

알림

순재산 변동액이 총소득 대비 100% 에 해당합니다.

입력하신 사항이 맞습니까?
 (재산신고는 천원 단위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자릿수나 원 단위의 오류가 없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클릭 시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예
아니오

3-7. 공개목록 작성(공개자에 한함)

☰, 재산신고, 공개목록작성

※ 모든 정보는 "등록기준일인 2022.12.31." 시점으로 입력 또는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공개목록에 작성된 내용은 관보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됩니다.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재산의 누락·오기 등이 있는 경우 총괄표에서 수정, 보완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변동사유권에 개인정보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신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내용을 확인한 후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이전화면(재산등록)으로 이동하여 수정·보완이 가능합니다. (단, 변동사유권은 수정가능)

공개목록작성 ③ 출력 (단위: 천원)

소속	인사혁신처		직위	성명	홍길동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②	종전가액	변동액 증가액 (실거래가액)	감소액 (실거래가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①
▶ 토지 (소계)							
부	임야	전라북도 남원시 금지면 입암리 1373-3번지 1,000.00㎡	11,400	0	0	11,400	
▶ 건물 (소계)							
본인	아파트	세종특별자치시 도담동 도렘마을9단지 건물 84.00㎡ 중 42.00㎡	250,000	37,000	0	287,000	
배우자	아파트	세종특별자치시 도담동 도렘마을9단지 건물 84.00㎡ 중 42.00㎡	250,000	9,000	0	259,000	
배우자	아파트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개나리아파트 건물 164.52㎡	340,000	0	0	340,000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소계)							
			20,000	0	2,000	18,000	

이전 저장 다음

- ① 공개목록작성 내용 참고하여 '변동사유' 입력 후 **저장** 클릭
 ※ '변동사유'란은 모두 빈칸으로 나타나며 등록의무자가 필요한 경우 항목별 사유를 직접 기재
- ② 아파트 동·호수, 사인간 채무·채권, 건물임대채무 등에서 개인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등)가 표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권리명세 등 해당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총괄표에서 해당 항목 수정하여 공개목록 다시 작성
- ③ **출력** 버튼 클릭하여 공개목록 출력 가능
- 공개목록은 자동으로 생성되며 재산항목 중 채무만 전체 합계에서 '-'처리됨
- 최종적으로 공개목록사항이 맞는지 확인한 후 다음 **다음** 클릭
 ※ 공개목록은 관보, 공보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되는 내용이므로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작성

3-8. 신고서 제출 및 완료

STEP.01 본인정보 > STEP.02 친족정보 > STEP.03 총괄표작성 > STEP.04 변동요약서 > STEP.05 공개목록작성 > **STEP.06 신고서제출**

신고서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서 제출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신고서 제출하기**

라인차트

2018 2018 2019

신고서출력

재산등록신고서	본인 보관용 신고서 출력	출력
변동요약서	본인 보관용 변동요약서 출력	출력
공개목록	관보 (공보)에 게재되어 공개되는 내용 출력	출력

신고서 수정
 제출기한내에는 별다른 절차없이 신고내용을 수정 후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접수증 출력
 접수증은 출력하여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 재산등록신고서, 변동요약서 등을 출력하여 최종 확인 후 제출
- 고지거부 허가신청하였으나 “심사중”인 경우 신고서 제출할 수 없음
 ※ 이런 경우에는 소속기관 윤리업무담당자에게 문의
- ① **신고서 제출하기** 클릭하여 신고서 제출 후 필요 시 접수증 출력
 ※ 접수증 출력하지 않아도 제출완료 되며, 제출 후에도 신고서 조회에서 출력 가능
- 신고서 제출완료 후 [신고서조회] → [제출신고서조회] 메뉴로 들어가면 제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메인화면에서도 제출 여부 확인 가능

홍길동님 환영합니다.

- > 소속 : 인사혁신처
- > 신고서 진행상황 : 제출완료
- > 등록기준일 : 2022.12.31.
- > 제출완료일자 : 2023.02.23.

재산변동신고서(정기변동) 신고서 수정

- > 재산을 잘못 신고하거나 기타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 2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징계의결 요구, 과태료 부과 등의 법적 처분이 가능하오니 정확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완료

4 신고서 제출 후 조회 · 수정

4-1. 제출신고서 조회

홍길동님 : 재산변동신고서 (정기변동) | 공개구분 : 비공개 | 등록기준일 : 2022.12.31. | 제출마감일 : 2023.02.28. | 고지거부 신청마감일 : 2023.01.31. | 로그인

PETI 공직윤리시스템 | 마이페이지 | 재산신고 | 주식백지신탁 | 취업심사 | 게시판

마이페이지 > 마이페이지, 제출신고서 조회

- 마이페이지
- 신고서조회
- **제출신고서조회**
- 재산변동요약서조회
- 공개목록조회
- 연도별변동흐름조회
- 소명서관리
- 보완신고서 관리
- 정보제공동의

번호	신고서	신고구분	등록기준일	소속	직급	직위	신고일자	상세보기	접수증출력
3	변동	정기변동	2022-12-31	경부공직자윤리위원회	서기관		2023-02-26		
2	변동	정기변동	2021-12-31	경부공직자윤리위원회	서기관		2022-02-26		
1	최초	신규	2021-06-01	경부공직자윤리위원회	서기관		2021-07-26		

- 필요한 경우 [신고서조회] → [제출신고서조회]메뉴를 클릭하여 제출한 신고서를 조회할 수 있음
- 과거에 신고한 모든 신고서를 조회할 수 있으며 접수증 출력메뉴 클릭하여 접수증 출력 가능
- 제출한 신고서의 세부내용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해당 신고서 상세보기메뉴 클릭하면 총괄표 화면이 나타나 세부내용 조회 가능

4-2. 신고서 수정요청 및 승인확인

홍길동님 환영합니다. - 소속 : 인사혁신처 - 신고서 진행상황 : 제출완료 - 등록기준일 : 2022.12.31. - 제출완료일자 : 2023.02.23.	재산변동신고서(정기변동) 신고서 수정 ① 재산 잘못 신고하거나 기타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 2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징계의결 요구, 과태료 부과 등의 법적 처분이 가능하오니 정확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홍길동님 환영합니다. - 소속 : 인사혁신처 - 신고서 진행상황 : 제출완료 - 등록기준일 : 2022.12.31. - 제출완료일자 : 2023.02.23.	재산변동신고서(정기변동) 신고서 수정요청 ② 재산 잘못 신고하거나 기타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 2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징계의결 요구, 과태료 부과 등의 법적 처분이 가능하오니 정확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① 신고기간 내 제출한 신고서를 수정하고자 할 경우 **신고서 수정** 클릭하여 바로 수정 가능
 - ② 신고기간 이후 10일 이내(3.1.~3.10.)에 신고서 수정을 원할 경우 **신고서 수정요청** 클릭한 뒤 수정요청 화면에서 요청사유 입력하여 소속기관 윤리업무담당자 승인받아 수정 가능
- ※ 신고서 수정을 한 경우 신고서 진행상황이 '작성중'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수정완료 후 반드시 3.10.까지 '신고서 제출' 완료하여야 신고서가 최종 제출처리 됨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의4

등록기관의 장은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재산의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 내용 중 가액의 잘못된 기재 등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등록의무자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에는 등록마감일 또는 신고마감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 내용을 수정하게** 할 수 있다.

5-2. 주식매각(백지신탁)

STEP.01
본인정보

STEP.02
주식매각(백지신탁)

STEP.03
공개목록

STEP.04
제출

☛ , 주식매각(백지신탁) , 주식매각(백지신탁) 신고서 , **주식매각(백지신탁)**

1.매각(백지신탁)내역

해당주식이 신고 대상 주식인지 확인 후 주식 종목을 기준으로 일자별·증권사별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중빙자료상 매각(백지신탁)내역을 정확히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 신고일이 지연될 수 있음을 유의)

관계/소유자	금융기관	계좌번호	상장/비상장	발행인(주식명)	종목코드	매각/백지	수량	가액(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금융기관)
☐ 본인-출입동	신한금융투자(주)	123-111-01234	상장	공직전자	010203	매각	100	7,700	2022-10-06	신한금융투자(주)
☐ 배우자-이여왕	신한금융투자(주)	123-111-56789	상장	공직전자	010203	매각	200	14,800	2022-10-07	신한금융투자(주)

[2 건, 총 22,500천원]

2.매각 후 잔여주식 내역

매각 후 거래 잔고 등을 확인하여 남아있는 주식내역을 작성합니다.

관계/소유자	금융기관	계좌번호	상장/비상장	발행인(주식명)	종목코드	수량	가액(천원)	비고
☐ 본인-출입동	신한금융투자(주)	123-111-01234	상장	공직출산	009876	300	18,300	
☐ 배우자-이여왕	신한금융투자(주)	123-111-56789	상장	공직출산	009876	50	2,950	

[2 건, 총 21,250천원]

매각(백지신탁) 내역을 확인(거래일, 거래구분, 종목명, 수량, 거래단가, 거래금액 모두 포함)할 수 있는 주식거래내역서와 신탁계약서를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 이름

☐ 주식거래내역서.png 파일 크기 113.83 KB

최대 10 개 용량 무제한 tif, jpg, jpeg, gif, png, bmp, pdf, zip, hwp, hwppx 파일만 가능 1 개, 113.83 KB 추가됨

- 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주식 확인하기** 클릭하여 매각·백지신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식 확인
- ② 필요한 경우 **증권정보포털(SEIBro)** 클릭하여 주식 종목코드 조회 가능
※ 증권정보포털은 인터넷망으로 공직윤리시스템(PETI) 접속한 경우에만 활용 가능
- ③ **기존신고 주식정보 가져오기** 클릭하여 재산신고서에 등록된 주식정보를 가져올 수 있으며, 재산신고서에 등록하지 않은 주식은 **추가** 클릭하여 신규 등록
- 소유자, 금융기관, 계좌번호 등 내용 입력 후 주식거래내역서(신탁계약서) 첨부

기존신고 주식정보 가져오기
✕

※2021.07.02. 일자 등록기준일 신고서의 주식 정보 현황입니다.
동일 직위에서 심사청구하여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 통지 받은 주식 및 해외주식 등은 대상이 아닙니다.

☐	관계	권리자	금융기관	계좌번호	발행인(주식명)	종목코드	수량	상장/비상장
☐	본인	김주식	교보증권	0001112121	○○항공	012345	80	상장주식
☐	본인	김주식	삼성증권	1234555-111	○○전자	013579	300	상장주식
☐	배우자	배우자	삼성증권	1123555-123	○○전자	013579	80	상장주식
☐	배우자	배우자			공직출산	1201110799950	600	기타 비상장주식

5-3. 공개목록

STEP.01
본인정보

STEP.02
주식매각(백지신탁)

STEP.03
공개목록

STEP.04
제출

🏠 , 주식매각(백지신탁) , 주식매각(백지신탁) 신고서 , 공개목록

STEP 01(본인정보) 및 STEP 02(주식매각(백지신탁))에서 작성된 사항을 바탕으로 생성된 공개목록입니다.
 모든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였는지 확인하신 후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이전버튼을, 이상이 없으면 다음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서 기재사항이 정확하지 않거나 증빙자료를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보완자료 제출 완료일이 신고일이 되어 의무이행기간(2개월)을 지연하게 될 수 있습니다.

1

공개목록 미리보기

소속	직위	직급 등	성명
인사혁신처	차장	일반직고위공무원	홍길동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또는 신탁 금액 (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	보유주식수				
본인	공직전자	100	매각	7,700	2022-10-06	신한금융투자(주)
배우자	공직전자	200	매각	14,800	2022-10-07	신한금융투자(주)

2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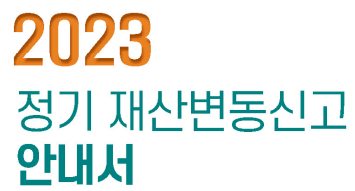
다음

- ① **공개목록 미리보기** 클릭하여 공개목록 확인 후 출력 가능
- ② 주식매각(백지신탁) 신고내역 확인하여 수정사항 있을 경우 **이전** 단계로 이동하여 수정

5-4. 지연여부 확인(지연 신고인 경우에만 진행)

STEP.01 본인정보	STEP.02 주식매각(백지신탁)	STEP.03 공개목록	STEP.04 지연여부확인	STEP.05 제출				
👤 , 주식매각(백지신탁) , 주식매각(백지신탁) 신고서 , 지연여부확인 기준일을 수정해야하는 경우 Step 01. 본인정보를 클릭하시어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또는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게 된 날 등으로부터 2개월 이상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계약 체결이 지연된 경우 ② 2개월 이내 매각 또는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신고를 지연한 경우								
① 지연사유서 미리보기								
주식매각(백지신탁) 사유 및 기준일 (필수) 새로운 주식을 3천만 원을 초과하여 취득함 [기준일] 2022-09-01								
지연 사유 (필수) ② ※ 주식의 매각·백지신탁계약 체결을 또는 심사청구를 지연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매각 및 백지신탁계약 의무 이행 지연사유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5제6항에 따른 직무관련성 심사의 청구기간을 지나서 청구하게 된 지연사유에 대하여 소명합니다. ※ 작성해야할 내용이 1,000자 이상인 경우 별지로 작성한 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 제출 행정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주식의 평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한 시점에서 신고를 하지 못하였음 (53 자 / 1,000 자)								
③ 지연증빙서류 (필수) ■ 기준일에 따른 지연증빙서류 예시 : 3천만 원이 초과된 시점의 잔액증명서와 3천만 원이 초과된 시점부터의 주식거래내역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파일 이름</th> <th>파일 크기</th> </tr> </thead> <tbody> <tr> <td>주식거래내역서.png</td> <td>113.83 KB</td> </tr> </tbody> </table> 최대 10 개 용량 무제한 tif, jpg, jpeg, gif, png, bmp, pdf, zip, hwp, hwpkx 파일만 가능 1 개, 113.83 KB 추가됨 파일 추가 파일 삭제					파일 이름	파일 크기	주식거래내역서.png	113.83 KB
파일 이름	파일 크기							
주식거래내역서.png	113.83 KB							
이전 저장 다음								

- ① 지연사유서 미리보기 클릭하여 작성중인 지연사유서 확인 후 출력 가능
- ②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식매각(백지신탁) 신고를 하지 못한 사유를 자세히 기재
- ③ STEP1 본인정보에서 선택한 신고사유별 예시 참고하여 지연 증빙서류 첨부



※ 이 책자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의견이 있는 경우 인사혁신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